

연구보고서 2008-00

범죄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기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研究陣》

연구위원 : 허 경 미 (계명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목 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10
제2장 범죄 프로파일링의 이론적 배경	12
제1절 범죄 프로파일링의 개념 및 역사	12
제2절 범죄 프로파일링의 역사	13
1. 범죄학적 측면	13
2. 법의병리학적 측면	18
3. 행동과학적 측면	18
4. 미연방수사국(FBI)	19
제3절 범죄 프로파일링 및 범죄 프로파일러의 요건	21
1. 범죄 프로파일링의 요건	21
2. 범죄 프로파일러의 요건	23
제4절 범죄 프로파일링의 방법	26
1. 귀납적 범죄 프로파일링(Inductive Criminal Profiling)	26
2. 연역적 범죄 프로파일링(Deductive Criminal Profiling)	35
제3장 강력범의 프로파일링	39
제1절 연쇄살인범의 프로파일링	39
1. 연쇄살인범 프로파일링을 위한 일반적 데이터	39
2. 연쇄살인범의 유형	43
3. 연쇄살인 사건의 프로파일링	47
제2절 연쇄강간범의 프로파일링	54

1. 연쇄강간범 프로파일링을 위한 일반적 데이터	54
2. 연쇄강간범의 유형	56
제3절 방화범의 프로파일링	64
1. 방화범 프로파일링을 위한 일반적 데이터	64
3. 방화사건의 프로파일링	72
제4장 한국경찰의 범죄 프로파일링 실태	73
제1절 범죄 프로파일링관련 조직 및 운영	73
1. 경찰청 과학수사센터(과학수사계)	73
2. 정보수집 및 접근시스템	76
제2절 범죄 프로파일러의 교육	78
1. 신입교육과정	78
2. 재교육과정	80
제3절 범죄분석관의 업무 및 활동	82
1. 범죄분석관의 업무	82
2. 범죄 프로파일러의 활용	84
제4절 기존 수사경찰의 범죄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해	85
1. 수사경찰의 범죄 프로파일링 관련 교육	85
2. 범죄프로파일러와 기존 수사경찰과의 소통정도	87
제5장 범죄 프로파일링의 효과적 활용방안	88
제1절 법령 및 조직의 정비	88
1. 근거 내부규정의 제정	88
2. 조직의 정비	89
제2절 범죄 프로파일러 선발과 양성과정의 전문화	96
1. 대상선발의 개선	96
2. 신입교육과정의 단계화	100
3. 재교육과정의 특성화	103
제3절 업무영역의 명확한 설정과 수사경찰과의 조화	104

1. 범죄분석관의 업무영역의 명확화	104
2. 기존 수사경찰에 대한 프로파일링 관련 교육확대	106
제4절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	107
1. 정보공유시스템 개발	107
2. 국외기관과의 교류 확대	109
3. 수형자 면담 및 자료 확보	109
 제6장 결 론	 111
 참 고 문 헌	 113

표 목 차

<표 1> Lombroso의 생태적 범죄인의 외형적 특징	14
<표 2> Kretschmer의 범죄자의 신체적 유형분류	16
<표 3> 범죄자 유형에 따른 범죄자의 특징	30
<표 4> 범죄자 유형에 따른 범죄현장의 차이	31
<표 5> 지리학적 지속형 연쇄살인범	44
<표 6> 연쇄살인범 유형별 범죄현장의 차이	48
<표 7> 범죄동기별 강간범 유형	57
<표 8> 폭력지향형 연쇄강간범의 사회적 특징	58
<표 9> 폭력강화형 연쇄강간범의 사회적 특징	59
<표 10> 분노보복형 연쇄강간범의 사회적 특징	61
<표 11> 분노가학적 연쇄강간범의 사회적 특징	63
<표 12> 방화범의 유형별 사회적 특징 및 행동적 특징의 차이	72
<표 13> 범죄분석관 배치현황	74
<표 1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5

<표 15>	범죄분석요원 과정의 특별과목	79
<표 16>	신임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여부	79
<표 17>	재교육 과정의 교육정도	80
<표 18>	재교육 과정의 만족여부	81
<표 19>	재교육 과정의 교육기관	81
<표 20>	프로파일링 관련 자문 정도	83
<표 21>	프로파일링 관련 자문 대상 범죄	83
<표 22>	전국범죄분석관의 범죄 프로파일링 실적	83
<표 23>	프로파일링의 문제해결기여도 인식	84
<표 24>	프로파일링의 문제해결 도움 분야	84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11
<그림 2>	지리추정 프로파일링에 의한 용의자 거주지역 추정	34
<그림 3>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운영체제도	76
<그림 4>	권역별 관장 팀제(안)	90
<그림 5>	FBI의 조직도	91
<그림 6>	영국의 내무부 조직도	92
<그림 7>	일본의 과학경찰연구소의 조직도	94
<그림 8>	신임교육과정의 단계화(안)	102
<그림 9>	재교육 과정의 특성화(안)	10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연쇄살인, 연쇄강간, 연쇄방화 등 이른바 강력범죄에 대한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작업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방향을 설정하여 범죄자의 체포율을 높이고, 증거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국내외 범죄학계의 많은 연구를 통하여 증명되고, 또한 FBI나 NCS 등 수사기관의 업무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국내 케이블 방송을 통하여 방영 중인 미국의 CSI:라스베가스나 CSI:마이애미 등의 과학수사드라마 영향으로 프로파일링은 이제 전문적인 영역을 넘어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부녀자 권모씨 등 노인과 부녀자, 정신지체 장애인 등 21명을 살해하고 사체 11구를 토막내 암매장하는 한편 3구는 불에 태운 혐의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 사건의 경우 범행 기간 및 피해자의 특징 등을 감안할 때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을 절감케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2004년 2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주택가에서 전모(여)씨를 흉기로 살해하는 등 2006년 4월 검거될 때까지 25건의 살인 및 강도상해 행각을 벌여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정남규 사건의 경우도 범행수법이나 발생시간대 등을 고려하면 전형적으로 프로파일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했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 경찰청은 2005년부터 심리학이나 사회학 등을 전공한 자를 대상으로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공개채용하여 일선지방경찰청에 배치하는 등 국내에서도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을 도입하고는 있으나 아직 정착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는 아직 시행 초기이나 국외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프로파일링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추론의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의 여러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대표적인 강력범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 강간, 방화범 등의 수사에 프로파일링을 적용하는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선진국의 수사기관들의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수사의 실태 및 그 수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셋째, 미국 FBI의 범죄수사분석이나 영국 NCS의 행동증거분석 등 국외 수사기관들이 자국의 범죄적 환경이나 프로파일러의 자질, 수준 등에 따라 특징적인 프로파일링 기법을 개발,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유능한 프로파일러를 꾸준히 양성시키는 등의 노력이 있었던 것인 바, 프로파일링을 우리의 범죄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건개선, 즉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경찰수사조직 정비 등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연구방법 등이 기술될 것이다.

제2장은 프로파일링의 개념과 연혁, 그리고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을 중심으로 발달한 프로파일링의 여러 유형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될 것이다.

FBI를 중심으로 1970년대 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범죄 프로파일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각국의 수사당국이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각 국의 수사당국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범죄수사분석(CIA)은 주로 Ressler를 비롯한 FBI의 강력범 수사관들이 범죄자를 조직적인 범죄자와 비조직적인 범죄자로 구분하

고, 강력범분류매뉴얼을 통하여 범인을 추정하는 귀납적인 프로파일링 기법이다. 이에 비해 영국의 응용심리학자인 Canter가 제시한 수사 심리학(IP)은 기본적으로 범행 당시 범인의 행동과 범죄현장 등의 양상을 보고 범죄동기를 찾아 범인을 추정하는 귀납적인 프로파일링 기법이라 할 수 있다. Rossmo의 지리추정 프로파일링(GP)은 심리학이나 범죄학적 이론 보다는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에 기초를 둔 과학적인 통계분석을 통한 범죄추정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Turvey의 행동증거분석(DEA)은 연역적인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범죄현장에 떨어진 물리적인 증거와 피해자에 관한 정보에 의지하여 범인을 추정한다. 범죄수사분석과 수사 심리학 기법이 과거의 사건기록, 경찰과 감식전문가 등이 제시한 자료를 기초로 추정되는 범죄자의 이미지(상)를 좀 더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특징이 있는 데 비해, 행동증거분석 기법은 범죄자에 대한 한정적인 추정결과를 제시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행동증거분석방법은 범죄수사분석과 수사 심리학 프로파일링을 보완하는 기법으로 활용되는 추세이다.

제3장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프로파일링 범죄수사시스템이 정착된 선진국 수사기관에서 그동안 프로파일링을 활용하여 처리한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에 대하여 최종별 특징, 범죄자의 추정, 수법과 서명적 행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수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한편으로 일선 수사경찰관들이 자신들이 가진 수사관련 정보를 프로파일러에게 제공하는 등 프로파일러를 지원해야하는지 그 필요성을 확인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4장은 2005년도 이후 각 지방경찰청에 배치된 프로파일러에 대한 심층인터뷰 자료를 통해서 일선현장에서 직접 강력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경찰관들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도 및 적극적인 프로파일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조직, 지원시스템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제5장은 제4장의 조사결과 도출된 결론을 통하여 수사관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과 프로파일링 기법, 관련 법규의 정비 및 제도의 개선, 그리고 경찰수사조직의 개편 방안 등을 제시하기로 한다.

경찰청은 지난 2004년 7월에 각 지방경찰청에 범죄분석팀을 설치하고 2005년 부터 주로 심리학·사회학 전공자를 범죄분석관으로 채용하였지만 각 지방청에 1~2명을 배치하는데 그쳐 실효성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과수의 경우도 본소에 범죄심리과(범죄분석실, 심리연구실)를 설치하였지만, 주로 최면수사나 폴리그래프 테스트, 범인이 검거된 이후에 심리상태를 진단해주는데 중점을 두어 본격적인 범죄 프로파일링을 통한 경찰수사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행히 2007년 2월 1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범죄현장수사대를 개설함으로써 강력범 수사에 범죄 프로파일링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경찰청에 범죄분석관련 기구를 확대개편하는 것과 못지않게 범죄심리학을 전공한 전문 인력의 확보와 양성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프로파일러는 심리학·사회학적 전문지식 등과 함께 많은 실무경험을 익혀야 비로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으므로 국내외 대학에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FBI의 BSU(Behavioral Science Unit)와 같이 주로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이수케 하여 보다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이론과 기법을 체득하고, 이를 국내 수사경찰에 전수교육을 하는 방안 등 구체적 대안을 이 연구를 통하여 모색해 보겠다.

2. 연구의 방법

충실한 연구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방법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질문지를 통한 조사 및 심층면담조사 등의 방법 등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하여 프로파일링의 연혁과 각 유형, 그리고 유형별 성공적인 사건 처리 사례 등이 소개되었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의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프로파일링의 기법 등을 비교, 분석하여 프로파일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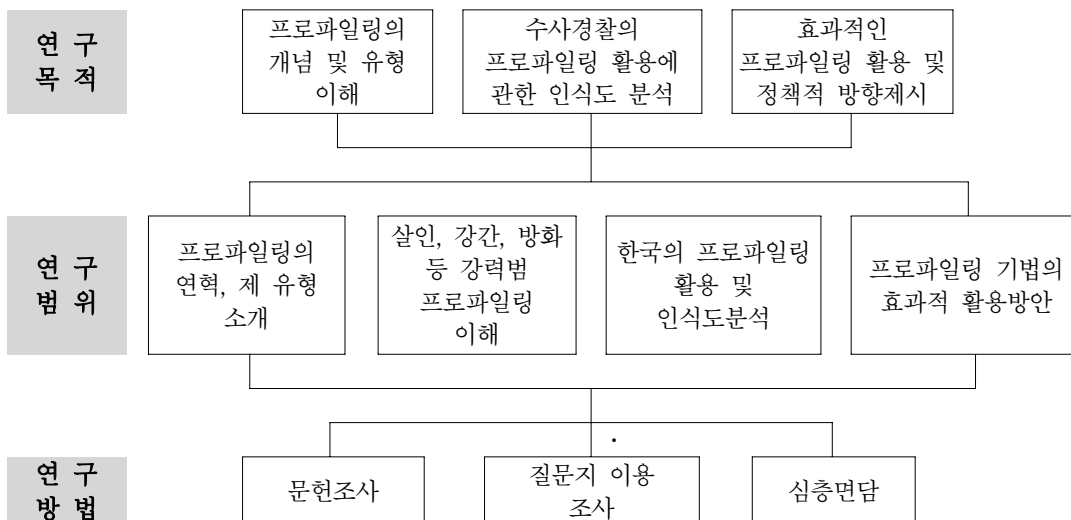
둘째, 구조적인 질문지를 통한 조사를 통하여 현재 우리 경찰이 활용하고 있는 강력사

건에 대한 프로파일링의 유형과 그 활용정도, 효과성, 활용의 필요성, 전문적 프로파일링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프로파일러들의 인식정도를 파악한다. 조사대상은 경찰청 및 지방청에 근무하고 있는 범죄프로파일러 29명이다.

셋째, 경찰청 및 서울, 대구 지방경찰청의 프로파일러들과 과학수사계장(팀장)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분석에 반영하였다. 심층면담은 전화, 이메일, 대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경찰수사를 지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중간관리자들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과 그 정책적 운용과 발전적 활용방안, 프로파일러의 체계적인 양성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본 연구가 지향하는 연구목적에 더욱 충실하게 달성하려고 하였다.

이 외에도 본래는 실제 일선의 수사과정 중 범죄프로파일링의 결과를 직접 활용하는 입장인 강력계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준비하였으나 아직 범죄프로파일링제도가 시행초기 이므로 이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낮아 연구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경찰청의 우려에 따라 이 방법은 활용되지 않았다.

〈그림1〉 연구의 흐름도



제2장 범죄 프로파일링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범죄 프로파일링의 개념 및 역사

범죄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에 대한 개념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는데 먼저 Geberth는 범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한다¹⁾. Bennet와 Hess는 범죄 프로파일링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대신에 범죄 프로파일링의 목적에 따라 개인적인 지능, 감정, 그리고 심리적인 특징 등을 강조하고 있다.²⁾

Petrick은 범죄 프로파일링이란 범죄현장에 남겨진 범죄자의 증거와 행동양태를 기초로 범죄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격과 행위적 단서를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한다. 즉, 범죄자와 피해자, 범죄현장, 범행도구의 선정, 사용한 말씨 등과 범죄자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범죄자를 추론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³⁾.

범죄 프로파일링은 행동 프로파일링(behavioral profiling)이나 범죄현장 프로파일링(criminal scene profiling), 범죄자 성격 프로파일링(criminal personality profiling), 범죄 프로파일링(offender profiling), 심리학적 프로파일링(psychological profiling), 그리고 보다 최근에 범죄자 수사 분석((criminal investigative profiling)라는 용어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FBI는 범죄자 행위에 대한 분석기법을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혹은 행태적 프로파일링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다가 최근에는 범죄수사분석(Criminal Investigative Analysis: CIA)이라 칭하고 있다. 범죄수사분석(CIA)은 기본적으로 프로파일링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성격진단, 변사체분석, 심문전략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범

1) Geberth. (1996). *Practical Homicide Investigation: Tactics, Procedures and Forensic Techniques(3rd ed.)*, Boca Raton, FL: CRC Press, p. 710.

2) Bennett & Hess. (2001). *Criminal Investigation*. Sydney: Wadsworth.

3) Petherick. (2003). Criminal profiling: What's in a name? Comparing applied profiling methodologies, *Journal of Law and Social Challenges*, p. 173.

죄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러한 개념정의 틀에서는 프로파일링의 목적을 보통 사람들과 차별화된 범죄자의 특성과 습벽을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는 범죄 프로파일링의 개념에 대해 광대경은 동일인에 의하여 행해지는 범죄는 공통성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범행 전의 준비과정, 범행특성, 피해자특성, 범행 후 행적 등을 파악함으로써 범죄자 유형을 추정하는 수사기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⁴⁾. 권창국은 프로파일링 증거 또는 수사기법이란 범인의 범행현장행동분석을 통해 범죄자의 성격, 행동패턴, 직업, 학력, 거주지 등 범인과 일정한 관련성 있는 각종 인구사회학적 특징요소를 추출,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용의대상 및 용의자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수사기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⁵⁾.

이와 같이 범죄 프로파일링에 대한 개념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범죄 프로파일링이란 범행현장 및 범행과정, 수집한 증거 등을 근거로 범죄자의 특성과 행동양태를 추론하여 수사기관에 용의자의 이미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작업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일반적으로 범행현장과 범행과정에서 평상시 범죄자의 성격과 행동양태가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제2절 범죄 프로파일링의 역사

1. 범죄학적 측면

범죄 프로파일링이 완벽하려면 범죄자의 행동의 원인에 대한 이해와 범죄자 행동에 대한 유형분류 등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의 범죄 프로파일링에 대한 연구는 범죄학에서 찾을 수 있다. 범죄학은 범죄, 범죄자 그리고 범죄자의 행동을 연구한다. 범죄학적 관점에서 범죄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은 범죄에 대한 사실적 증거자료(documentation)의 확보 및 이론의 발전에 있다.

범죄학에서 범죄 프로파일링에 대한 연구는 범죄자의 심리학적 성격을 추론하기 위

4) 광대경. (2001). “경찰수사를 위한 범죄심리연구의 활용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 p. 6.

5) 권창국. (2002). “범죄 프로파일링 증거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4호, p. 4.

해서 범죄자의 신체적 특징을 연구하는 학자들 및 범죄 프로파일링 결과를 범죄수사에 적용하는 것에 흥미를 가진 학자들에 의하여 진행되어 왔다.

가. 범인의 신체적 특징

유명한 이탈리아 내과 의사 Cesare Lombroso는 통계학적 비교를 통한 범죄자의 형식적인 분류를 시도한 첫 번째 학자 중의 한 명이다⁶⁾. Lombroso는 1876년에 『범죄인(The Criminal Man)』을 출판하였다. 그는 이 저서에서 인종, 나이, 성별, 물리적 특성, 교육, 지리학적 지역과 같은 유사한 범죄자들의 비교를 통해 범죄 행동의 기원과 동기를 더 잘 이해시켰고, 그 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였다.

Lombroso는 383명의 이탈리아인 죄수들의 외모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범죄행동을 진화론적이고 인류학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1〉 Lombroso의 생래적 범죄인의 외형적 특징

- 보통 사람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머리 크기와 모양
- 얼굴의 비대칭
- 과도하게 큰 턱과 광대뼈의 치수.
- 눈의 결함과 특이성
- 귀가 지나치게 크거나, 매우 작은 등 돌출적인 모양
- 비뚤어진 코, 독수리 부리나 새 부리 같이 솟아오른 콧망울
- 살찐, 부푼, 튀어나온 입술
- 늙은 동물 같이 처진 뺨
- 큰 입술, 가운데 부분이 돌출
- 비정상적인 치열(齒列)
- 움푹 들어간 아래턱 또는 과도하게 길거나 짧은 턱, 유인원과 같은 납작 턱
- 주름의 과다, 조로
- 두발의 기형
- 흉부 결함, 너무 많거나 적은 갈빗대
- 조화되지 않는 골반 성장(性徵)
- 과도하게 긴 팔
- 정상 수 이상의 손가락과 발가락
- 두개골의 불균형

6) Turvey. (2002). *Criminal Profiling: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Evidence Analysis (2nd ed.)*. London: Academic Press, pp. 3-7.

먼저 생래적 범죄자(born criminals)는 비정상적이고, 돌출적인 범죄자의 신체적 요인이 유전되면서 범죄자 유형으로 탄생함으로써 범죄자 된 경우를 말한다. 정신이상 범죄자(insane criminals)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과 이상성 때문에 범죄를 하는 경우이며, 기회적 범죄자(criminaloids)는 구체적 특성이 없는 가장 일반적인 범죄자의 유형이다. 이들은 정신적인 결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 처할 경우 범죄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미 조직된 그들의 정신과 정서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이들은 정신병학계에서 말하는 정신병적 성격장애 진단과 비교할 수 있다.

Lombroso의 생래적 범죄인이론에 따르면 생래적 범죄자들은 <표 1> 과 같이 18 가지 신체적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 하였다. 그는 범죄자들에게 더 많은 격세유전적인(atavistic)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Lombroso 이후 많은 범죄학자들이 지능, 인종, 유전적 형질, 빈곤 그리고 다른 생물학적 또는 환경적 요인들에 기초하여 잠재적인 범죄자와 범죄자를 분류하기 시작했다.

독일인 범죄학자 Dr. Erich Wulffen의 연구는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가석방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여성 성범죄자(Woman as a Sexual Criminal)』를 통하여 여성범죄자의 행동, 사회적, 심리학적, 생물학적 그리고 도덕적 원인들을 조사하였다. 그는 또한 다양한 여성 범죄자의 프로파일과 동기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방법에 따라 필요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Wulffen은 대부분의 여성범죄자의 행동은 특이한 여성성, 여성의 성적 혼란, 여성의 성적 비정상성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역시 독일인 범죄학자 Ernst Kretschmer는 범죄자의 신체유형과 성격유형, 그리고 범죄자의 잠재력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955년에 Kretschmer는 4,414건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4 가지 중요한 신체 유형에 대해 제안하였다.⁷⁾

7) Bernard and Vold, (1986). *Theoretical Criminology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57-58; Turvey, et, al. p. 6에서 재인용.

〈표 2〉 Kretschmer의 범죄자의 신체적 유형분류

- 무기력형(leptosome or asthenic): 키가 크고 말랐다. 줌도독질과 사기와 관련이 있다.
- 강건형(athletic): 잘 발달된 근육을 가지고 있다. 폭력범죄와 관련이 있다.
- 비만형(pyknic): 이들은 키가 작거나 뚱뚱하다. 기만과 사기범죄에 관련이 있지만 가끔은 폭력범죄와 상관이 있다.
- 복합형(dysplastic or mixed): 두 가지 이상의 신체 유형을 가진 경우. 폭력적, 윤리와 도덕에 대한 범죄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Kretschmer의 이론은 많은 지적을 받았다. 즉, 그의 연구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하여 검증되지 못했고, 범죄자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신체적 특징에 따라 특정 유형의 범죄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은 비과학적이며, 동시에 이들 범죄자 그룹을 정상그룹의 사람들과 비교해야 함에도 해당 연구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Lombroso와 Kretschmer의 연구가 범죄 프로파일링에 끼친 영향은 이들의 연구가 결국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을 비롯한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등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이들 범죄원인론의 특징을 기술적으로 조화시킨다면 범죄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범죄 잠재력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한계는 범죄는 어느 특정한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criminal)’라는 용어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감안하지 못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Lombroso와 Kretschmer의 이론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와서는 Lombroso의 3 가지 유형의 범죄인 분류법을 바탕으로 범죄학자들과 법의학 신경학자(forensic neurologists), 정신병학자(psychiatrists)와 심리학자(psychologists)들은 뇌 검사, 생래적 성격검사 등을 통하여 범죄의 유전성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나. 범죄수사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오스트리아의 형사법학자이자 범죄학자인 Hans Gross는 1898년에 『범죄심리학(Kriminalpsychologie)』을 발간하였고, 1901년에는 형사법학 및 범죄학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범죄인류학 및 형사법학회지(Archiv für Kriminalanthropologie und

Kriminalistik)」를 발간하였다. 그는 실증과학으로서의 범죄학을 주장하였고, 범죄원인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시각을 견지하였다⁸⁾.

Gross는 현대 범죄 프로파일링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으며, 범죄행동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범죄수사 과정에서 살인자, 방화범, 절도범, 화폐 위조범, 그리고 강간범의 행동을 구별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의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Gross는 전문가의 도덕성, 객관성, 물리적 증거에 대한 철저한 정밀 조사를 강조하였으며, 과학적 방법의 활용 및 범죄의 정확한 재구성을 중요시 여겼다. 그의 평생의 연구는 범죄수사를 전문화하는데 모아졌다.

한편 O'Connell and Soderman은 범죄 프로파일링을 다양한 범죄유형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들은 특정범죄의 상이한 유형에 대해 매우 상세한 프로파일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강도범의 경우 창문침입(window smashers), 상점강도(store burglars), 주택강도(residence burglars), 아파트 강도, 야간강도(night burglars), 단독주택강도 등으로 나누고 각 강도범의 성격적 특징들에 대해 기술하였다. 절도범은 줌도둑(sneak thieves), 소매치기(pickpockets), 사기꾼(swindlers)과 신용사기꾼(confidence man) 등으로 나누고, 각 유형의 성격적 특징을 기술하였으며, 이들은 방화범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그 특징을 설명하였다.

이들은 물리적 증거를 어떻게 검사하는 지에 따라 용의자의 범죄행동을 가려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물리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사용된 무기, 자동차, 이동경로 등을 확인하여 범죄를 재구성함으로써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범죄수사적인 측면에서 범죄 프로파일링을 연구하는 것은 법의학 및 심리사회학적 관점과 그 맥락이 닿아있다. 이것은 학문 발전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범죄수사는 범죄 사건에 대한 탐문과 심리를 통해 더 많이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감식수사(forensic investigation)는 물리적 증거에 대한 법의학적 검증을 필요로 하며, 범죄자의 행동은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s)을 통해서 보다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8) Turvey, et al., pp. 7-9.

2. 법의병리학적 측면

법의병리학(forensic pathology)은 법(law)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학적 원리와 지식을 적용하는 응용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병리학자들은 시체(상처의 형태, 질병, 환경적 조건, 피해자의 이력 등)의 사인(死因)과 관련이 있는 모든 법의학적 증거(forensic evidence)에 대한 감정을 담당한다⁹⁾.

1888년에 영국에서는 Whitechapel(a.k.a.-Jack the Ripper)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었는데, 당시 경찰감시인 George B. Philips 박사는 피해자의 사체에 나타난 피해특징을 근거로 범죄자의 성격을 추론하였다. 그는 통계적으로 제시되는 범죄자의 평균적 특성과 사체의 특징을 비교하기 보다는 특정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들을 정확히 조사하는 것을 신뢰했다. 즉, 그는 특정 범죄자와 피해자의 행동을 조사하여 범죄자의 성격을 추론하였다. 상처형태분석의 전문가들에 의해 상처를 분석함으로써 사용한 무기를 밝혀낼 수 있고, 그러한 무기를 선택한 용의자의 행동을 추정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용의자의 특징을 추론하는 근거가 된다.

법의병리학자들의 역할은 사망에 대한 사실과 상황을 구체화시키고, 용의자의 진술을 반박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범죄 프로파일링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의병리학의 독창적인 역할로 범죄 프로파일링을 그 영역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즉, 물리적 증거에 대한 감정 및 범죄의 재구성을 통한 범죄 프로파일링의 가능성과 용의자의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 행동과학적 측면

정신의학(psychiatry)은 정신 장애의 진단과 치료를 다루기 위한 의학의 한 분야이다. 법의정신과 의사(forensic psychiatrist) 또는 법정증언 정신과 의사(alienist)는 정신병을 법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연구하는 정신과 의사라고 할 수 있다. 정신과 의사는 개인 이력에 대한 조사, 검사결과의 활용, 성격에 대한 측정을 확인하고 직접 대면하여

9) Sugden. (1995). *The Complete History of Jack the Ripper*. New York: Carroll & Graff. p. 131.

실시한 임상적 면접을 통해 정신장애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도출하도록 훈련된다. 이러한 전문적 지식을 특정한 범죄사건의 용의자를 추정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범죄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즉, 범죄사건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증거 및 범죄현장, 피해자의 특징, 피해상황 등을 바탕으로 범죄자의 정신이상을 추론하고, 범죄자에 대한 추정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미국의 정신과의사인 James A. Brussel은 범죄 프로파일링에서의 정신의학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증명하였는데, 그는 범죄현장의 행동적 증거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범죄자의 정신적 장애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알려지지 않은 범죄자의 특징들을 추론하고, 일부분은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행동 및 자신의 전문적 지식으로 범죄자 행동을 비교하였다. Brussel은 또한 특정 정신병이 특정 신체와 연관이 있다고 하면서 Ernst Kretschmer의 신체적 특징과 범죄와의 연관성을 지지하는데,¹⁰⁾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미국의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미치광이 폭파범(Mad Bomber)」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4. 미연방수사국(FBI)

1960년에 미국법집행부(American Law enforcement officer)의 Howard Teten은 캘리포니아 San Leandro 경찰에 있을 때 범죄 프로파일링의 접근법 개발을 시작하였다¹¹⁾.

이후, FBI의 특수 요원이 된, Howard Teten은 1970년에 그의 범죄 프로파일링 프로그램을 창시하였다. 그는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들을 통해 수사를 지원할 것을 강조하여 FBI 국립아카데미에서 범죄 프로파일 과정을 가르쳤다. 같은 해에 Teten은 텍사스 애머릴로(Amarillo)의 FBI요원에게 그의 첫 번째 프로파일링을 제공하였다. 또한 Teten은 Pat Mullany와 함께 한 팀이 되어 FBI의 뉴욕부서로 진출되어 범죄 프로파

10) Brussel. (1968). *Casebook of a crime psychiatrist*. Bernard Geis Associates; distributed by Grove Press. pp.29-46; Turvey, et, al. p. 13에서 재인용.

11) Teten. (1997). Offender profiling. In W. Bailey(Ed), *The encyclopedia of police science*. NY: Garland.

일링의 이상심리학적 관점을 가르쳤다. Mullany와 Teten 팀은 범죄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였고, Mullany는 이상행동(abnormal behavior)의 범위에 대해 연구하고, Teten은 이상행동이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찾는 것으로부터 확인될 수 있는지 연구하였다.

1972년에 FBI 아카데미가 설치되었고, Teten과 Mullany는 이곳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을 우선 FBI 인질협상지침에 적용하였는데, 1974년과 1975년에 Mullany는 몇몇 중요한 인질상황의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었다. 이것은 후에 FBI의 특별 수사관 Con Hassel과 Tmo Strenz에 의해 수정되고 확장되었다.

1972년은 또한 유명한 FBI 요원 Jack Kirsch에 의해 FBI 내에 「행동과학부(Behavioral Science Unit: BSU)」가 발족되었다. Mullany와 Teten은 많은 강력 범을 해결하도록 프로파일링을 제공했고, 이들의 활동으로 범죄 프로파일링의 중요성과가 세계에 널리 퍼졌다. 이후에 BSU는 프로파일러 양성을 위한 요원의 채용과 훈련을 계속하였고, 1990년에 재편되었다. 현재는 버지니아 콰티코(Quantico)에 있는 FBI 아카데미의 「국립강력범죄분석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the Analysis of Violent Crime: NCAVC)」의 소속 하에 있다.¹²⁾

FBI의 프로파일링 부서의 발달이나 범죄 프로파일링 이론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미국의 많은 법집행 기관들은 그들의 프로파일링 부서와 그들의 인원을 국제적으로 성장시키는데 헌신적이었다. 미국과 같이 프로파일링 부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로는 호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각 국의 법집행기관 및 퇴직 프로파일러들이 설립한 교육기관을 통한 프로파일링 교육으로 많은 국가에서 전문적인 프로파일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기술수준도 비슷한 수준까지 향상되었다. 이러한 선순환적인 변화는 범죄수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12) 국립강력범죄분석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the Analysis of Violent Crime: NCAVC)는 그 소속 기관으로 ① Behavioral Analysis Unit (BAU) -- East/West Regions; ② Child Abduction Serial Murder Investigative Resources Center (CASMIIRC); ③ Violent Criminal Apprehension Program (VICAP) 등이 있다. <http://www.fbi.gov/hq/isd/cirg/ncavc.htm>, 2007. 8.9 검색

제3절 범죄 프로파일링 및 범죄 프로파일러의 요건

1. 범죄 프로파일링의 요건

프로파일러가 범죄 프로파일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¹³⁾ 첫째, 법의학적 분석 및 행동증거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즉, 범죄 프로파일링을 위해서는 현장의 물리적 증거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결과를 상세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범죄현장의 특징과 행동의 통합은 프로파일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자와 피해자의 행동은 프로파일러의 추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행동적 증거는 충분한 법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둘째, 피해자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피해자학은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범죄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피해자학에 대한 사전적 지식은 범죄 피해자의 특징을 통하여 범죄자의 동기, 수법 그리고 범죄자의 특이행동요인 등을 추론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피해자의 일상활동에 대한 분석은 범죄자의 행동증거를 찾아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범죄현장에 대한 완전한 확보가 필요하다. 범죄현장은 범죄자의 현장접근방법, 공격방법, 행동수준, 장소적 특징, 성적 행위의 성질과 결과, 범행도구, 언어적 활동, 그리고 후속 범죄에 대한 경고행위 등을 알려주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범죄현장의 증거는 법의학적 증거 및 피해자학적인 증거로 구분할 수 있다. 범죄현장을 통하여 범죄자의 마음, 계획, 성적 환상 그리고 동기 등을 추론할 수 있고, 범행수법(Modus Operandi: MO)과 상징적 행위(signature behaviors)를 구분할 수 있다.

범죄현장에 나타난 물리적 증거 및 행동적 증거를 통한 추정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

13) Thornton. (1997). *The General Assumptions and Rationale of Forensic Identification*, in Faigman, D., Kaye, D., Saks, M., & Sanders, J.(Eds.), *Modern Scientific Evidence: The Law and Science of Expert Testimony*, Vol.2, St. Paul MN: West Publishing Co.

제로 한다¹⁴⁾.

- ① 어떠한 범죄자도 동기 없이는 행동 하지 않는다.
- ② 모든 단독범죄자들은 고유의 행동과 동기를 가진다.
- ③ 서로 다른 범죄자들은 완전히 다른 이유 때문에 동일한 또는 유사한 행동을 보여준다.
- ④ 인간행동, 인간 상호작용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들의 성질이 주어진다면, 두 케이스들은 완전히 같지 않다.
- ⑤ 인간행동은 환경적인 생물학적인 요소들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독특하게 개발된다.
- ⑥ 범인의 수범행동은 시간, 범행 횟수에 따라 진화한다.
- ⑦ 범죄자는 많은 범죄, 또는 단 하나의 범죄를 행하면서도 다양한 동기를 가질 수 있다.

넷째, 과학적 방법을 활용한 행동적 증거분석이 필요하다.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프로파일러가 인종이나, 성적 차별, 고정관념, 개인적 경험이나 일화에 대하여 가지는 선입견에서 탈피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프로파일러가 특정 범죄자들의 동기에 관한 결론이나 판단에 대한 기초로써 아직 관련되지 않은 유사한 사례를 대입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과학적 방법은 관찰, 데이터 수집, 추측, 가설 검증, 그리고 이론개발 등의 기본적인 단계를 거친다.¹⁵⁾ 행동증거분석을 위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관찰단계로 해당사건의 파악된 감식자료, 행동증거, 피해자 특징, 범죄 현장의 특징에 대하여 관찰한다.
- ② 적절한 정보수집단계로 범죄현장의 특징과 피해자 특징, 행동증거, 감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수집한다.
- ③ 가설이나 설명을 설정하는 작업, 즉 추론단계로 알려진 물리적 증거, 피해자학, 범죄행동의 패턴, 잠재적 동기, 개인적 특성에 대한 정보 등을 기초로 한다.
- ④ 가설검증단계로 실험, 물리적 증거 및 행동적 증거에 대한 분석과 해석, 범죄자 특성 분석 등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14) Turvey, et al., p. 42.

15) Faigman. (1997). *Modern Scientific Evidence: The Law and Science of Expert Testimony*. MN: Thomson west. pp. 47-48.

- ⑤ 결과해석단계로 사건의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자 특징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이때 물리적 그리고 행동적 증거에 의해서 지지되지 않는 특징은 과감히 버리고, 증명될 수 있는 것만을 판단의 근거로 활용한다.
- ⑥ 결론도출 및 가설수정단계로 범죄자 특징을 암시하는 행동패턴, 물리적 그리고 행동적 증거, 피해자의 특징, 범죄현장 특징에서 연역되는 심리와 정서, 그리고 주변 관계를 가진 범죄용의자를 추정하는 프로파일을 제시한다.

2. 범죄 프로파일러의 요건

범죄 프로파일링은 사실상 과거에도 수사상 활용되었지만 자신을 범죄 프로파일러라고 자신있게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프로파일링 작업을 통하여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어 사건을 해결해도 프로파일링 작업이 수사의 한 과정에 묻히거나, 반대로 오히려 사건해결을 지연시키거나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능한 프로파일러는 법의학,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범죄의 진행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범죄현장에서 수사관들은 많은 비슷한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현장의 유사성과 수법의 유사성을 밝혀내는 작업을 행하며, 이러한 과정이 범죄 프로파일러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만든다. 유능한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¹⁶⁾.

첫째, 분석적 사고능력(critical thinking)이 필요하다. 범죄 프로파일러는 무엇보다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범죄 프로파일러들은 강하고 잘 연마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규칙적으로 사건들에 다가가야만 한다. 그들은 세부사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모든 가정들에 기꺼이 의문을 제기해야만 하며 모든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의학적 지식과 범죄수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6) Turvey, et al., pp. 47-51.

둘째, 범죄 프로파일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자신의 욕구·취향·희망·도덕 등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이다. 이는 직면한 사건에서의 범죄자의 욕구·취향·희망·도덕 등을 더욱 명백히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준다. 프로파일러 자신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직면한 범죄자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범죄자나 피해자에게 전이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¹⁷⁾.

셋째, 적당한 연령에서 나오는 생활경험이 필요하다. 나이가 많다고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니지만, 생활하면서 얻는 지혜와 특별한 안목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프로파일러는 다양한 경험 보다는 범죄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경험이 우선적으로 중요시되며, 경험에서 얻은 식견을 사건에 대한 추론과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필요하다.

넷째, 직감(intuition)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요구된다. 특정한 양의 삶의 경험의 축적은 반드시 직감을 이끌어낸다. 직감이란 특정한 이유, 또는 합리적, 또는 명료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알거나 믿는 것을 말한다. 만약, 우리가 믿음, 또는 단지 알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직관은 범죄자이다. 직감이 가지는 성격의 매력성에도 불구하고, 직감과 직관적인 본능은 선입견, 편견, 정형화, 그리고 축적된 무지의 연장선상일 수 있다. 그것들은 심각하게 수사전략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직감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지 않다면, 수사 전략, 제안 혹은 최종 프로파일에서 제외되어야만 한다.

직감은 전문가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왜,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한다. 직감은 전문가를 무책임하게 만들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변호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들과의 견해를 정당화하는 데에 더욱 책임감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¹⁸⁾

다섯째, 편견(bias)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범죄 프로파일러는 항상 객관적

17) Depue, Douglas, Hazelwood & Ressler. (1995). *Criminal Investigative Analysis: An Overview*, in Burgess, A. and Hazelwood, R.(Eds.), *Practical Aspects of Rape Investigation*, 2nd ed., NY: CRC Press. pp. 119-123.

18) Thornton, et al., p. 17.

으로 사건과 관련된 정보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주어진 정보는 잠재의식적으로 프로파일러로 하여금 편견을 갖게 할 수 있고, 편견에 따른 용의자 프로파일을 야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이웃, 배우자, 친척 등 시체를 발견한 사람일 수 있다. 특히 피해자 주변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를 통하여 이들에 대한 선입감이나 편견이 더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 프로파일러는 좀 더 객관적으로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고, 연역적 추론의 기술을 세련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용의자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범죄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프로파일러가 최종적인 프로파일을 제시하면서 범죄자에 대하여 병자, 정신이상자, 미치광이, 쓰레기 같은 사람, 아무짝에도 못 쓸 사람, 부도덕한 사람 등 프로파일러 자신의 도덕적 감정을 담아 추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감정들은 범죄 프로파일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범죄자의 성격적 특징을 설명할 때 가능한 형용사들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개방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개방적인 사고가 비판적 사고와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선입견이나 편견, 혹은 연역적 이론들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아무것도 예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여덟째, 범죄자적 사고(thinking like a criminal)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프로파일러는 특정사건에 따라 해당 범죄자의 지식의 수준과 사용가능한 범죄자의 기술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범죄자는 완전하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다른 특정한 욕구, 경험, 그리고 관념들에 의하여 자극을 받고 범죄를 행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프로파일러는 모든 행동증거를 시험하고, 각각의 행동에 의해 만족된 욕구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하나의 행동으로 범죄자를 추정할 수 없으며, 행동의 연속성과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유용한 프로파일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절 범죄 프로파일링의 방법

1. 귀납적 범죄 프로파일링(Inductive Criminal Profiling)

가. 개념

귀납적 프로파일링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개념인 귀납적 추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귀납적 추론(inductive reasoning)이란 특정한 결론을 제시하고, 이것의 진실 혹은 거짓인지를 논증하는 것을 말한다. 귀납적 추론은 가설의 발달을 전제로 하며, 이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2가지 유형을 들 수 있다. 첫째, 귀납적 일반화는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일반적인 것을 도출하는 것으로 결론은 단독사건이나 개인적인 사건 또는 소수의 사건이나 개인의 관찰로부터 얻은 특성들로부터 형성된다.¹⁹⁾

두 번째 통계적 추론(statistical argument)은 확률(probability)과 가능성(likelihood)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상식(common sense)으로 고정관념화 되는 경향이 있다.

프로파일링이 가장 귀납적인 경우는 심리학적 징후(psychological syndromes)와 동등하다고 보는 것이다. 심리학적 징후는 일종의 징조(symptoms)로서 신호와 징조를 말한다. 즉 특정한 사안에 집단 혹은 개인이 반응하는 증상들의 결합체라 할 수 있다. 정신의학계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DSM-III(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III)에 포함하면서 이를 심리학적 신드롬으로 불렀다. 이후 형사법학계에서는 “프로파일”이란 실무수사적 용어를 “신드롬”이란 심리학적 용어와 함께 받아들였다.

귀납적 범죄 프로파일링은 범죄자 특징의 결정체로서 추론된, 상호 연관성이 있고, 경험적이며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행한 범죄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범죄자 특징의 결정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²⁰⁾. 귀납적 프로파일은 평균적

19) Walton. (1989). *Informal Logic: A Handbook for Critical Argument*.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98-199.

인 수준에서 가장 잘 이해된다. 이것은 통계학적 또는 비교적인 분석의 성과이며, 일반화를 교육받은 결과이기에 “귀납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이것은 신드롬이 구성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

귀납적 범죄 프로파일링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연구자료 및 교도소 수용자가 제공한 공개적 그리고 비공개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다. 또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험, 일화적인 자료(anecdotal data) 역시 특정 범죄자의 특징들에 관한 추론의 기본 방식으로 사용한다.

귀납적 프로파일을 수집하고 통계적으로 일반화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자료는 첫째, 투옥된 재소자면접 등에서 얻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연구결과, 둘째, 프로파일러 자신의 기억, 경험 등에서 얻은 경험칙, 셋째, 국가 수사기관이나 프로파일링 전문기관 등이 국내 외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을 정리하여 보관 중인 데이터, 즉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등이다.

귀납적 범죄 프로파일링 모델의 장점은 간단하고, 즉시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매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전문적인 법의학 지식, 교육, 훈련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많은 시간이나 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귀납적 프로파일링은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잠재적 특징과 관련된 자료를 빠르게 제공한다.

귀납적 범죄 프로파일링 모델의 단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 정보 자체가 모집단 표본의 한계를 가진 상태에서 일반화되기 쉽고, 구체적 사건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그것은 개별적 사례의 특징인에 대한 프로파일링결과가 아니다. 단지, 선정된 표본을 중심으로 일반화시킨 결론이며, 사람을 모으고 자료를 수집하는 지식과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지한다. 이 일반화는 개인적 범죄 행동의 몇몇의 잠재적 요소를 예견하려는 시도로 사용하지만 결과적으로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높지는 않다.

둘째, 귀납적 프로파일은 체포된 범죄자로부터 제한적으로 수집된 자료의 축적을 통해서 일반화되고 평균적이게 된다. 귀납적 범죄프로파일은 현재 체포되지 않은 범죄자를 고려할 때 완전하거나 명확하지 않다. 이것은 범죄자 모집단에서 가장 지적이거나 숙련된 범죄자들이 검거되지 않음으로써 자료를 얻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미검거

20) Petherick. (2006). *Serial cri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in behavioral profiling*, California: Elsevier. pp. 16-18.

범죄자들은 법집행기관의 체포에서 벗어남으로써 프로파일링에 필요한 결정적인 정보제공을 차단하는 것이다.

세 번째 중요한 단점은 귀납적 범죄프로파일의 일반화는 무죄자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부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비전문적이고, 대단히 호전적인(trigger-happy) 프로파일러에 의해 오류가 없는 예측적인 측정을 하는 방법으로 귀납적 범죄프로파일을 사용할 때 발생한다. 결국, 수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점은 귀납적 프로파일링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충분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귀납적 범죄 프로파일링의 결론과 감정의 근거가 되는 잘못된 전제 또는 명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프로파일러는 지식, 경험, 범죄현장의 재구성 없이 행동을 암시하는 물리적 증거를 해석할 수 있다.
- 언제든지 범죄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시간의 낭비
- 알려진 범죄자들의 소집단은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알려지지 않은 범죄자들이 가진 개인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 과거의 범죄자들은 유사한 환경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일반성을 가졌고, 구체적인 동기로 인해 행동하는 현재의 범죄자들과 유사하다.
- 개인적 인간 행동과 특성들은 일반화될 수 있고, 매우 작은 표본으로 특성과 행동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동일하게 예측할 수 있다.
- 행동과 동기는 시간이 지나도 개인 내적인 것은 변화하지 않고, 정적이며, 예측할 수 있는 특성들이다.

나. 범죄수사분석(Criminal Investigative Analysis)

FBI는 1983년에 국립강력범죄분석센터(National Center for the Analysis of Violent Crime: NCAVC)를 설치했고, 이 센터는 현재 행동분석단(Behavioral Analysis Unit: BAU), 아동유괴 및 연쇄살인수사정보센터(Child Abduction Serial

Murder Investigative Resources Center: CASMIRC) 그리고 강력범체포프로그램 (Violent Criminal Apprehension Program: VICAP)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²¹⁾.

범죄수사분석(Criminal Investigative Analysis: CIA)은 강력범체포프로그램 (VICAP)을 시행하면서 각 수사관들이 일정한 양식에 의해 보고서를 작성, 이를 컴퓨터 분석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범죄자를 귀납적으로 추정하는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범죄수사분석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수사관들이 용의자를 선별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에게 용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²⁾.

FBI는 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주로 강간이 개입된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이들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분류하는 작업을 벌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²³⁾.

FBI는 이들과의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범죄자를 조직적인 범죄자와 비조직적인 범죄자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표 3> 과 같이 조직적인 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정신병질자이며, 자신의 일상생활을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끌어간다. 그들의 범죄현장은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무기와 증거를 인멸하며, 심지어 사체를 은닉하기 위한 시도를 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비조직적인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정신병자이며, 자신들의 범죄현장을 청소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체를 은닉하는 등의 시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

21) <http://www.fbi.gov/hq/isd/cirg/ncavc.htm>, 2007년 11월 10일 검색.

22) Rachel. (2005). *Crime Analysis and Crime Mapping*, California: Sage Publication, Inc, p. 14.

23) Burgess, Hartman, Ressler, Douglas, & McCormack. (1986). Sexual homicide: A motivational mod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3), pp. 251-272; Douglas, Ressler, Burgess, & Hartman. (1986). Criminal Profiling from crime scene analysi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4(4), 1986, pp. 401-421

〈표 3〉 범죄자 유형에 따른 범죄자의 특징

정신병질적인 조직화된 범죄자의 범죄현장	정신병질적인 비조직화된 범죄자의 범죄현장
평균 이상의 지능	평균 미만의 지능
사회적으로 유능	사회적으로 부적응
숙련된 업무 종사	비숙련된 업무 종사
성적으로 유능	성적으로 무능
상위 형제 서열	하위 형제 서열
부친 직업 안정	부친 직업 불안
아동시절 일관성 없는 처벌 경험	아동시절 거친 처벌 경험
범행 과정 중 안정된 기분	범행 과정 중 격노한 기분
범행시 음주	범행시 약간의 음주
일상적인 직장 스트레스	약간의 직장 스트레스
파트너와 동거	혼자 생활
자동차를 이용한 원거리 범행	자신의 주거지 또는 직장 근처에서 범행
범행 후 미디어 뉴스 관심 많음	범행 후 미디어 뉴스 약간 관심
범행 후 간혹 직업 또는 직장 이동	범행 후 뚜렷한 행동 변화

자료 : Wecht. (2004). Crime Scene Investigation: Crack the case with real-life experts, New York, p. 127.

〈표 4〉는 FBI가 범죄자의 유형에 따라 범죄의 현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만약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이고 강력한 통제도구가 있고, 살해 전에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범행에 사용된 무기나 증거가 없다면 범죄자는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졌고, 사회적으로 유능하며, 범행 과정에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조직화된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FBI는 세 명의 여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하비 메레이 글래트만 사건(1957년)이나 간호사 8명을 살해한 리처드 스펙 사건(1966년), 여대생과 모친 등 8명을 살해한 에드먼드 챔퍼 사건(1973년), 레이건대통령 저격범인 존 힝클리 사건(1981년) 등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통하여 조직화된 범죄자와 비조직화된 범죄자에 대한 개념정립을 명확히 하고, 지금까지 프로파일링과 수사현장에 활용하고 있다²⁴⁾.

24) <http://www.fbi.gov/hq/isd/cirg/ncavc.htm>, 2007년 11월 10일 검색.

〈표 4〉 범죄자 유형에 따른 범죄현장의 차이

정신병질적인 조직화된 범죄자의 범죄현장	정신병질적인 비조직화된 범죄자의 범죄현장
계획된 공격	우발적 공격
피해자는 주로 낯 선 자	피해자는 주변인
신체적인 피해	비신체적인 피해
충분한 대화	최소한의 대화
범죄현장에 대한 정돈 또는 연출	범죄현장의 비정돈
피해자에 대한 복종적 태도 요구	피해자에 대한 갑작스런 공격
피해자에 대한 억압 도구의 사용	피해자에 대한 약간의 억압 도구의 사용
살해 이전에 공격적인 행동	살해 후에 성적인 추행
사체 은닉	사체 방치
무기나 증거의 인멸	종종 무기나 증거를 현장에 노출
사체 이동 유기	살해 현장 사체 방치

자료 : Ressler & Burgess. (1985)의 재구성

Ressler는 범죄수사분석(CIA)의 과정을 프로파일을 입력하는 단계, 프로파일러가 판단하는 과정, 범죄를 평가하는 단계, 범인을 추정하는 단계, 수사단계, 체포단계 등의 여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²⁵⁾.

다. 수사 심리학 프로파일링(Investigative Psychology Profiling)

심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범죄행동은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성향, 수동적이고 좌절된 공격성, 기형적인 심리적인 욕구 등의 정신병질적인 성향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본다. 실제로 많은 연쇄살인범이나 연쇄강도범, 연쇄강간범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로 분류되고 있다.

수사 심리학(Investigative Psychology: IP) 프로파일링은 이러한 심리학적 배경지

25) Petherick. (2006). *Serial cri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in behavioral profiling*, California: Elsevier. p. 37; 임준태. (2004). “강력범죄에서의 범죄자 유형 분석기법(Criminal Profiling)의 도입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호, pp. 359-360.

식을 가지고 범죄자를 추정하는 기법으로 범죄자의 행동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 분석을 시도한 영국의 응용심리학자인 Canter에 의해 발전되었다²⁶⁾. Canter는 □범죄수사 분석과 수사 심리학은 분명하게 차이가 나며, 수사 심리학은 범인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수사 심리학자는 근본적으로 수수께끼 같은 범인행동 영역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수사 심리학이 심리학적 전문지식과 이론에 근본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Canter는 범죄수사분석(CIA)과 함께 전체 수사과정의 한 과정으로서의 수사 심리학 프로파일링의 의의와 역할을 강조하였다.

수사 심리학 프로파일링은 첫째, 범죄자의 사람들과의 관계설정능력(interpersonal coherence), 둘째, 시간과 장소의 상징성(significance of time and place), 셋째, 범죄의 특징(criminal characteristics), 넷째, 범죄경력(criminal career), 다섯째, 법과학에 대한 경계(forensic awareness) 등의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자를 귀납적으로 추정하는 기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먼저 범죄자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설정능력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때 상대방을 대하는 스타일을 말한다²⁷⁾. Canter는 범죄자가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는 범죄자가 평상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태도가 반영될 것이고, 대체로 사람들의 태도는 상당히 일관성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고 본다. 평상시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강간범이라면 피해자에게 역시 이기적인 행동을 보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의 시간과 장소의 상징성은 범죄자는 평상시 자신이 편하게 느끼고, 자신있게 행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범행시간대와 장소를 통하여 범죄자를 추론할 수 있다. 즉, 범죄자는 심리적으로 평상시와 같이 편안하게 행동할 수 있고, 범죄자가 잘 아는 장소를 선택하여 범행을 행한다고 보는 것이다²⁸⁾.

26) Canter. (1998). Profiling as poison, *Inter alia*, 2(1), p. 11.

27) Canter. (1995). *Criminal Shadows: Inside the Mind of the Serial Killer*. London: Harper Collins.

28) Ainsworth. (2001). *Offender Profiling and Crime Analysis*. Essex, UK: Willan Publishing, p. 199.

세 번째의 범죄의 특징은 범죄수사관들 자신이 취급했던 사건에 대해서 수사관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범인을 추정하는 것이다. 수사관이 이미 취급했던 사건들과 범죄자와의 심문과정 등을 통하여 범죄자의 성격과 범죄의 특징을 유형화 한 정보나 지식 등을 통하여 범죄자를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앞서 FBI가 범죄자를 조직화된 범죄자와 비조직화된 범죄자로 분류하여 범죄자상을 추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의 범죄경력은 범죄자들은 과거의 범죄행위와 유사한 행동과 수법을 보여준다는 것에 근거를 한 것이다. 특히 연쇄범의 경우 과거와 유사한 행동과 수법을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보다 정교한 수법으로 범행을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유사한 범죄자들의 범죄경력을 분석하여 일관성 있는 범죄경력자를 찾아내는 과정을 통하여 범죄자를 추정할 수 있다.

다섯 번째의 법과학에 대한 경계는 범행현장의 유류물 등에 대한 DNA분석 등의 법과학적 감식으로 인하여 자신이 체포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범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정액 DNA검사로 검거된 적이 있던 강간범은 다시 범행을 할 경우 콘돔을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감식수사를 어렵게 할 수 있고, 모자나 장갑, 마스크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변장을 하기도 한다. 즉 범죄감식을 방해하기 위한 현장훼손이나 증거인멸 등의 시도가 오히려 범죄자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²⁹⁾.

Canter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감안하여 강간범을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유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계획적인 범죄자로 범행대상을 단순히 범행대상으로만 인식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강간도구나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를 휴대하는 등의 사전준비를 한다. 둘째 유형은 범행대상을 자신의 분노와 공격을 표출하는 도구로 삼아 노골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공격하며,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적인 행위에 동참하도록 요구한다. 셋째 유형은 범행대상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경우로 피해자의 외모를 칭찬하는 등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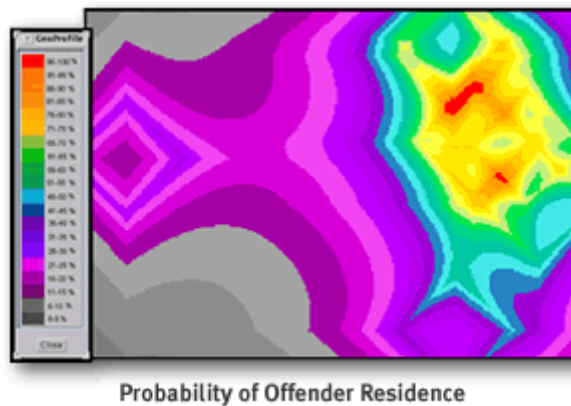
29) Turvey, et al., pp. 529-533.

다. 이 유형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범행대상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길 원한다고 한다.

라. 지리추정 프로파일링(Geographic Profiling)

지리추정 프로파일링(Geographic Profiling)은 범죄자는 집, 직장, 학교, 사회적 활동지역, 여행 등 평상시 범죄자에게 친근하고 익숙한 곳을 범죠헌장으로 정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³⁰⁾. 범죄자는 범죠헌 대상지역을 정할 때 자신의 거주지역(anchor points)을 중심으로 범죠헌대상자를 처음 만나는 지점, 공격하는 지점 등을 정한다고 전제하고, 범인의 범죠헌동 유형과 수법을 지리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리추정 프로파일링은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을 배경으로 한 과학적 통계 분석에 의한 범죠헌자 추정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³¹⁾.

<그림 2> 지리추정 프로파일링에 의한 용의자 거주지역 추정³²⁾



Rossmo는 지리추정 프로파일링을 컴퓨터를 통하여 보다 더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30) Egger. (1998). *The Killers among Us: An Examination of Serial Murder and Its Investigation*,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31) Rossmo v. Vancouver Police Board. (2002). <http://www.hamiltonhowell.ca/cases/rossmo.htm>, 2007년 11월 10일 검색.

32) <http://www.criminalprofiling.ch/types.html>, 2007년 11월 10일 검색.

Rigel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범죄정보와 다양한 변수를 입력시킬 경우 심각한 위험지역(jeopardy surface)과 평균지역, 안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범죄 지도(criminal map)를 얻을 수 있다. 범죄지도에 심각한 위험지역은 적색, 평균지역은 주황색, 안전지역은 청색 등으로 표시되는데, 적색지역으로 나타난 곳은 평균 95% 이상, 주황색 지역은 90% 이상의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캐나다의 밴쿠버경찰이 이 시스템을 2002년부터 공식적으로 도입하여 강력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현재는 미국, 영국,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각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Rigel 프로그램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데이터를 조정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 그 효과가 크지 않고, 프로파일러가 상당한 숙련을 해야 하며, 강력범죄연계분석시스템(ViCLAS) 등과 공조하는 것이 그 효과가 더욱 크다는 지적도 있다.³³⁾

2. 연역적 범죄 프로파일링(Deductive Criminal Profiling)

가. 개념

범죄 프로파일링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는 물리적인 행동적인 증거로부터 범죄자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이다³⁴⁾. 프로파일러는 범죄 현장에 남겨진 머리카락과 정액 등의 물리적 증거를 보고, 범죄자의 피부색과 특정한 색의 두발을 가진 남자라고 연역할 것이다. 행동적 증거로부터는 범죄자의 일상활동과 성격 등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추론은 연역적 추론으로 연역적 범죄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역적 추론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연역적 추론은 만약 전제가 진실이라면 결론 또한 진실이어야 한다. 연역적 논리에서, 결론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제로부터 불가피하게 따라온다. 만약 그 전제가 참이라면, 내려진 결론은 타당하다.

연역적 추론은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으로 이르는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연역적

33) Petherick. (2006). *Serial cri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in behavioral profiling*, California: Elsevier, p. 43.

34) Turvey, et al., pp. 35-36.

추론의 예를 들 수 있다.³⁵⁾

- 전제: 피해자의 시체가 외딴 곳에서 발견되었다.
- 전제: 처리한 장소에서 타이어 자국이 발견되었다.
- 전제: 만약 그 타이어 자국이 범죄자의 것이라면, 그 범죄자는 이동성이 있고, 동시에 이동성이 있는 것에 접근 가능할 것이다.

두 전제를 구체적 결론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물리적 증거인 (타이어 자국)과 행동 (외딴 곳으로 숨기려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사건해결을 위한 수사전략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연역적 범죄 프로파일링은 범죄와 관련된 물리적 증거와 행동 증거의 패턴을 수렴하여 추론된 범죄자의 특성들을 종합한 것을 말한다. 사실상 연역적 범죄 프로파일링은 범죄분석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범죄나 연쇄범죄에 대해 범죄자가 책임져야 할 증명된 특징들과 수사와 관련된 것들을 검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연히 증거를 기초로 한 범죄분석과 피해자적 정보, 논리적인 추론, 증거로부터 도출된 각각의 범죄자특징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기본적으로 연역적 범죄 프로파일링은 범죄의 과정을 검사하고, 증거를 평가하며, 검증이나 검사의 결과를 중요시하고, 특정 범죄나 연쇄 범죄의 행동 증거로 간주되는 감정(鑑定)을 전제로 한다.³⁶⁾ 그러므로 연역적 범죄 프로파일링은 과학적 원리와 지식의 사용을 수반하고, 교환원리(exchange principle), 비판적 사고, 분석적 논리(analytical logic)와 동적인 증거(evidence dynamics) 등의 개념을 필요로 한다.

교환원리는 범죄자가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과 접촉한 뒤에 남기는 흔적으로 법의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한다. 비판적 사고는 신념과 행위를 이끌어내는 관찰, 경험, 반영, 추론 또는 의사소통에 의해 얻어진 정보를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기술적으로 개념화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말한다.³⁷⁾

35) Petherick, et al., pp. 22-24.

36) Baeza, Chisum, Chamberlin, McGrath & Turvey. (2000). Academy of Behavioral Profiling: Criminal Profiling Guidelines, *Journal of Behavioral Profiling*, 1(1).

37) Turvey. (1999). *Criminal Profiling: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Evidence Analysis*

분석적인 논리는 범죄현장에서의 증거분석 능력과 이후의 서류분석을 통한 논리의 정립과 결과에 대한 추론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건에서 확립된 사실에 대해 검증가능한 가설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현존하는 증거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연역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범죄 프로파일러의 목적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와 행동적 특징들을 통하여 범죄자의 특징을 추론하여 수사관들의 수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범죄 수사든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용의자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을 늘 가져야 한다. 특정인을 범죄자라고 지목할 수는 없지만, 범죄자에 대한 일반적인 성격이나 특징을 설명해줄 수는 있어야 한다.

나. 행동증거분석 프로파일링(Behavioral Evidence Analysis Profiling)

행동증거분석 프로파일링(Behavioral Evidence Analysis Profiling)은 연역적인 추론방법(Deductive Method)의 새로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Turvey에 의해 고안된 이 분석방법은 기존의 FBI나 범죄자 프로파일러가 행하던 공식적인 통계를 이용한 귀납적인 추론방식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출발했다. 행동증거분석은 범죄현장에 떨어진 물리적인 증거물품을 감식하여 범죄자를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만약 현장에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다면 범죄자에 대해 아무런 추론도 할 수 없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³⁸⁾

행동증거분석의 장점은 프로파일러가 추측이나 가정을 배제하고 현장에 떨어진 증거와 범죄자와의 관계를 증명해 갈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있다. 행동증거분석 프로파일링 방법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전체 형상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장감식, 그리고 프로파일러에 의해 범죄현장과 범죄자행동의 관련성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칭할 수 있다³⁹⁾. 프로파일러는

(2nd ed.), London: Academic Press.

38) Petherick, et al., (2006). p. 46.

39) Turvey. (2002). *Criminal Profiling: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Evidence Analysis* (2nd ed.). London: Academic Press, p. 41.

이 단계에서 사건을 둘러싼 모든 물리적 증거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고, 그것의 본질과 가치를 결정하게 되며, 법원의 유죄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다각적인 범죄감식을 통하여 프로파일러는 프로파일링에 기초가 되는 증거가 무엇인지, 현장에서 찾지 못한 증거가 무엇인지, 또한 잘못 해석된 증거는 없는지, 수집된 증거들을 통하여 후속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일상활동이론에서 착안된 것으로 일상활동이론의 핵심은 범죄피해자는 일상적인 활동스타일, 취미, 친구, 적대적 관계, 인구통계학적 특징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즉 범죄피해자와 범죄자는 일상활동적 측면에서 상호 공통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성격과 행태적 특징을 조사하는 것은 그만큼 범죄자의 성격과 행태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단계는 프로파일러가 범죄현장의 특징을 찾아내는 것으로 범죄자의 현장접근 방법, 위치형태, 성적 행동의 성격과 후속조치, 사용한 도구, 말투와 그 형태, 범죄자가 착용한 장갑이나 스키마스크, 변조 목소리, 콘돔 사용 등 범죄자가 자신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 등의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범죄자의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즉, 그동안의 물리적 증거, 피해자의 특징, 범죄현장의 특징 등을 종합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연역적으로 추론하여 범죄자의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제3장 강력범의 프로파일링

제1절 연쇄살인범의 프로파일링

1. 연쇄살인범 프로파일링을 위한 일반적 데이터

가. 연쇄살인범의 일반적 특징

연쇄살인범에 의한 피해자의 수를 몇 명 이상으로 할 것인가는 연쇄살인범을 규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많은 수사기관과 연구자들은 대체로 최소 3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주장한다.⁴⁰⁾ 이에 대하여 2명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⁴¹⁾, 그럴 경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당수의 살인범이 연쇄살인범으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것이고, 피해자를 4명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연쇄살인범의 특징에 드는 상당수의 살인범들을 간과하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⁴²⁾

연쇄살인범에 대한 본격적인 프로파일링 결과는 FBI의 행동과학부(Behavioral Science Unit) 수사관들에 의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살인범들을 심층면담한 자료 및 이들에 대한 수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Ressler를 포함한 FBI행동과학부 수사관들의 살인범들과의 면담은 1978년 말 이른바 『범죄인 성격조사프로젝트(Criminal Personality Research Project: CPRP)』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한 이를 바탕으로 한 범죄학자들의 다양한 연구는 연쇄살인범의 동기(motives), 목적(gains)과 병질적 징후(etiology)는 전통적인 살인범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⁴³⁾ 또한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된 연쇄살인범 보다는 아직도 살

40) Holmes & Homes. (1998). *Serial murder*. Thousand Oaks, CA: Sage.

41) Petherick, et al., (2006). p. 190.

42) Jenkins. (1994). *Using murder: The social construction of serial homicide*. New York: Aldine de Gruyter.

43) Fox & Levin. (2001). *The will to kill: Making sense of senseless murder*. Boston: Allyn & Bacon; Godwin. (1999). *Hunting serial predators: A multivariate*

인을 계속 진행하면서 검거되지 않는 연쇄살인범이 더 많으며, 검거되지 않는 연쇄살인범은 일 년에 한 두 차례 살인을 행하면서 보통 사람들 속에서 일상적인 생활패턴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을 검거하지 못하는 것은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무지와 정보교환의 부족, 그리고 연쇄살인에 대한 이해의 부족 및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의 한계와 거부감 등 때문이라고 본다.

범죄인 성격조사 프로젝트(CPRP) 결과 얻어진 연쇄살인범들의 일반적인 특징(characteristics)은 남성이고, 백인이며,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연령, 범죄와 범죄수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⁴⁴⁾

연쇄살인범은 대체로 자신의 범죄 및 범죄당시 자신의 정서 등에 대해 말하기 꺼려한다. FBI의 경우에도 연쇄살인범이 인터뷰에 응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연쇄살인범은 법률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하길 꺼려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진실을 말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프로파일링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최종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인터뷰를 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나. 피해자 선택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연쇄살인범들이 피해자의 특정한 신체적 특징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선택한다고 주장되어왔다. 물론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은 자신이 선호하는 이상적인 외모를 갖춘 사람을 찾아내어 희생시킨다. 그는 오랫동안 심사숙고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완성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살해할 것인가, 즉 방법에 대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사고를 하는 과정에 그의 심리상태는 억압, 학대, 파괴 등의 심리적 기제가 나타나고, 자신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상에 맞는 피해자를 찾아나서게 된다.

classification approach to profiling violent behavior. Boca Raton, FL: CRC Press.

44) Blair. (1993). The science of serial murder.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20(2), pp. 1-12; Egger. (1998). *The Killers among Us: An Examination of Serial Murder and Its Investigation*.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Hickey. (2001). *Serial murderers and their victims(2nd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쇄살인범의 사례에서 피해자의 신체적, 개인적인 특징이 연쇄살인범이 이상적으로 생각했고, 갈구했던 특징을 을 가진 경우는 드물다. 즉, 이상적인 상대와 실제 피해자가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 연쇄살인범은 그의 피해자를 찾는데 최고의 신중을 기하기 때문이다. 연쇄살인범은 안전하게 피해자를 안전하게 확보하지 못한다면 아예 범행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만큼 피해자를 선택하는 데 신중을 기한다. 위험성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피해자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상에 맞는 상대방을 발견한 경우에는 오히려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상에는 맞지 않지만, 위험하지 않은 대상을 살인의 대상으로 선택하게 된다.

또한 연쇄살인범이 이상적인 상대방을 무한정 찾을 수 없는 이유는 폭력적인 충동 때문이다. 즉, 이상적인 대상을 찾고 싶은 욕구와 즉각 자신의 폭력적인 충동을 만족시키기를 원하는 욕구가 충돌할 때 결국 폭력적인 충동이 더욱 강할 경우 반드시 이상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살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연쇄살인범의 이상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현실적으로 연쇄살인범의 잠재적인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 연쇄살인범은 실제 피해자가 될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피해자의 기분, 감정 등에 대해 신경쓰지 않으며, 단지 자신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객체로만 인식한다. 또한 극도의 경멸, 악독한 학대, 파괴할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서 인지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그의 폭력적인 충동이 너무나 강하여 이 충동을 방해하는 다른 감정이나 가치판단 기능 등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연쇄살인범의 이와 같은 심리구조는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만들어져 구축된 것이며, 상상 속의 살인을 구체화하는 폭력적인 충동이 가장 확실하게 내면을 지배하게 된다. 연쇄살인범의 초기의 범행양상 보다 범행 횟수가 늘어나면서 더 잔인하고, 엽기적인 살해수법으로 변화하는 것은 폭력적 충동의 만족 정도가 초기보다 더 그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연쇄살인범은 영화나 잡지, 책, 신문 등에 묘사 되거나 보도된 사례를 모델로 삼아 살해를 시도하거나 자신의 범행수법을 강화시킴으로써 폭력적 충동을 만족시켜나간다. 그는 자신의 행동의 비도덕성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하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이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들이므로 자기가 해치워도 된다는 합리화 기제를 강화하는 데 더 치중

한다. 연쇄살인범은 또한 자신의 실수와 비도덕성, 범죄인성 등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억울하고, 무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천벌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다. 폭력행사에 대한 지각

연쇄살인범은 살아있는 피해자를 소유하고, 자신이 상상했던 대로 피해자의 행동을 조정한다. 이것은 연쇄살인범이 이미 폭력의 구체적인 행동과 방법을 통해 그가 얻을 수 있는 자기만족(self-gratification)에 대한 무한한 정신적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폭력적인 환상들 가운데에서 가장 최고의 자아실현(self-fulfillment)을 얻을 수 있는 잔혹한 방법을 선택한다. 선택한 방법은 살인범이 피해자에게 행한 과정 전체에 나타난다.

그런데 연쇄살인범이 조심성 있고, 그가 좋아하는 내적 이미지를 벗어나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유형이라면, 그는 조직적 방식으로 피해자의 절망과 인간성을 빼앗기는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자신이 바라던 거대한 의미(tremendous meaning)와 쾌락(pleasure)을 얻는다. 그에게는 피해자가 비참함과 절망으로 가장 깊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연쇄살인범의 유일한 행동의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잔인한 학대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감(self-magnification)을 확대시키고, 강하게 느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연쇄살인범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자기 존재감의 확대는 모든 사건의 전제라 할 수 있다. 연쇄살인범은 모든 결정을 하기 앞서 합리적인 상태라면 참을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갑작스럽고 성급한 심리적인 좌절감을 경험한다. 따라서 그는 피해자를 관대하게 다루지 못하며, 그 자신의 폭력적 충동을 폭발시킨다.

이러한 심리구조는 연쇄살인범의 폭력행사의 동기와 인식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결국 그의 손 안에서 살아 있는 무력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단지 폭력 자체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잔인한 학대를 통하여 자신의 위대한 존재성을 극대화(reestablishing)하고, 재확인하는(reaffirming)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가 꿈꾸던 폭력을 현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권력적 지위로 구체화하고, 그 권력을 유지시키고, 권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폭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화되었다.

따라서 연쇄살인범은 피해자의 발버둥질, 고통 그리고 절규를 붙잡히 여기지 않는다. 그의 피해자는 가치가 없는 대상이고, 완전하게 비인간화한다. 따라서 그에게 동정심(pity)과 같은 인간적인 표현은 부적격한 것이다. 연쇄살인범은 피해자의 분노와 고통으로 보고 동정심(empathy)을 느끼는 대신 병적 쾌감(euphoria)을 느낀다. 피해자가 비참해질수록 그는 더욱 더 충만한 긴장감과 전율을 느낀다.

이들의 진정한 만족감은 피해자를 복종(subjugation)시키고, 공포(terrorization)에 떨게 하며, 극도로 잔인(brutalization)하게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피해자를 살인하는 것만으로는 얻지 못한다. 피해자로부터 이미 만족감을 얻었다면 구태여 더 이상의 위협이나 확대는 불필요해지며, 결국 살해하고 마는 것이다.

2. 연쇄살인범의 유형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연쇄살인범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사례연구 등의 자료를 기초로 연쇄살인범을 구분 유형화하기 시작하였다. 사람의 행동은 동기와 성격 등에 따라 일정한 행위패턴을 보이므로 연쇄살인범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시켜 구분하고 있다.⁴⁵⁾

가. 지리학적 지속형 연쇄살인범(Geographically Stable Serial Murder)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최초의 구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이동성(spatial mobility)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일부 연쇄살인범들은 한 지역이나 살인한 곳과 동일한 지역이나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지리학적 지속형(geographically stable) 연쇄살인범이라고 불린다. 반대로 지리학적 단기형(geographically transient)의 연쇄살인범들은 이동하면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이다. 이 범 죄자들은 여기저기 이동을 하는 데, 이는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찰의 체포를 피하는 것이 더 큰 목

45) Drukteinis. (1992). Serial murder: The heart of darkness. *Psychiatric Annals*, 22, p. 532.; Holmes & Homes. (2001). *Sex crimes(2nd ed.)*. Thousand Oaks, CA: Sage; Holmes & Deburger. (1985a). Profiles in terror: The serial murderer. *Federal Probation*, 39, pp. 29-34; Holmes & Deburger. (1985b). *Serial murder*. Beverly Hills, CA: Sage.

적이다. 지리학적 단기형 범범죄자들은 살인을 위해 차로 1년에 수천마일정도를 이동한다. 그들은 발각되는 것을 회피하고, 법집행(law enforcement)을 혼란시키기 위해 이동한다.

일부 연쇄살인범과의 인터뷰 결과 이들은 수사 중 연쇄 살인의 피해자를 찾으려면 인근 지역을 수색하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하였다. 연쇄살인범의 구체적인 장소는 욕실이나 침실 등으로 범범죄자에 따라 서명적 행위(signature)로 인식할 수 있다.⁴⁶⁾

〈표 5〉 지리학적 지속형 연쇄살인범

지리학적 지속형 (geographically stable)	지리학적 단기형 (geographically transi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시 동안 동일한 지역에서 거주 · 거주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살인 · 거주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시체 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끊임없이 이동 · 법집행을 혼란시키기 위한 이동 · 광범위한 지역에 시체 유기

나. 망상형 연쇄살인범(The Visionary Serial Killers)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은 정신병자가 아니라 다만 사이코패스(psychopathic)적 경향이나 성격장애(character disorder)를 가지고 있다.⁴⁷⁾ 따라서 그들은 현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망상형(visionary) 연쇄살인범들은 환청(voices)이나 환각(visions)때문에 살인을 시작한다. 또한 그들은 특정 유형의 사람을 죽여서 현실적 요구(reality demand)로부터 탈출한다. 이러한 유형의 살인자들은 때때로 악마(devil)나 귀신의 목소리에 의해 사람을 살해하거나 성매매 여성이나 노인을 죽이라는 신의 계시를 들었다고 생각하며,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신의 명령을 이행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망상형 연쇄살인범은 현실과 완전히 유리되어 있다. 정신의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정신

46) Gibney. (1990). *The beauty queen killer*. New York: Pinnacle.

47) Carlisle. (1998, June 18). *Personal psychopathic Classifying sexual homicide crime scenes*, p. 185; Hale. (1998). The application of learning theory to serial murder, or "you too can learn to be a serial killer." In R. Holmes & S. Holmes(Eds.),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serial murder*. Thousand Oaks, CA: Sage; Holmes & Deburger. (1988). *Serial murder*. Thousand Oaks, CA: Sage.

이상자(psychotic)이다. 이런 유형의 살인자는 법정에서 “정신이상(insane)”이나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incompetent)”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범죄현장을 온전하게 그냥 놓아 두지 않고 범죄현장을 계획적으로 위장한다.⁴⁸⁾

다. 사명적 연쇄살인범(The Mission Serial Killers)

사명적 연쇄살인범이란 의식적 단계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욕구를 느끼고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유형의 범피자는 정신이상자(psychotic)가 아니며, 이 사람들은 환청이나 환각을 경험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람들은 현실과 매우 잘 접촉하며, 실제 세상(real world)에서 살고, 매일 세상과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나 이들은 특정한 계층의 사람을 세계에서 제거하려는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해서 행동한다. 주로 성매매 여성, 가톨릭인, 유대인, 어린이 등 특정 집단이 그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살인자는 비사회적 성격(nonsocial personality)이 조직화되었거나 또는 몰사회적(asocial) 성격이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비사회적 성격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범피자가 범죄를 한 후 체포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이웃들은 “그가 훌륭한 청년처럼 보였다”고 자주 말하며, 그가 행한 행동에 몹시 놀라움을 표시한다.

라. 쾌락주의적 연쇄살인범(The Hedonistic Serial Killers)

쾌락주의적 연쇄살인범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첫 번째 유형은 성욕(lust) 또는 스틸살인범이라고도 하는 데 성욕이나 스틸감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사람에 대한 공격 자체에서 성욕이나 쾌감을 느끼므로 살인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범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다. 이는 망상적 연쇄살인범이나 사명형 연쇄살인범이 피해자를 단시간 내에 살해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성욕 쾌락주의적 연쇄살인범의 살인과정 중에 보여지는 식인풍습, 토막(dismemberment),

48) Douglas, Burgess, Burgess, & Ressler. (1992). *Crime classification manual*.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시간(necrophilia), 살아 있는 피해자에 대한 고문이나 신체일부의 절단, 감금 등의 행동 등에서 살인 과정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특징을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Jerry Brudos는 그의 첫 번째 피해자의 한쪽 발을 잘랐고, 두 명의 다른 피해자의 가슴을 잘라 내었다.⁴⁹⁾

쾌락주의적 연쇄살인범의 두 번째 유형은 성적 만족이 아니라 이익 또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유형(comfort-oriented)이다. 이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편안함을 위해 살인 행위를 한다. 이들은 자신의 부인이나 약혼자들, 고용인들이 모은 돈과 재산을 위해 다양한 사람을 죽인다.

마. 권력통제형 연쇄살인범(The Power-Control Serial Killers)

권력통제형 연쇄살인범은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지배에서 성적 만족을 얻는 경우를 말한다. 이 유형은 자신이 원하는 조종할 수 있는 권력(힘)을 가졌다는 신념 그 자체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이다. 즉, 피해자를 완전하게 지배하는 것으로 강한 욕망이나 스틸을 추구하는 쾌락주의형 연쇄살인범들의 쾌락과 유사한 성적 쾌락을 경험한다.

이 살인자는 심리적으로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또한 쾌락주의형 살인자와 비슷하지만 정신적인 질병을 겪지는 않는다. 그러나 살인이 반사회적 이상성격(sociopathy)이나 성격적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유형의 살인범은 사회적 규칙(rules)과 규범(norms)을 알고 있지만 무시하며, 반사회적 이상성격자와 같이 개인적인 규칙과 규범에 의해 세상을 산다.

권력통제형 살인범들의 살인하는 방법은 과정중심적이다. 이들의 정신적인 만족감은 살인하는 과정으로부터 얻어지기 때문에 살인하는 순간을 길게 하며, 대부분 흥기를 사용하고, 상당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특징을 보인다.

49) Stack. (1993). *The lust killer*. New York: Signet.

3. 연쇄살인 사건의 프로파일링

가. 범죄현장의 특징분석

범죄현장의 일반적인 특징은 비사회적(nonsocial) 범죄자에 의해 조직화(organize)되었거나 몰사회적(asocial) 범죄자에 의해 비조직화된(disorganize) 것이며, 연쇄살인범을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⁵⁰⁾

예를 들어 망상형 연쇄살인범(visionary serial killer)을 들 수 있다. 이 살인범은 비조직화된 몰사회적 성격의 형태로 나타나는 데 범죄현장에는 풍부한 물리적 증거, 즉 잔인한 살해형태를 보이고, 흉기를 그대로 피해자의 신체에 방치한다. 이 경우에는 범인이 고독한 사람이며, 아마도 범죄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며, 피해자는 우연한 기회에 포착된 경우라 추정할 수 있다.

사명형 연쇄살인범은 조직화된 비사회적 유형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연쇄살인범은 한 유형의 피해자를 선택하고, 그 피해자를 은밀하게 따라다닌다. 또한 그는 아마도 향문기적 성격(anal personality)을 가지고 있으며, 흉기를 사용하지만 잘 관리된 범죄현장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권력통제형 연쇄살인범의 가장 확실한 동기는 피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소유를 말한다.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통하여 만족감(satisfaction)을 느끼며, 성적 충족(sexual gratification)은 그 만족감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Ted Bundy의 사건은 권력통제형 연쇄살인의 가장 좋은 예라 할 것이다.

〈표 6〉은 연쇄살인범의 유형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범죄현장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것이다⁵¹⁾. 이는 FBI가 분류한 연쇄살인범의 유형에 따라 범죄현장의 특징을 구분하여 정리한 것인데 이는 프로파일러의 판단에 중요한 지침서로 활용된다. 이를 기초로 범죄현장 특징들과 비교하여 연쇄살인범의 유형을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망상형(visionary), 사명형(mission), 또는 안락형(comfort) 연쇄살인범은 사람을 죽인 장소에서 시체를 이동시키지 않을 것이다. 프로파일링시 이는 시체의 이동 흔적이 있다면 이는 사전에 계획을 세웠음을 의미한다. 살인이 발생한 장소에서의 물리적 증거는

50) Douglas, Burgess, Burgess, & Ressler. (1992). *Crime classification manual*.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p. 251.

51) Holmes & Holmes, et al., (2002), pp. 127-128.

수사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버려진 장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죽인 장소에서 버려진 장소까지 시체를 이동시킨 것이 범죄자 성격에 대한 정보 그 자체라는 것이다.

〈표 6〉 연쇄살인범 유형별 범죄현장의 차이

범죄현장 특 성	연쇄살인범의 유형					
	망상형	사명형	안락형	성적욕구 추구형	스릴형	권력통제형
범죄현장 통제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과잉살상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무질서한 범죄현장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고문의 증거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시체유기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특정한 피해자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현장 흥기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피해자와의 관계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면식관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비정상적 성관계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고문도구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피해자 교사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음경 삽입	없음	있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음	있음	있음	있음
물건 삽입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시간(屍姦)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가해자의 성	남성	남성	여성	남성	남성	남성

자료: Holmes & Holmes, 2002, p. 129.

망상형 연쇄살인범(visionary serial killer)은 환청(voices) 또는 환각(visions) 때문에 범죄를 행하므로 구체적 피해자의 유형과는 관계가 없다. 쾌락형(hedonistic), 권력통제형(power-control), 사명형(mission) 연쇄살인범은 피해자가 자신의 심리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지 여부 또는 피해자들의 죽음이 주는 물질적 이익의 결과 여부에

따라서 신중하게 피해자를 선택한다. 쾌락형의 일부인 안락형(comfort) 연쇄살인범은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지만 나머지 유형의 연쇄살인범들은 흥기를 사용하여 낯선 사람들을 살해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약물(pills)과 독극물(poison)은 안락형 살인범이 사용하는 범행수단이다.

종종 살인현장과 시체처리 장소가 명백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망상형, 사명형, 그리고 안락형 살인범들은 통상적으로 살인을 행한 장소에서 시체를 옮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 살인한 장소가 또한 시체를 처리한 장소라면, 범죄자는 아마도 피해자와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고, 비조직화된 몰사회적 성격(disorganized asocial personality) 유형의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흥기를 선택하고, 시간(necrophilia)의 증거가 있으며, 성교행위의 흔적이 있고, 증거가 남아있다. 예를 들어, 직업적인 성매매 여성이 살인을 당한 후 시간을 당한 경우 살인범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람(undesirable)”을 세상에서 제거하라는 신(god)에게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믿을 수도 있다. 물리적 증거가 마구 흐트러진 범죄현장을 발견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다. 그러나 시체에 시간한 흔적이 없다면 살인의 동기는 내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명형 연쇄살인범(mission serial murderer)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프로파일러는 범죄현장의 특징 및 발견된 증거를 통하여 범죄유형을 찾아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컴퓨터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통하여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프로파일러의 분석 및 추정능력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 보조적인 프로파일링의 요소

1) 눈가리개

많은 살인에서 눈가리개(blindfold)가 사용된다. 눈가리개에는 마스크(masks), 헝겊(rags), 또는 천조각 등 여러 종류가 사용되고 있다⁵²⁾. 눈가리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로 하여금 살인범 자신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눈을 가려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피해자들을 더 비인간화하고(depormalizes), 대상화

52) Holmes & Holmes, et al., (2002), pp. 130-136.

(objectifies)할 수 있다.

눈을 가림으로써 범죄자의 환상(fantasy)을 더욱 충족하는 형태로 범행을 할 수 있고, 공격시에도 더욱 안락감을 느낀다. 따라서 연쇄살인이나 연쇄강간의 현장에서 눈가리개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이것을 살인범과 피해자가 이전에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2) 얼굴공격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공격 그 자체는 피해자에 대한 비인간화(depersonalizes)를 의미한다⁵³⁾. 범죄자가 얼마나 무자비한 것과 관계없이 그 역시 부끄러운 정서와 마음을 가진다. 즉,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피해자를 잡았을 때 그 자신이 이미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며, 범죄자 자신이 스스로도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무의식적 자각을 가지면서 부끄러움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감정을 무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에게 눈가리개를 채우거나 또는 사람을 더욱 비인간적으로 다루는 방편으로 얼굴을 공격한다. 피해자의 얼굴에 대한 폭력은 통제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며, 특히 눈을 향한 공격은 결정적인 상해(injury)를 가져오고, 당연히 피해자가 범인을 식별(personal identification) 하지 못하게 된다.

피해자의 얼굴에 대한 공격은 오럴섹스(oral sex)의 형태로도 나타나는 데 이것은 피해자가 비인간적(impersonal)이라는 관점에서부터 출발한다. 오럴섹스가 눈을 가린 상태에서 일어났다면 범죄자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관계일 수 있다. 반대로 오럴섹스가 피해자에게 눈가리개를 사용한 흔적이 없고, 얼굴에 구타를 당한 흔적이 있다면 면식범의 소행일 수 있다.

3) 시체유기

성욕형(lust), 스릴형(thill) 및 권력통제형(power-control) 연쇄살인범들은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이 유형의 살인범들은 공통적으로 조

53) Harris. (1981). *Red dragon*. New York: Putnam, p. 26.

직화된 비사회적 성격(nonsocial personalty)적 특성을 보인다.

이들이 사체를 유기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이들 살인자가 사체가 발견되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시체가 발견되도록 유기하는 것이나 시체를 유기하는 행위 등은 살인행위에 대한 “광고(advertisement)”의 한 형식이다. 연쇄살인범은 살인행위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며, 살인범은 현재 병적 쾌감(euphoria)의 심리적 단계에 있는 상태이며, 시체의 처리 자체도 그 병적 쾌감을 유지하는 단계이다.

다른 사회적 학습 과정(social learning process)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 역시 시체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연쇄살인범은 자신이 검거될 위험성이 점점 커지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시체들을 U자 모양의 곡선으로 구부려 도로가에 버렸다.

4) 흉기

살인범은 피해자를 고문(torture)을 하기위해 흉기(weapons)를 사용하며, 의식주의자(ritualist)가 되고, 피해자를 인간과는 다른 존재로 여긴다. 연쇄살인범은 살인하기 위한 무기를 선택할 때 매우 신중하며, 통상적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피해자를 공포상태로 몰아넣거나, 피해자 보다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다.

흉기는 가죽끈(예, Jerry Brudos), 여자용 긴 양말(hose)(예, Ted Bundy), 손(hands)(예, Edmund Kemper), 칼(knives)(예, Douglas Clark와 Carol Bundy), 해머(hammers)(예, Harvey Carignan), 권총(handguns)(예, Beoria Simmons) 등 다양한 데 범인이 손으로 통제 가능한 것이 모두 사용된다.

5) 시체토막

시체에 대한 토막(dismemberment)은 살인범이 그의 무력한 피해자를 죽일 수 있는 권력(power)과 통제력(control)을 입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피해자가 “현재 아무것도 아닌 작은 조각일 뿐이다”라고 생각한다. 시체에 대한 토막은 시체에 대한 난폭한 모독이지만 연쇄살인범의 성적 만족이나 심리적 강화(psychological enhancement)를 위한 충족하는 한 형태일 수 있다.

시체에 대한 토막은 성욕형(lust), 스릴형(thill) 그리고 권력통제형 연쇄살인범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6) 감금

연쇄살인범은 더욱 조직화된 살인을 위해서 때로 피해자를 감금(bondage)하기도 한다. 속박의 필요성이 없는 망상형(visionary)과 사명형(mission) 연쇄살인범은 전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범죄를 행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감금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감금은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모욕적인 상태에 빠져있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묶여 있다는 것 자체로 상처를 주기 위해 활용되는 데 주로 성욕형(lust), 스릴형(thill) 그리고 권력통제형 연쇄살인범들에 의해 행해진다. 이들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고문하면서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며, 쾌감을 충족한다.

7) 시체의 배치

범죄현장에서 시체의 배치(position of the body)는 연쇄살인범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 의미를 해석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시체에 대한 모욕적인 고문은 성욕형(lust), 스릴형(thill) 그리고 권력통제형의 특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FBI는 비조직적인 몰사회적(disorganized asocial) 범죄자는 시체를 절단할 것이며, 범죄자의 목적에 따라 특별한 방법으로 시체를 배치할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다.⁵⁴⁾

8) 전기 테이프

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 전기 테이프의 사용법과 범죄도구로서의 효율성에 대해 배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른 종류의 테이프나 새끼줄 보다 전기 테이프가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것을 영화 등을 보고 배워서 살인행위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살해 도구로 전기 테이프가 발견된다면 살인범이 교도소 수용경력이 다수 있거

54) Classifying sexual homicide crime scenes. (1985). *FBI Law Enforcement Journal*, 54, 12-17.

나 특수기관의 종사자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9) 범죄현장의 조작

범죄현장의 조작(staging)이란 범죄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 범죄현장을 의도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55) 범죄현장에 대한 조작은 경찰의 수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므로 현장을 조작할만한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범죄현장이 조작되어 있다면 범인이 조직화된 살인범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조직화된 비사회적(organized nonsocial) 범죄자는 경찰들로 하여금 특정한 사회적 핵심 변인들(social core variables)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유형의 범죄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특정한 비물리적 증거(nonphysical evidence)를 찾으도록 하게 한다.

10) 기념품과 전리품

범죄현장에서부터 살인범이 기념품을 가져가는 직접적인 이유는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상기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자가 기념품을 가져가는 합리적인 결정(rational decision)은 사람들이 휴가 중에 기념품을 수집하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인 과정(mental process)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살인범이 사건(event)뿐만 아니라 사건(event)이 일어나는 동안에 자신이 한 행위를 회상하는 것이다. 기념품은 살인범이 살인하는 동안에 실현된 심리적 이익(psychological gain)의 일부분이다. 기념품이 어떤 피해자의 일부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연쇄살인범은 그 사건에 대해 개인적인 관점으로 회상한다.

그러나 모든 연쇄살인범이 기념품들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살인할 때 마다 기념품들을 가져가지 않는 연쇄살인범도 있다. 살인범은 합리적으로 기념품을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한다. 일부 사례에서 살인범은 자신이 과도한 위협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재산 중 일부를 거의 가지가지 않거나 가져갈 기회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쇄살인범은 피해자의 신원확인을 방해하기 위해 기념품을 수집하고,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범집행에 따른 수사를 방해하기

55) Douglas, Burgess, Burgess, & Ressler. (1992). *Crime classification manual*.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p. 251.

위한 것이다. 만약 시체가 절단(mutilate)되었거나 바뀌었다면(altered),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그 현장에 개인 소장품(personal belongings)이 없다면 연쇄살인범은 그의 목적중 하나를 확실히 성취하게 된다.

연쇄살인범에 대한 프로파일링시 기념품(souvenirs)과 전리품(trophies)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전리품은 보통 사람이 볼링 트로피, 테니스 트로피를 받는 것처럼 경기나 행사에서 승리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연쇄살인범에게 전리품은 살인으로 얻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리품은 시체의 일부분(예, 다리, 가슴)과 같은 개인적인 것이다. 기념품이 단지 경험적으로 중요한 시점을 상기시키는 유품(memento)이라면, 전리품은 시각적인 보상(visual reward)이기도 하다.

제2절 연쇄강간범의 프로파일링

1. 연쇄강간범 프로파일링을 위한 일반적 데이터

가. 연쇄 강간범의 일반적 특징

강간이란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해 남성이 여성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시도하거나 행하는 범죄라고 정의될 수 있다.⁵⁶⁾ 좀 더 직접적인 정의는 남성이 여성을 공포의 상태를 유지시키며, 성적으로 위협하는 의식적인 과정이자 성적인 침해행위(sexual penetration)라고 할 수 있다.

강간과 연쇄강간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살인과 연쇄살인을 구분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희생자의 수, 각 범죄행위 간의 시간적 간격, 범죄지역 간의 차이 등이 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⁵⁷⁾. 따라서 범죄의 연쇄성에 대한 위의 요소를

56) Kenney & More. (1994). *Principles of investigation*. Minneapolis, MN: West, p. 33.

57) Blackburn. (1993).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Chichester: Wiley, p. 214; Helsham. (2001). The profane and the insane: An inquiry into the psychopathology of serial murder. *Alternative Law Journal*, 26(6), pp. 269-273; Petherick. (2006). *Serial cri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in behavioral profiling*, California:

고려할 때 연쇄강간이란 동일한 범죄자가 일정한 기간에 적어도 두 명 이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강간을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초반 펜실베이니아에서 진행된 강간에 대한 연구는 피해자 유발(victim precipitation)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데 이는 강간 피해자인 여성들이 잠재적으로 강제적으로 강간당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⁵⁸⁾ 그러나 이 주장은 인간의 성행위에 대한 모욕이자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해하는 발상이라는 페미니스트들의 비난에 봉착했다. 더욱이 이러한 강간에 대한 신화(myth of rape)는 강간범이 범행을 합리화하고 범행을 늘리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⁵⁹⁾

강간사건의 피해자들은 형사소송시스템에 대한 신념부족과 보복가능성의 두려움, 경찰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수치심등의 이유로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연구결과 드러나고 있다.⁶⁰⁾

강간의 대상은 낯선 사람에 대한 경우와 평상시 알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지만 연쇄적인 강간의 경우 대부분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때 강간범은 30대 이하가 80%정도인데, 특히 25세 이하가 75%를 차지할 정도로 그 연령층이 낮다. 범죄자는 저소득계층이며, 대개 흥기를 소지하는 경우는 25% 정도로 소지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며, 흥기는 대부분 칼이거나 다른 날카로운 도구이다.⁶¹⁾ 강간은 치밀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며, 폭력전과를 가진 경우가 1/3정도이며, 25% 정도는 강간전과를 가지고 있다.

나. 강간범의 심리

강간범은 폭력을 매개로 성적 욕구를 달성하려고 하는 범죄자라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폭력적 요소가 가미된 범죄자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지만 그 가운데서도 강간범들은

Elsevier, p. 144.

58) Amir. (1971). *Patterns in forcible rap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59) Ewolt, Monson, & Kanghinrichsen-Rohling. (2001). Attributions about rape in a continuum of dissolving marital relation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11), pp. 1175-1182.

60) Palmiotto. (1994). *Criminal investigation*. Chicago: Nelson-Hall, p. 253.

61) Glick. (1995). *Criminology*. Boston: Allyn & Bacon, p. 206; U.S. Department of Justice. (1988). *Report to the nation on crime and justice*.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pp. 16-18.

특히 힘(power), 분노(anger), 성욕(exuality) 등의 특징을 보인다.⁶²⁾ 또한 자연스러운 이성과의 관계유지능력이 부족하고, 항정신성 물질이나 알콜, 폭력적 포르노물에 심취하는 특성을 가진다.

강간범의 프로파일링은 강간범이 가진 긴장(tension)과 충동(compulsion)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강간이 왜 선택되는 지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⁶³⁾

모든 강간범들이 강간범들의 동기나 범행참여, 기대행동들과 유사한 점을 가진 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강간범이 아동기에 어머니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 부족한데에서 이후에 정상적인 성격발달을 저해했다는 데에서 강간범의 심리적 특성이 나타난다고 한다.

강간범과 어머니와의 관계는 대부분 아동기에 거부(rejecting), 과도한 통제(excessively controlling), 지배(dominant), 체벌(punitive), 과보호(overprotective)와 유혹(seductive)등으로 설명된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주로 비관여적(uninvolved), 무관심(aloof), 거리를 둠(distant), 부재(absent)나 수동적(passive)이지만 가끔씩 체벌과 잔인함을 가진 대상으로 설명된다.

강간범이 가지는 성적 좌절감, 범죄행위, 성적 성향(sexual personality)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은 어린 시절 냉정한 부모의 모습, 부모의 일관성 없는 제재나 처벌, 성적 질투나 자극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2. 연쇄강간범의 유형

많은 범죄학자 및 FBI에서 강간동기 등을 기준으로 강간범 유형을 분류하였다. Groth, Burgess, Holmstrom는 133명의 강간범과 92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연구를 통하여 강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폭력, 분노, 그리고 성욕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들은 사실상 강간은 폭력 또는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선호되는 수단이라

62) Groth, Burgess, & Holmstrom. (1977). Rape: Power, Anger and Sexual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4(11), pp. 1239-1243.

63) Holmes & Holmes. (1998). *Serial murder(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는 결론을 내리고, <표 7> 과 같이 강간범을 폭력지향형, 폭력강화형, 분노보복형, 분노가학형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⁶⁴⁾

<표 7> 범죄동기별 강간범 유형

강간범 유형	범죄동기
폭력지향형 (Power Assertive)	강간을 남성다움, 주인의식, 지배력의 표현이라 인식
폭력강화형 (Power Reassurance)	강간을 자신의 성적 수단 그리고 남성다움에 대한 의심을 푸는 하나의 수단이라 인식
분노보복형 (Anger Retaliation)	강간을 여성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의 표현수단이라 인식
분노가학형 (Anger Sadistic)	피해여성의 고통을 보면서 행복, 스릴,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

자료 : PeGroth, Burgess, & Holmstrom. (1977); Petherick, et al., (2006), p. 167.

가. 폭력지향형 연쇄강간범(Power Assertive Serial Rapist)

강간을 남성다움, 주인의식, 지배력의 표현이라 인식하는 강간범으로 이들에게 강간은 단지 성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약탈을 위한 폭력적 행위이다⁶⁵⁾. 강간시 나타나는 공격성은 피해자의 복종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강간범은 피해자의 안락과 행복에 관심이 없다. 폭력지향형 연쇄강간범의 핵심적인 사회적 성향 변수들이 <표 8> 에 나타나 있다.

폭력지향형 연쇄강간범은 일반적으로 가정 문제를 많이 갖고 있으며 불행한 결혼생활이 이어진다. 이들은 외모에 매우 신경을 쓰며, 요란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경향이 있다. 독신자들이 자주 가는 술집에 드나들며,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언제나 여자를 유혹하려고 궁리하는 사람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목소리가 크고 떠들썩하며, 남성적인 이미지를 끊임없이 과시하려 한다. 폭력지향형 연쇄강간범은 건설노무자 혹은 경찰과 같은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 수 있다. 일정한 종류의 유니폼은 이

64) Groth, Burgess, & Holmstrom. (1977). Rape: Power, Anger and Sexual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4(11), pp. 1239-1243.

65) Holmes & Holmes, et al., (2002), pp. 144-156.

의 남성적 이미지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종종 번쩍번쩍 거리는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데, 이들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특정 스포츠카 모델일 수 있다.

폭력지향형 연쇄강간범은 독신자들이 자주 가는 술집에서 여성 피해자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공격은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모두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유형의 강간범은 특정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을 저지를 수도 있고 피해자들은 통상 강간범과 같은 연령대이다. 강간범은 피해자에게 갖가지 성적 행위를 요구하며, 이들에게 성교는 포식자로서의 약탈적 본능을 충족시키는 행위이며, 피해자의 만족이나 고통 등에는 관심이 없다.

〈표 8〉 폭력지향형 연쇄강간범의 사회적 특징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69%).	자주 독신자들의 술집에 간다.
양부모의 집에서 살았다(31%)	남성적인 직업
어린 시절 신체적으로 학대(74%)	가정적인 문제
고등학교 중퇴	재산범죄기록
결혼 및 이혼의 반복	강건하다.
외모에 민감.	군대로부터 불명예 제대를 했다.

폭력지향형 연쇄강간범은 20일에서 25일 주기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여성의 월경주기와 유사하다. 이는 폭력강화형(power reassurance) 연쇄강간범이 7일에서 15일 주기로 폭행을 저지르거나 분노보복형(anger retaliation) 연쇄강간범이 대략 반년에서 1년 주기로 범행을 행하는 것과 비교된다.

폭력지향형 연쇄강간범은 일반적으로 부인 혹은 연인과 같은 일정한 섹스 파트너를 가지고 있지만 강간의 충동을 느끼며, 강간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의 순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행해진다. 이러한 유형의 강간범은 때때로 신중하게 생각한 흥기를 소지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면이나 눈가리개 등을 별로 지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들을 앞으로 다시 볼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들은 강간 후 사과하지 않으며, 기념품이 될 만한 것을 가져가지도 않으며,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폭력지향형 연쇄강간범은 그의 충동을 거의 억제하지 못하므로 성격진단시 반사회적 성격장애나 정신병질자로 분류될 수 있다.

나. 폭력강화형 연쇄강간범(Power Reassurance Serial Rapist)

폭력강화형 연쇄강간범은 보상형 강간범(compensatory rapist)으로도 불리워지는 데 이들은 네 가지 유형에서 공격성이나 폭력성이 제일 작다. 최소한의 사회적 능력을 갖고 있고, 극단적인 패배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끼고 있다.⁶⁶⁾

이러한 유형은 대부분 이들은 낮은 수준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싱글이면서 부모와 동거한다. 이들은 활동성이 적고, 조용하며 수동적인데 따라서 친구가 거의 없고, 섹스파트너도 없다. 이들 중 일부는 모친으로부터 성적 유혹을 당하거나 폭력적인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이들은 많은 시간을 성인잡지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며,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보잘것없는 유형의 직업에 종사하지만 주변사람들에게는 꾸준하고 신뢰성 있는 직원으로 비춰진다.

〈표 9〉는 폭력강화형 연쇄강간범의 사회학적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 9〉 폭력강화형 연쇄강간범의 사회적 특징

싱글	시시한 직업
부모와 함께 산다.	자주 성인책방에 간다.
섹스 파트너가 없다.	관음증
활동성이 적다.	노출증
조용하고, 수동적이다.	복장 도착자
사회적 고독	성욕 도착자

자료: Holmes & Holmes, et al., 2002, p. 146.

66) Knight & Prentky. (1987). The developmental antecedents and adult adaptations of rapist subtyp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4, pp. 403-426.

폭력강화형 연쇄강간범은 정신병질적인 성적 다양성을 보이는 데 복장도착, 난교적 성적 행위, 노출증, 관음증, 성욕도착이나 과도한 자위행위 등의 모습을 보인다. 관음증의 피해자는 주로 이웃이며, 기회를 포착하여 직접 강간을 시도하기도 한다.⁶⁷⁾

폭력강화형 연쇄강간범에 있어서 강간의 기본적 목적은 강간을 통하여 그 자신의 지위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그는 평상시 자신을 사회의 낙오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성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둠으로써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믿고 싶어한다. 따라서 그는 피해자를 통제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폭력만을 사용한다. 이들의 강간은 이들이 평상시 가지는 성적 환상(sexual fantasies)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피해자 역시 성적 만족감을 느낄 것이라고 믿으며, 고의적으로 피해자들을 해치지 않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성적 강간행위를 즐긴다는 가정 하에 범행을 저지르므로 성행위 도중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표현을 하도록 하거나 자신이 행하기도 한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종종 범행을 위해 필요한 신체 일부만을 노출하기도 한다.

폭력강화형 연쇄강간범은 그와 동일한 연령 집단과 동일한 인종 집단 내에서 피해자를 고르는 경향이 있고, 그가 걸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종종 주변 이웃 또는 그의 직장 근처에서 피해자를 고른다. 주로 이들은 자정부터 오전 5:00 사이의 밤에 범죄를 저지른다. 강간 범죄 행위의 시간적 간격은 7일에서 15일 사이이다. 일반적으로 강간범은 비교적 적은 폭력으로 시작하지만, 범죄가 지속되면서 폭력성이 증가될 수 있다. 이들은 필요하다면 피해자의 집에서 흥기가 될 만한 것을 찾는다. 이들은 피해자의 집에서 기념품이 될 만한 것을 집어 갈 수도 있다.

이들은 네 가지 연쇄강간범의 유형 중 유일하게 범행 후 피해자를 접촉해서 신체 건강에 대해 물어본다. 피해자도 성행위를 즐겼다고 생각하므로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하기도 한다. 이들은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자신의 행위를 기록하는 습성이 있다. 강간을 통해 이들은 그 자신의 정체성 의문을 해소하려고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가지지 않는다.

67) Kenney & More. (1994). *Principles of investigation*. Minneapolis, MN: West.

다. 분노보복형 연쇄강간범(Anger Retaliation Serial Rapist)

폭력강화형 연쇄강간범과 달리 분노보복형 연쇄강간범은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목적으로 여성을 해치게 되고, 이들은 폭행을 통해 실재하던 상상에 의한 것이든 그가 일생동안 다른 여성의 손에 당했던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 보복하려고 한다.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절반 이상(56%)이 부모 한쪽 혹은 양쪽으로부터 성적으로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고, 대략 80%는 부모가 이혼하였다. 이들 중 20%는 입양된 경우이고, 35%는 위탁가정에서 자랐다. 80% 정도는 어머니 혼자 혹은 여성 혼자 아이를 돌보는 집에서 자랐다.

분노보복형 연쇄강간범은 그 자신을 체력적으로 강건하고, 남성적이라고 생각하므로 육체적 활동이 많은 스포츠를 즐기고 경찰이나 운동선수 등의 직업을 가질수도 있다. 결혼을 하지만 배우자에게는 공격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남성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혼외정사를 즐길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 성질이 급하고, 폭력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은 강간에 대한 통제 불가능한 충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부인이나 모친 또는 기타 여성들과의 일련의 경험으로 여성에 대한 증오감을 가지며, 이 증오감이 분노감을 촉발시키고, 분노에 대한 보복적 행위가 강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 분노보복형 연쇄강간범의 사회적 특징

부모의 이혼	양자(20%)
낮은 교육수준	부인을 공격하지 않는다.
기혼자	강건하다.
신체적 학대경험(95%).	자주 술집에 간다.
사회적으로 유능한 여성 증오	격렬한 스포츠에 호감 활동지향적 직업

자료 : Holmes & Holmes, et al., 2002, p. 148.

분노보복형 연쇄강간범은 주로 자신의 집 근처에서 강간을 저지르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강간이 우발적으로 행해지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들에게 강간은 성적 행위가 아니라 주로 분노의 표현이며, 강간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강하다.

강간 과정에서 나타나는 폭력은 언어적 공격부터 신체적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히 음란한 말을 내뱉고 종종 피해자들의 옷을 찢기도 하며, 주먹과 발을 포함해서 닥치는 대로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다.

이들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저항불능하게 만든다음 피해자에게 언어적 폭력을 퍼붓는데 이는 자신의 성적 흥분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항문섹스나 오럴섹스를 하거나 얼굴에 사정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로 인종의 같은 연령대 혹은 약간 나이 많은 여성을 자신의 집 근처에서 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찾아다닌다. 이들은 범행 후 더 이상 피해자를 접촉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

라. 분노가학형(Sadistic Rapist)

분노가학형 연쇄강간범은 가장 위험한 강간범으로 강간의 목적은 성적으로 공격적인 환상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공격과 폭력을 예로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11〉은 분노가학형 연쇄강간범의 사회적 특징들을 보여주는 데 이들 중 약 60%는 편부모 가정 하에서 자랐고, 대다수가 아동기에 신체적 학대를 겪었으며, 많은 수가 성적 일탈 현상을 보이는 가정에서 자랐다. 이들은 관음증, 난잡한 성교, 과도한 자위행위와 같은 유년기 성적 병리 증세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⁶⁸⁾

전형적인 분노가학형 연쇄강간범은 결혼을 했고 주변에서는 그를 가정적이고 좋은 남편으로 인정한다. 상당수는 범죄율이 낮은 중산층 거주지역에 살며,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며, 평균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며,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68) Kenney & More. (1994). *Principles of investigation*. Minneapolis, MN: West, p. 96.

이러한 유형의 강간범은 강박적인 성격(compulsive personality)을 보이는데, 이 요소는 프로파일링 과정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이들의 외모 및 차량은 잘 정리되어 있고 깨끗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분노가학형 연쇄강간범은 지적이며, 범죄경력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는 매우 치밀하게 강간을 준비하며, 일정지역에서 범행을 행하였다더라도 그가 가진 지역의 평판 등으로 그는 용의선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즉 전과가 없고, 학식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뚜렷한 증거를 찾기 힘든 점 등이 경찰의 수사를 피해가게 하는 것이다.

〈표 11〉 분노가학형 연쇄강간범의 사회적 특징

편부모 가정	약간의 대학교육 경력
부모의 이혼	기혼자
양자	범죄전과 없음
어린 시절 신체적 학대	30세에서 39세 사이
성적 일탈 가정에서 양육.	강박적 성격장애
중산층의 가장	화이트칼라 직업

자료 : 자료: Holmes & Holmes, et al., 2002, p. 151.

분노가학형 연쇄강간범에게 있어서 강간은 폭력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따라서 체포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시작한다.⁶⁹⁾

이들은 잘 손질된 차량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스토킹한다. 이들은 피해자 선정을 신중하게 하며, 눈에 안 띄는 장소로 이동시킨다.⁷⁰⁾ 이들은 집 주변보다 먼 장소까지 가서 피해자들을 선택하는 데 평균적으로 3마일 정도를 돌아다니며, 이들 중 절반은 자신의 집 주변에서 범행을 하다가 체포되기도 한다.⁷¹⁾

분노가학형 연쇄강간범은 피해자를 통제하기 보다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범행 중에 재갈, 테이프, 수갑 또는 기타 자잘한 기구들을 범행 중에 사용하며 피해자의 눈을

69) Holmes & Holmes, et al., (1998), p. 120.

70) Ressler & Shachtman. (1992). *Whoever fights monsters*. New york: St. Martin's.

71) Warren, Reboussin, & Hazelwood. (1998). *Report to the nation on crime and justice*.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가려 공포심을 주기도 한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극히 불경스럽고 모욕적인 언어로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설명하기도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동안 그의 부인 또는 어머니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도록 한다.

또한 분노가학적 연쇄강간범은 의식(ritualistic)을 중요시 여기는 데 강간을 통하여 자신이 경험하고 싶은 욕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진행한다. 즉,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성적으로 흥분할 수 있도록 특정한 단어를 말하도록 요구하거나, 성행위의 전회로서 오럴섹스를 강요하기도 한다. 이들은 사정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

이들은 치밀하게 강간을 계획하므로 종종 자신의 차량에 “강간 도구함(rape kit)”을 가지고 다니기도 한다.⁷²⁾ 예를 들어 Ted Bundy는 수갑, 얼음 송곳, 스키 마스크, 속옷으로 만든 마스크, 밧줄, 검은색 쓰레기 봉투와 타이어 교체 도구를 가지고 다녔다.

분노가학적 연쇄강간범은 범행을 지속하면서 더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스토킹하는 방법과 살해한 시체를 처리하는 보다 좋은 방법을 익힌다. 이들에게 살인은 2차적일 뿐이다. Ted Bundy는 “단지 피해자들을 조용하게 하기 위해 살인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분노가학적 연쇄강간범은 종종 가벼운 알콜 중독자이거나 기분전환용 약물사용자들일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후회가 없고, 잡힐 때까지 범죄를 지속한다. 따라서 분노가학적 연쇄강간범이 연쇄살인범이 되는 경우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제3절 방화범의 프로파일링

1. 방화범 프로파일링을 위한 일반적 데이터

방화(arson, incendiarism, malicious ignition)의 개념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방화의 개념에 대하여 Dehaan⁷³⁾과 Beirne & Messerschmidt⁷⁴⁾은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람의 재물에 불을 놓는 행위라고 정의하였

72) Ressler & Shachtman. et al., (1992).

73) Dehaan. (1991). *KIRK'S Fire Investigation*.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p. 323.

다. FBI는 방화란 주택, 상가, 공공건물, 자동차, 항공기 등에 고의 또는 악의로 불을 내거나 불을 내리는 행위로 정의하고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⁷⁵⁾. 김광일은 방화란 불을 수단으로 사람들이 재산과 생명에 악의적 또는 고의적인 행위를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⁷⁶⁾ 이상현은 방화란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등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위험을 주는 범죄라고 정의하였다.⁷⁷⁾

이처럼 방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주거나 건물 등에 고의로 불을 지르는 행위를 공통적 요소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방화(arson, incendiarism, malicious ignition)란 고의 또는 악의로 화재를 일으켜 사람의 생명 및 재산에 위험을 가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화를 행하는 범인을 방화범(arsonist, fire setter, fire offender)이라고 정한다.

방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방화는 고의로 불을 질러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훼손하는 이외에도 일정한 특징이 있다. 방화의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⁷⁸⁾ 첫째, 방화는 화재로 인해 모든 증거가 파괴되기 때문에 범인체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둘째, 방화범의 범죄동기가 원한이나 보복 등 정신적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화의 대상은 재산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방화는 일반적으로 주택 내에서와 같이 은폐된 공간에서 주로 행해지기 때문에 화재 발견이 늦다. 그리고 휘발유나 시너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촉매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범위가 크다.

넷째, 방화범의 연령대는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청년기와 젊은 장년기에 집중되어 있으나 아동기나 노년기에도 확산되는 추세를 보인다.

다섯째, 방화는 단독범행이 많고 공범에 의한 경우는 많지 않으나, 보험사기방화는 공범에 의한 경우가 많다.

74) Beirne & Messerschmidt. (1995). *Criminology*. NY: Harcourt Brace. p. 163.

75) http://www.fbi.gov/ucr/cius_02/html/web/offreported/02-narson11.html, 2007년 11월 10일 검색.

76) 김광일. (1998). “방화사고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대응방안”, 『방화와 보험』, 제79호, p. 6.

77) 이상현. (2004). “범죄심리학(제3판)”. 서울: 박영사, p. 309.

78) 이상현. (2004), 전제서, pp. 311-312; 김성진. (2001). “범죄심리학”. 서울: 동인, pp. 256-257; 김영욱. (1998). “방화사고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대응방안”. 『방화와 보험』, 제79호, p. 21.

방화의 동기는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데 재산적 이익 때문일 수도 있고, 본능적인 쾌락 때문일 수도 있다. 방화는 모든 연령집단에서 성인들과 청소년들의 사이에서 거의 균등하게 분리되어 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방화의 49%를 청소년들이 저지르며 이들 방화범 중 26%는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아이들이다. 35세 이후에는 방화범행 횟수가 느려지고,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미국의 경우 방화범 프로파일링을 위한 자료는 국립방화예방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와 FBI에 의해 전국적으로 수집되는 데 방화범의 체표율은 다른 경우 보다 낮은 수준이다. 방화는 주로 남성에 의해 행해진다.

Douglas와 동료들은 방화현장을 보고 조직화된 방화범과 비조직화된 방화범을 구분하였다.⁷⁹⁾ 조직화된 방화범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방화 장치(전자 시간조절 기계장치, 전자 시간조절 기폭제 등)를 사용하고 지문이나 족적 등 물리적 증거를 거의 남기지 않으며,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다.

비조직화된 방화범들은 수중에 보유하고 있는 재료들을 사용하며, 성냥, 담배, 라이터 기름, 가솔린 등의 구하기 쉬운 촉매제를 사용하며, 필적, 족적, 지문 등의 물리적 증거를 많이 남긴다.

2. 방화범의 유형

방화범의 유형은 방화동기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미국의 국립강력범죄분석센터(NCAVC: National Center for the Analysis of Violent Crime)가 규정한 「범죄분류편람(crime classification manual)」⁸⁰⁾과 Bartol 교수의 「범죄적 행태(criminal Behavior)」⁸¹⁾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기로 한다⁸²⁾.

79) Douglas, Burgess, Burgess, & Ressler. (1992). *Crime Classification Manual*, Lexington, MA: Lexington.

80) Douglas. (1997). *Crime classification manual*.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p. 167-189.

81) Bartol, (2002). *Criminal Behavior: a Psychosocial Approach(6th ed.)* NJ: Prentice Hall. pp. 360-363.

82) 국립강력범죄분석센터(NCAVC)는 방화에 대한 선행연구 및 실제방화사건, 수감된 방화범들에 대

이에 의하면 방화범의 범죄동기는 반달리즘, 흥분, 보복, 범죄은닉, 이익, 극단주의적 신념, 병적 방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반달리즘 동기 방화(Vandalism Motivated Arson)

반달리즘으로 인한 방화란 권위에 도전하거나 권태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불을 지르는 것을 말한다. 이 유형은 기성사회나 기존의 질서에 대한 반발심리로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재산의 파괴 또는 손상을 입히고자 하는 동기에서 기인한다. 이 유형의 방화는 주로 청소년들이 행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⁸³⁾

반달리즘으로 인한 청소년의 방화는 방화를 통하여 개인적인 만족감에 도취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집단화된 불량청소년이 소속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거나 다른 그룹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떼를 지어 거리 등을 배회하면서 방화하는 유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⁸⁴⁾

이들의 전형적인 목표는 교육시설이지만 주거지도 포함되며, 또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도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저소득계층 자녀일 가능성이 높고, 범죄 발생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살며(통상적으로 1마일 이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어린 연령대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 시기에는 마약(drugs)과 알코올(alcóhol)을 남용하지 않는다. 성적 만족은 그의 범죄나 목표선택에서 유발요인이 되지 않는다. 그는 오후와 주말동안에는 평범하게 행동할 것이다. 주로 낮에는 학교에 있으므로 화재는 방과 후에 발생한다. 전체 방화의 연령에 따른 전형적인 불을 지르는 내는 자(fire setter)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는 젊은 사람들 중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사람들에 의해 전체 방화의 49%가 저질러졌음을 알 수 있다.

한 인터뷰 자료 등을 근거로 방화범의 동기를 일곱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센터는 범죄인의 동기에 대한 분석은 범죄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보며, 특히 범죄동기를 통하여 범인의 인성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동기란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주거나 이를 촉진하는 내적인 요소 또는 충동이라고 정의한다(Douglas, et al., p. 165).

83)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2). *Incendiary Fire Analysis and Investigation*. New York: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pp. 2-6.

84) 김종한. (1998). “방화화재 대책”. 『방화와 보험』, 제79호, p. 33.

이들은 불을 낸 후 화재 현장에서 도망치거나 현장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나. 흥분 동기 방화(Excitement Motivated Arson)

이 유형은 불을 통해 스틸이나 관심, 존재감, 성적 흥분 등을 목적으로 방화를 하는 경우이다.⁸⁵⁾ 이들은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불을 지르는 경우는 드물다. 이들은 불타는 모습을 안전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불을 구경하거나, 불을 구경하는 사람들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즐기기도 한다. 이 유형은 대부분 청소년 또는 젊은 성인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고, 중산층의 부모와 함께 살고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인관계가 활발치 못한 소극적인 성격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관심을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관심을 획득하는 한 방법으로 불을 낼 곳을 찾는다. 그는 불을 내고 안전한 거리에서 화재 현장을 지켜본다. 불을 내는 대상은 야산, 자동차, 건축현장의 건축기자재, 주거지 등이다. 나이에 따라 발화장치가 다른데 젊은 경우는 간단한 것을 사용하나 나이가 들면 복잡한 것을 즐겨 이용한다.

이 유형의 젊은 방화범은 종종 범죄경력이 있으며, 나이가 많은 범피자들은 장기간의 수감경력이 있다. 이들은 주로 단독으로 저지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방화를 한다. 이들 유형은 성적 만족이 특별한 범죄동기는 아니다. 종종 범죄현장에서 사정흔적이나 음란물 등을 발견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⁸⁶⁾

[사례 1]

...부산 금정경찰서는 소방헬기가 출동해 진화하는 모습에 쾌감을 느껴 부산의 명산인 금정산에 상습적으로 불을 질렀다는 이모씨(41·경비원)에 대해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이씨는 1일 오전 10시 50분경 금정산 나비봉 숲에 불을 질러 임야 200여평을 태우는 등 지난해 1월부터 4차례에 걸쳐 600여평을 태운 혐의인데 자신이 직접 화재신고를 한 뒤 진화작업에도 참여했다가 화재 때마다 현장에 나타난 점을 이상히 여긴 구청 관계자들의 수사의뢰로 털미...(동아일보, 2001년 1월 5일, 31면).

85) Goldstein. (1996). p. 25.

86) holmes & Holmes. (2000). *Murder in America(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 106.

다. 보복 동기 방화(Revenge Motivated Arson)

보복으로 인한 방화는 대인관계에서 원한을 가져 이를 보복하는 수단으로 방화를 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은 다른 동기에 의한 방화의 경우 보다 매우 계획적이며, 단 한번의 방화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복을 위하여 방화를 선택한 것이므로 몸과 마음이 심하게 흥분되어 있고, 용기를 얻기 위하여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매우 치밀한 계획을 세워 방화를 하고, 방화의 결과가 참혹하며, 방화범 스스로 자신도 방화로 인해 자멸할 각오를 한다.⁸⁷⁾

보복의 내용에 따라 개인적인 원한관계, 사회활동의 문제, 법이나 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보복 등 매우 다양하므로 방화범의 범죄동기 중 가장 많은 원인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사례 1]의 경우 부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를 앙갚음하기 위하여 방화를 한 경우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개인적인 원한에 대한 보복으로 방화를 한 경우이다.

[사례 1]

소방서 공익요원이 자신을 무시하는 소방관들을 고생시키기 위해 10여 차례에 걸쳐 고의로 불을 지르다 7세 어린이를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양주시내 가옥과 차량 등에 연쇄적으로 불을 질러 어린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황모씨(23·양주시 덕정동)를 7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6일 오후 6시경 양주시 광사동 노모씨(37)의 축사 내 가옥 앞 폐가구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방 안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노씨의 아들(7)을 연기에 질식사 숨지게 했다. 이에 앞서 황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양주시 덕정동 덕정빌라 앞 쓰레기더미에 불을 지르는 등 최근 까지 양주시내를 돌며 10여 차례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2001년 1월 의정부 소방서 모 소방과출소에 공익요원으로 입대한 뒤 지난해 5월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황씨는 경찰에서□이전에 한번 무단이탈했다 복귀해 사과했는데도 소방관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무시해 소방관을 고생시키기 위해 탈영한 뒤 방화했다□고 진술했다(문화일보, 2001년 12월 13일, 31면).

이들의 방화는 일회성으로 발생하며 복수 대상의 특정한 거주지, 회사, 시설, 정부기관

87) 홍성열. (2000). 범죄심리학. 서울: 학지사, p. 287.

에 집중되어 있다. 이 방화범은 통상적으로 하층계급의 배경을 가지지만 반달리즘형 방화범(vandalism arsonist)이나 흥분형 방화범(excitement arsonist)보다는 더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가 많다.

여성이 방화범일 경우 이 유형인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다. 그녀는 옛 애인이나 남편의 의류나 침구류 등 남성에게 소중한 것에 불을 지름으로써 복수를 꾀한다. 이들은 화재현장에서 멀리 도망쳐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복수형에게 있어 성(sex)은 일반적으로 방화의 동기유발요인이 아니며, 자신에 대한 모욕이 직접적인 원인이며, 모욕은 실제 발생한 것이거나 또는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라. 범죄은닉 동기 방화(Crime Concealment Motivated Arson)

범죄은닉이 동기가 된 방화는 일차적으로 행한 다른 범죄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불을 지르는 것으로서, 방화는 이차적인 범죄행위가 된다.⁸⁸⁾ 즉 살인·강도·절도 등의 범죄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고의적으로 불을 지르거나 자신에 대한 불리한 기록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사무실 등에 불을 지르기도 한다. 또는 건물이나 주택 등에 침입하여 강도를 할 동안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방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위장자살을 은폐하는 한 수단으로 방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유형의 방화범들은 자신의 범죄은닉 이외에는 타인의 안전이나 재산상의 손실 등에 대하여는 무관심하는 등 냉혹하고 잔인한 면을 보인다.

이 유형의 범죄는 대부분 석유류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데 범죄자는 지능이나 학식이 높지 않으므로 본래의 1차 범죄증거를 완전히 없지는 못하며, 범행현장은 비구조조적인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방화현장에서 많은 물리적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범죄은닉형 방화범은 대체로 빈곤층에서 성장한 성인 남성이고, 저녁이나 이른 아침 시간에 범죄를 행하며, 혼자 살며, 범죄현장에서 약간 더 떨어진 곳에서 산다. 이들은 전과경력이 있을 수 있으며, 대부분 불을 낸 즉시 범죄현장에서 도망친다.

이들에게 있어 성(sex)은 일차적인 동기유발 요인(motivating factor)이 아니며, 살

88) Ressler, Burgess, & Douglas. (1988). *Sexual homicide: Patterns and motives*.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인, 주거침입, 자동차 절도 등의 다른 범죄의 증거를 없애는 것이 방화원인이다. 단독으로 범행을 하며, 방화가 살인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면 방화는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면 연쇄 방화범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범죄시 알콜이나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의식적으로 통제력을 상실시키려 한다.

[사례 1]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11일 아버지와 할머니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방화까지 한 이모씨(23.사 대 3년 휴학)를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은 10일 오후 2시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집에서 잠자고 있던 아버지 이모씨(47.7 대 교수)를 스키폴대에 묶은 흥기 2개로 수차례 찢러 살해한 뒤 비명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할머니 전모씨(72)도 다른 흥기로 찢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씨는 서울 송파구 일대 주유소 3곳에서 휘발유 1ℓ씩을 구입,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할머니 시체에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범행에 사용한 흥기 등을 스키가방에 담아 집 근처 야산에 묻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향신문, 2002년 6월 12일, 23면).

마. 이익동기 방화(Profit Motivated Arson)

이익-동기 방화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로 상업적인 범죄라고도 부른다. 이 유형의 방화범들은 모든 유형의 방화범 중에서 정서적 또는 심리적 요인이 가장 적게 작용한다. 방화는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한 생각의 결과에서 발생한다. 이 유형의 범죄자는 대부분이 25~40세의 남자이고 무직자이면서 혼자 살며, 강도·폭행 등의 범죄경력이 다양하고, 다른 범죄와 연루되어 체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방화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주 조직적이라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조직적이지 못하고, 지능이 평균정도이며, 사회적으로 혹은 직업적으로 뒤처져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⁸⁹⁾ 이 유형의 방화는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해 행해지며, 어떤 재산이나 물건을 완전히 소각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재산피해는 크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89) 홍성열. (2000). 전계서, p. 289.

방화를 행하는 경우는 적어 대체로 인명피해는 많지 않다.⁹⁰⁾

3. 방화사건의 프로파일링

앞에서 설명한 대로 방화의 동기를 기준으로 방화범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사회적 특징 및 행동적 특징을 <표 12>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고 방화현장의 물리적 자료 및 피해자 등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프로파일링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표 12> 방화범의 유형별 사회적 특징 및 행동적 특징의 차이

특 징	반달리즘	홍분형	복수형	범죄 은폐형	이익형
연 령	청소년	청소년	성인	성인	성인
사회적 계급	중하위계급	중류계급	하층계급	하층계급	노동자계급
범 죄 시간대	오후	오후, 저녁	오후, 저녁	저녁 이른아침	저녁, 아침
범죄 요일	주말	다양함	주말	다양함	주말
동거 여부	부모	단독	단독	단독	단독
알코올 및 마약사용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범죄의 근접성	1마일	1마일	1마일	1마일	1마일
단독 범행 여부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범죄현장에 머무르는가?	머무름	머무름	머무름 없음	머무름 없음	머무름 없음
성적 동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교육수준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직 업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체포기록	청소년	있음	있음	있음	있음
결혼상황	싱글	싱글	싱글	싱글	싱글

• 출처 : Douglas , Burgess, Burgess & Ressler. (1992). Crime Classification Manual, Lexington, MA: Lexington; Sapp, Huff, Gary Lcove & Horbert(1992), A Report of Essential Findings From a Study of Serial Arsonists, Unpublished manuscript에서 재구성.

90) Kuhn. (2004). Arson Prevention: Motives and Mitigation Programs. *Fire Engineering*, p. 114.

제4장 한국경찰의 범죄 프로파일링 실태

제1절 범죄 프로파일링관련 조직 및 운영

1. 경찰청 과학수사센터(과학수사계)

경찰청은 과학적 범죄분석자료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수사국 과학수사센터⁹¹⁾의 범죄정보지원계에 「범죄분석팀(VICAT)」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05년 및 2006년에 30명의 심리학·사회학 등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경찰관(범죄분석관)으로 특별채용, 경찰청을 포함한 각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배치·활용하고 있다. 서울지방청을 제외하고는 각 지방청에 1명 또는 2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도 10명을 채용하였다.⁹²⁾

91) 경찰청, 경찰백서, 2006-2007.

92) 경찰청 훈령 제68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서는 범죄분석 업무가 과학수사센터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제25조(과학수사센터) 과학수사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00.10.16, '05.1.18>

1. 과학수사업무<개정 '00.10.16, '05.3.10>
 - 가.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 및 관리
 - 나. 과학수사 교육계획 수립·시행
 - 다. 과학수사 예산 및 장비 관리<개정 '06.3.30>
 -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운영 지원·감독
2. 자료운영 및 정보지원업무<개정 '05.3.10>
 - 가. 주민등록발급신청서 등 지문자료 수집·관리
 - 나. 지문자동분류검색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관리·운영<개정 '06.3.30>
 - 다. 수사자료표의 수집 및 형사입건 처리결과 정리
 - 라.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
 - 마. 감식자료의 축사 운영
 - 바. 수사자료의 분석·지원
 - 사. 지명수배(통보)·전산입력 및 해제 자료 관리 운영
 - 아. 범죄수법·공조자료 관리 운영
 - 자. 프로파일링 등 범죄분석
3. 증거분석업무<개정 '05.3.10>
 - 가. 화재감식 등 현장감식 관리
 - 나. 지문 감정에 의한 신원확인 및 자료관리
 - 다. 족흔적 감정 및 감정자료 관리

각 지방청별 배치현황은 2007년 7월 19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표 13> 범죄분석관 배치현황

총원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46	5	8	2	3	3	1	1	1	7	3	2	2	2	2	2	2

자료 : 과학수사센터, 2007, 유기준 국회의원 질의답변서

범죄분석관⁹³⁾들은 각종 강력사건 분석을 통하여 수사대상자를 추출하거나 유력한 범인상(criminal Profiling)을 도출하여 분석자료를 담당수사팀에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분석항목을 활용한 범죄분석 DB 구축 및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를 활용한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강력사건의 범인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선에 배치된 범죄분석관에 대하여 설문지 조사를 벌였는 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4>와 같다. 이들의 성별 분포로는 남자는 27.6%, 여자는 65.5%를 나타내 여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은 20대가 58.6%, 30대가 41.4%로 나타났다. 학력은 조사대상자의 89.7%가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것으로 조사되어 학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경력과 관련하여 특채1기의 경우는 44.8%, 특채2기의 경우는 48.3%로 경력이 고루 반영되었다. 근무기관은 지방청의 경우가 86.2%, 경찰청의 경우가 6.9%로 조사되었다. 전공은 심리학이 79.3%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학의 경우 13.8%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와 같이 범죄분석관이 경찰청이나 지방청 단위에 배치됨으로써 오히려 사건에 대한 접근성과 집중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즉 “지방청에 배치되어 전업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고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점, 타업무의 중복수행, 형사들과의 의사소통 통로가 부족하다” 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라. 몽타주 작성, 사진 등 영상자료 판독 및 판독자료 관리

마. 거짓말탐지기 운영

바. 과학수사기법·프로그램 및 장비 개발

93) 현실적으로 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를 범죄분석관으로 지칭하고 있는 바, 이 장부터는 그 내용에 따라 국내의 경우는 범죄분석관으로 지칭하고, 국외의 기관, 사례, 정책적 도입방향 등에 있어서는 범죄프로파일러 또는 파일러로 지칭하기로 한다.

<표 1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 도 (명)	퍼 센 트 (%)
성 별	남 자	8	27.6
	여 자	19	65.5
	무응답	2	6.9
	계	29	100.0
연 령	20 대	17	58.6
	30 대	12	41.4
	계	29	100.0
학 력	대졸이하	1	3.4
	대학원이상	26	89.7
	무응답	2	6.9
	계	29	100.0
경 력	특채1기	13	44.8
	특채2기	14	48.3
	무응답	2	6.9
	계	29	100.0
근무기관	지방청	25	86.2
	경찰청	2	6.9
	무응답	2	6.9
	계	29	100.0
전공분야	심리학	23	79.3
	사회학	4	13.8
	법학	1	3.4
	무응답	1	3.4
	계	29	100.0

2. 정보수집 및 접근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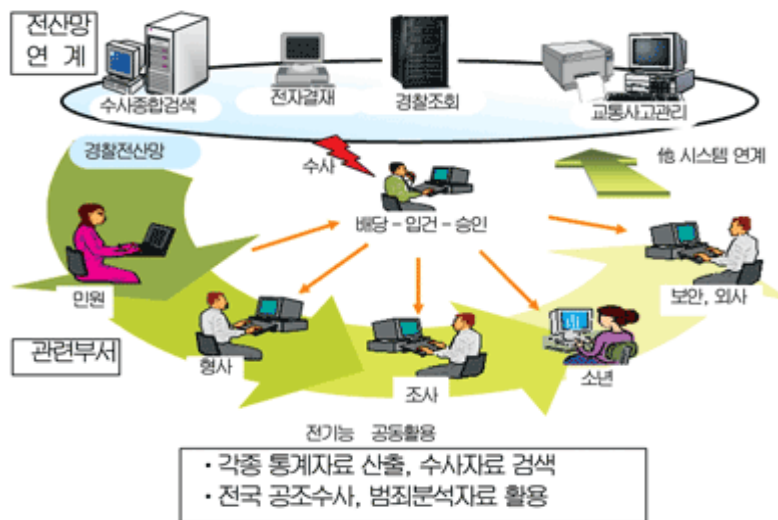
현재 범죄분석관이 수사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방법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집하는 방법이 있다.

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방법

1) 범죄정보 관리시스템(CIMS)의 활용

네트워크상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된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으로 수사지식자료, 범죄통계자료, 수사자료 등 각종 범죄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 PC에서 직접 필요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데 종전에 종이원표로 작성하여 진중요원이 수사자료를 입력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사관이 자료를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여, 중간 관리자가 검토·승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 3〉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운영체계도



일반 인터넷환경과 동일한 메인화면을 구성하여 전문 수사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수사전문가 코너, 사법경찰교양자료, 주요수사사례, 문헌자료, 법령 및 판례 검색 등이 가능한 개별 콘텐츠를 구성하여 수사관이든 누구나 자료를 검색 할 수 있도록 수사포털 사이트를 내부 네트워크에서 제공하고 있다. 사건의 접수단계에서부터 각종 사건자료를 검색하여 신속·정확한 사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기존에 입력된 미제사건 중에서 범죄수법과 수사단서 등을 조건으로 여죄검색이 가능토록 하는 등 다양한 범죄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장점이 있다.

2)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SCAS)의 활용 등

과학적분석시스템(SCAS)을 통하여 범죄개별항목 등을 입력하여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현장감식자료, 범죄분석자료, 과학수사조직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⁹⁴⁾ 수사종합검색시스템(CRIFISS)를 통해서는 범죄자수법, 마약사범, 조직폭력사범, 변사자영상자료를 얻을 수 있는 데 이 시스템은 범죄정보관리시스템 및 교통안전면허시스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미아가출인시스템 등과 연계되어 있다.

이 밖에도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수사자료표전산화시스템(CRIS), 족윤적감정시스템(FTIS) 등이 있다.

나. 수사경찰을 통한 자료접근

경찰청의 범죄분석업무운영지침 제11조는 “범죄분석요원은 효율적인 범죄분석을 위하여 해당사건의 담당수사요원과 협의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 수사요원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프로파일러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직접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경찰관은 이를 제공할 의무를 정함으로써 적어도 범죄분석관에게 정보요구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제12조 제1항은 “사건담당관서의 형(수)사과장은 중요사건발생 및 검거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 지방청 형(수)사과장에게 범죄분석을 의뢰할 수 있고, 범죄분석요원은 신속히 범죄분석보고서를 작성, 통보해야한다.”고 함으로써 중요사건에 대한 범죄분석의

94) 경찰청, 범죄행동분석매뉴얼, 2006. 66-67.

뢰와 그에 대한 응답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사건담당관서 형(수)사과장은 범죄분석보고서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신속히 작성, 통보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수사 이후의 결과를 범죄분석관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살인 등 중요강력사건에 대해 6개월 이상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사건서류를 편철하기 전에 범죄분석관에게 범죄분석을 의뢰하도록(동 지침 제4조 제4항) 함으로써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사경찰과의 정보공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분석관이 겪는 업무수행과정 중 어려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수사과정에서의 정보공유, 일선의 협조와 부정적 인식, 수사진행사항 정보입수의 어려움, 수사관 및 지휘관의 인식이 부족하다.” 등의 내용이 주로 제시되었다.

제2절 범죄 프로파일러의 교육

1. 신입교육과정

신입교육과정의 교육은 일반순경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최초의 교육과정은 일반순경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적용하여 프로파일러 양성이라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2006년 5월부터 시행된 제2회 교육은 약간의 변화를 시도하여 일반순경과정(남자경찰공무원)을 기준으로 총 840시간(100%) 중 소양과목을 141시간(17%), 법률과목 43시간(5%), 실습 602시간(71%) 기타 54시간(7%)으로 편성되었으나 범죄분석요원의 경우 총 840시간(100%) 중 소양과목을 127시간(15%), 법률과목 67시간(8%), 실습 592시간(70%), 기타 54시간(7%) 등으로 편성된 차이를 보였다.

즉,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과목의 비중을 늘리고, 일반과정에는 없는 다음과 같은 교과목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표 15〉 범죄분석요원 과정의 특별과목

과 정	과 목	시 간	비 고		비 고
			일반과정	증 감	
범죄분석 (23H)	범죄분석 실무	6	0	+6	
	범죄심리학	7	0	+7	
	형사사진학	4	0	+4	
	피의자면담기법	4	0	+4	
	과학수사장비운용	2	0	+2	

〈표 16〉 신입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여부

구 분	빈 도 (명)	퍼 센 트 (%)	
신입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	그렇다	3	11.5
	보통이다	11	42.3
	아니다	9	34.6
	매우아니다	3	11.5
	계	26	100.0

범죄분석요원들은 신입교육과정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11.5%, 보통의 경우 42.3%,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46.1%로 조사되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교육에 대한 불만은 “선발된 자의 기본 소양 평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교육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작 프로파일링에 대한 기본개념 교육은 소홀하게 됨, 신입교육자체는 필요하나 그 외 범죄분석관으로서의 교육이 부족하다. 따라서 기본 신입 교육과정이 끝난 후 범죄분석관 교육이 추가로 되어야 한다, 특채이지만 일반 교과과정과 동일하여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을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을 만한 커리큘럼과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 신입순경과정 교육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나 특화과정을 만들어 1개월 정도의 집중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등의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다.

2. 재교육과정

이들이 각 지방청에 배치된 이후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경찰수사연수원이나 지방경찰학교 등인데 이들만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경찰수사연수원의 전문지식과정 중 범죄분석전문과정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의 교육목표는 범죄현장 분석방법 및 관련기록 수집 기법 습득, 범행행위 특성 및 범행후 행적등 파악, 분석 등이며, 중점교육방향은 범죄사건분석론, 범죄분석실무, 이상심리유형 및 행동특성인지, 인터뷰기법 및 PAI 심리평가해석 등이다. 이 과정은 전문교육과정으로 경감이하의 과학수사요원중 범죄분석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실시된다. 기간은 1주, 6과목 31시간이고, 과목은 직무과목으로 범죄분석매뉴얼 3시간, 이상심리유형 및 행동특성 3시간, 범죄분석실무 10시간, 인지인터뷰 기법 5시간, 심리검사의 응용 6시간,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 4시간 등이다.

〈표 17〉 재교육 과정의 교육정도

구 분	빈 도 (명)	퍼 센 트 (%)	
재교육 받은 시간	없 다	3	11.5
	10시간 미만	3	11.5
	10시간-20시간	6	23.1
	20시간-30시간	2	7.7
	30시간-40시간	5	19.2
	50시간이상	7	26.9
	계	26	100.0

설문지 조사결과 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11.5%에 불과하여 대부분 재교육을 이수하였다. 특히 50시간 이상 재교육을 받은 경우가 26.9%, 10시간이상 20시간 미만의 경우 23.1%, 30시간이상 40시간 미만의 경우 19.2% 로 조사되어 신입교육 이후에도 재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재교육이 관련 업무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범죄분석가는 41.7%로 조사되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41.5%인 것으로 나타나 재교육에서 어느정도 도움을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8〉 재교육 과정의 만족여부

구 분	빈 도 (명)	퍼 센 트 (%)
교육도움여부	매우그렇다	4.2
	그렇다	37.5
	보통이다	41.5
	아니다	8.3
	매우아니다	8.3
	계	24

교육이 도움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신기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및 습득, 범죄분석요원들과의 교류를 통한 문제해결, SCAS프로그램의 운영방법과 면담시 심리검사 실시요령 등에 도움, 교육을 통해 각 청에서 근무하는 범죄분석요원들과 중요사건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다른 청에서의 분석기법이나 여러 새로운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어 도움,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사례별 프로파일링 기법을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어 도움이 되었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으로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과정은 일반형사 및 직원들과 교육을 같이함으로써 교육의 내용이 전문화되지 못하고 개괄적인 내용이 주를 이룸, 범죄분석관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커리큘럼의 부적절, 적절한 강사가 부족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범죄 프로파일링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는 경찰수사연수원이 71.9%, 지방경찰학교 9.4%순으로 조사되어 범죄분석관 대부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의견으로 자신이 소속되어있는 지방청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장내나 지방경찰학교 등에서의 교육이 매우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재교육 과정의 교육기관

구 분	빈 도 (명)	퍼 센 트 (%)
교육기관 (중복응답포함)	지방경찰학교	9.4
	직장내부서훈련	3.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3.1
	경찰수사연수원	71.9
	기타	12.5
	계	32

제3절 범죄분석관의 업무 및 활동

1. 범죄분석관의 업무

경찰청의 범죄분석업무 운영지침 제2조는 범죄분석요원을 경찰청, 지방청 과학수사기능에 배치된 범죄분석 전문 과학수사요원이라고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그 선발 기준을 심리학, 사회학 등 관련분야전공자, 거짓말탐지, 범죄면수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범죄분석 전문교육수료자, 수사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

제4조는 범죄분석 대상사건을 살인, 강도, 강간(성폭력 포함), 방화, 약취유인 등 강력사건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등으로 제한하면서 범죄분석요원의 임무를 범죄분석보고서의 작성 및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심리검사 및 면담 등의 자료의 관리 등으로 명시하였다.⁹⁵⁾

이와 같은 규정을 살펴볼 때 프로파일러는 살인 등의 강력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 결과를 당해 수사경찰에게 통보하고, 해당 경찰은 수사결과를 프로파일러에게 제공하여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도록 상호협력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범죄프로파일러가 일선에 배치된 이후 실제 어느 정도 프로파일링 업무를 수행했는가를 조사한 결과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95) 범죄분석업무운영지침 제4조 ② 범죄분석요원은 범죄분석 대상사건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분석보고서를 작성, 담당수사관에게 제공하고, 담당수사팀은 분석보고서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 환류 통보하며, 범죄분석요원은 이를 수집·분석하여 수사자료화한다.

1. 사건현장사진
2. 진술서·진술조서·신문조서 등 진술자료, 수사보고서 등 수사자료
3. 범죄분석표 등

③ 범죄분석요원은 범죄분석 대상사건 중 범인검거사건의 경우 제2항의 자료 이외에 담당 수사기관 및 수행기관과 협조하여 피의자·피고인·수형자 등에 대한 심리검사 및 면담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수사자료화한다.

<표 20> 프로파일링 관련 자문 정도

구 분	빈 도 (명)	퍼 센 트 (%)	
지난3년간 프로파일러자문 경험	10번이상	5	20.0
	10번-5번	5	20.0
	5번-3번	3	12.0
	3번미만	11	44.0
	전혀없다	1	4.0
	계	25	100.0

자문대상의 범주는 살인이 가장 많아 프로파일링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프로파일링 관련 자문 대상 범죄

구 분	빈 도(명)	퍼 센 트(%)	
자문한 범죄종류 (중복응답포함)	강 간	6	17.1
	강 도	3	8.6
	절 도	1	2.9
	방 화	6	17.1
	살 인	18	51.4
	기 타	1	2.9
	계	35	100.0

실제로 경찰청이 유기준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경찰청의 답변서에 나타난 범죄 프로파일링 실적은 2007년 7월 19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표 22> 전국범죄분석관의 범죄 프로파일링 실적

연 도	죄 종					
	계	살 인	성폭력	방 화	강 도	기 타
'07년	256	83	64	14	79	16
'06년	376	149	136	17	69	5

자료: 경찰청 과학수사계, 2007, 유기준 국회의원 질의답변서

2. 범죄 프로파일러의 활용

<표 23> 프로파일링의 문제해결기여도 인식

구 분	빈 도(명)	퍼 센 트(%)	
범인검거 도움여부	그렇다	8	33.3
	보통이다	10	41.7
	아니다	6	25.0
	계	24	100.0

범죄분석관의 자문 결과 수사팀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가 33.3%, 보통이다가 41.7%, 아니다가 25.0%로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그대로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도움이 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범인추정이 75.0%로 가장 많아 이 제도가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문을 할 수 있는 기회 없음, 외근형사들의 거부감, 수사에 대한 책임문제, 자문을 했으나 실제 형사들이 분석 내용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일선 수사관들에게 있어 프로파일링이 와 닿지 않는다. 수사관들은 범인지목을 원한다.”는 등의 이유들이 제시되었다.

<표 24> 프로파일링의 문제해결 도움 분야

구 분	빈 도(명)	퍼 센 트(%)	
도움분야 (중복응답포함)	범인추정	9	75.0
	범인신문	2	16.7
	수사모든과정	1	8.3
	계	12	100.0

제4절 기존 수사경찰의 범죄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해

1. 수사경찰의 범죄 프로파일링 관련 교육

수사경찰이 수사업무와 관련하여 근무 중 이수할 수 있는 교육은 대부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수사연수원의 교육과정은 크게 종합과정과 전문지식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종합과정은 수사지휘과정, 금융경제범죄수사과정, 공공지능범죄수사과정, 사이버범죄수사과정, 강력범죄수사과정, 과학수사과정, 보안수사과정의 7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교과체계가 직무교과와 소양분야 등으로 대별되는 데, 직무교과는 해당교육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양과목은 경찰정신이나 시사성 있는 주제를 시기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종합과정은 수사경찰관이 그 교육대상자이므로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는 모든 과정에 프로파일링 관련 교과목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수사지휘과정, 강력범죄수사과정, 과학수사과정 등에만 배정되어 있다.

수사지휘과정은 12주 동안 경정, 경감 및 경위 팀장을 대상으로 전체 58과목, 420시간 중 6시간을 배정하였는데, 이 과정의 교육목표는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수사지휘관 확보, 수사지휘에 필요한 실무위주의 전문교육 습득, 수사팀장으로서 수사지휘 및 종결처리 할 수 있는 종합판단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충족시키기에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해 및 기존 강력법을 주로 담당하는 수사경찰과 범죄분석관과의 업무상 협조 및 조정 등을 행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어 보인다.

강력범죄수사과정의 교육목표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 관련 전문가 양성, 각 범죄 유형별 수사의 key-point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 중요범죄 대처, 사건 수사를 위한 수사기법 토론 발굴 체득 등이다. 이 과정은 4주 동안, 경감이하에 대하여 교육하는 데, 입교요건은 강력(폭력)범죄수사팀 1년 이상 근무 경력자이며, 41과목에 교육시간은 140시간이다. 이 가운데 프로파일링 이해 등의 과목은 없고, 유사과목으로 범죄정보분석(CIMS) 3시간, 최근중요범죄 해결사례 3시간, 강력범죄세미나 7시간이 배정되어 있어, 총 13시간으로 전체의 3%를 차지하고 있다.

과학수사과정의 교육목표는 과학수사의 기본적 개념정립과 증거물별 채취 기법 습득, 사건유형별 적용 가능한 다양한 과학수사기법 학습 등이며, 4주 동안, 경감 이하에 대하여 교육한다. 입교요건은 강력(폭력)범죄수사팀 1년 이상 근무 경력자이며, 교육시간은 40과목에 140시간이다. 교과목에 프로파일링 관련 과목은 범죄분석(프로파일링)의 이해 3시간 배정되어 있어, 전체의 2%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수사연수원의 전문지식과정은 회계장부수사전문과정, 재산범죄판례연구과정, 선거범죄수사전문과정, 보건범죄수사전문과정, 환경범죄수사전문과정, 총기범죄수사전문과정, 디지털증거분석프로그램전문과정, 강력범죄추적수사전문과정, 마약류범죄수사전문과정, 조직폭력범죄수사전문과정, 테러인질범죄수사전문과정, 현장사진촬영기법전문과정, 범죄분석전문과정, 현장감식전문과정, 화재감식전문과정, 범죄정보시스템분석과정, 통신추적수사전문과정, 신문기법전문과정, 성폭력수사전문과정, 국제범죄수사과정, 산업보안과정, 보안수사지휘과정, 안보위해문건분석과정의 23개의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프로파일링이 전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범죄유형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이라고 할 때 이 23개 과정 중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해가 시급한 경우는 총기범죄수사과정, 강력범죄추적수사전문과정, 성폭력수사전문과정, 등이다. 또한 효과적인 프로파일링을 위해서는 풍부한 법의학적 또는 법과학적 자료가 선결요건이라 본다면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기법 등을 배우는 교육과정인 현장감식전문과정, 화재감식전문과정 등에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중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해나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수사방법 등에 대한 교과목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성폭력수사전문과정의 경우에는 범죄심리학, 성폭력 범죄의 법의학적 증거확보 등을 개설함으로써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과정에서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성범죄 수사나 외국의 주요사례 등을 강의할 수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분석과정을 별도로 개설하였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이 과정에 입교하도록 당초부터 교육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수사경찰이 최종별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임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2. 범죄프로파일러와 기존 수사경찰과의 소통정도

범죄분석관들은 수사경찰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신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휘관의 정보 및 인식부족, 적절한 교육과정의 부재, 일선 사건담당자들이 관련 정보 제공에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빈약한 자료로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 수사경찰관과의 자료정보 공유 및 역할관계 모호, 현장경험부족, 수사관 및 지휘관의 인식부족, 일선의 협조와 부정적 인식, 당장 답을 내길 바라는 상사의 요구, 객관적 과학적 기법의 부재, 추상적이고 애매한 정보의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결과기대, 형사들과의 의사소통통로가 부족하다.” 등의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특히 수사경찰이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고, 용의자를 특정해주길 바라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는 등의 대답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제5장 범죄 프로파일링의 효과적 활용방안

제1절 법령 및 조직의 정비

1. 근거 내부규정의 제정

수사경찰의 조직과 업무와 관련된 법령은 형법, 형사소소법 등 기본법을 포함하여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경찰의 조직과 직무의 설정법 및 각종 범죄에 대한 특별법 등 그 대상범율이 매우 방대하다. 이밖에도 경찰 내부에서 그 기속력을 발하는 경찰청장 훈령이나 경찰청 예규, 고시 등은 범죄수사에 관한 기본적인 내부지침인 범죄수사규칙을 포함하여 모두 3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⁶⁾

이 가운데 범죄분석관이 소속되어 있는 과학수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훈령 등은 중요사건비디오촬영및보존에관한규칙, 거짓말탐지기운영규칙,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자료관리규칙, 경찰범죄통계규칙, 지문및수사자료표등에관한규칙, 현장사진작성및기록관리규칙 등이 있다.

그런데 이미 2005년부터 범죄분석관을 채용하여 경찰청을 비롯하여 각 지방청에 배치하였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직무와 그 수행방법, 그리고 기존 수사경찰들과의 업무협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관련 내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물론 범죄분석업무지침을 마련하긴 했지만 이는 훈령이나 예규, 고시에 비해 법률적 기속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의 인식에도 각인되기 어렵다.

범죄 프로파일링 제도 자체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일선 경찰관들의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 그리고 수사경찰의 특성상 중요 강력범인 검거시 특진 등의 인센티브가 수시로 제공됨에 따라 업무협조의 갈등문제가 따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분석관의 권한과 업무영역, 수사경찰과의 협조 범위 등을 명확히 설정한 내부 근거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96) http://www.police.go.kr/INVPOL/index.jsp?_page=5, 2007년 10월6일 검색.

2. 조직의 정비

현재 범죄분석관들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는 경찰청의 경우 수사국 내의 과학수사센터⁹⁷⁾의 범죄정보지원계에 배치되었다. 범죄정보지원계에 범죄분석팀을 신설하였는데 현재는 별도 정원이 책정되지 않아 서울청의 인력을 파견근무 형태로 지원을 받아 이 팀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청의 경우 수사부 형사과 내의 과학수사계에 배치되어 있으며, 타 지방청의 경우 형사과가 설치된 곳은 형사과 내의 과학수사계에, 그리고 수사과만 설치된 곳은 수사과 내의 과학수사계에 배치되었다. 즉 경찰청과 서울청, 경기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팀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과학수사계 내에 1명 혹은 2명을 배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프로파일링 제도의 도입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인력채용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으나 이 제도의 특성상 전문범죄분석관의 채용과 양성이 쉽지 않고, 일정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점, 그리고 프로파일링 대상 범주의 한정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은 조직의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즉, 아직 범죄분석관 인원이 적어 휴가나 교육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긴 공백이 발생하며, 전문 인력이 대폭 보장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범죄분석관의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청 단위 뿐만 아니라 각 경찰서의 과학수사팀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겠지만 이것 역시 인력충원의 한계가 있다. 또한 각 경찰서 단위별로 인원을 배치할 경우 프로파일링 수요가 각 경찰서 별로 일정치 않으므로 전문성 강화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첫 번째 안은 현행처럼 각 지방청 별로 과학수사계 배치하되 그 인원을 적어도 5명 정도로 1개 팀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지방청의 실정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서울이나 경기청의 경우처럼 사건발생이 많은 지역에서는 더 많은 팀과 인력을 둘 수 있다. 인원이 많을 경우 과학수사계 소속이

97)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⑧과학수사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수사자료의 분석 및 지원
3. 범죄감식 및 범죄기록의 수집·관리
4. 피의자의 지문·사진 및 주민등록지문의 수집·관리 등 채증업무
5.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지원 및 감독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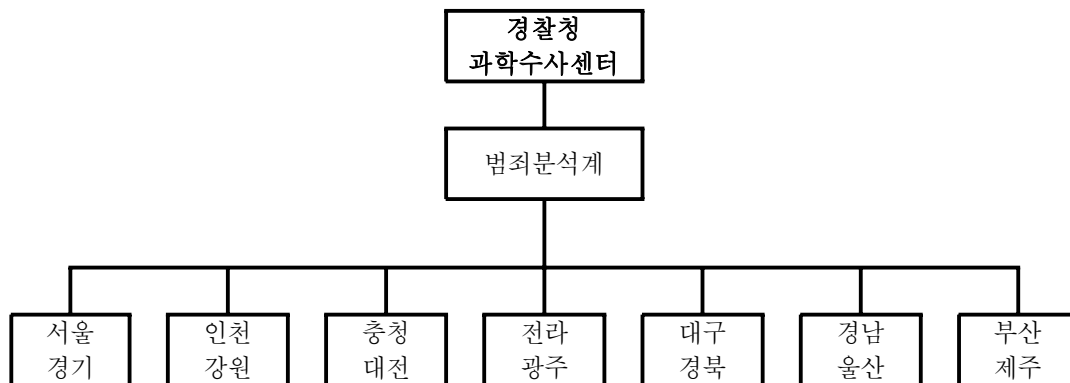
아닌 별도의 범죄분석계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러한 정도의 인원이 되어야만 강력사건이 연쇄살인이나 강도 사건 등의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이 절감되는 사건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범죄분석관을 분산하여 배치할 수 있고, 또한 범죄분석관들이 그 전문범죄 영역을 개발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찰청의 과학수사센터 내의 범죄분석팀의 조직과 인력보강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행과 같이 지방청에서 파견근무의 형태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직원의 사기도 저하될 뿐더러 업무의 일관성 및 집중도가 저하될 수 있다. 범죄분석관의 업무 영역이 좀 더 명확해지고, 인력충원이 확장된다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내에 범죄분석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두 번째 안으로는 경찰청에 별도의 범죄분석계를 설치하여 현재 각 지방청에 1-2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 범죄분석관을 모아 각 지방청의 강력범죄 발생 정도를 감안하여 지방청 두 세 곳을 한 팀이 관할하는 이른바, 권역별 팀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모형으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권역별 관장 팀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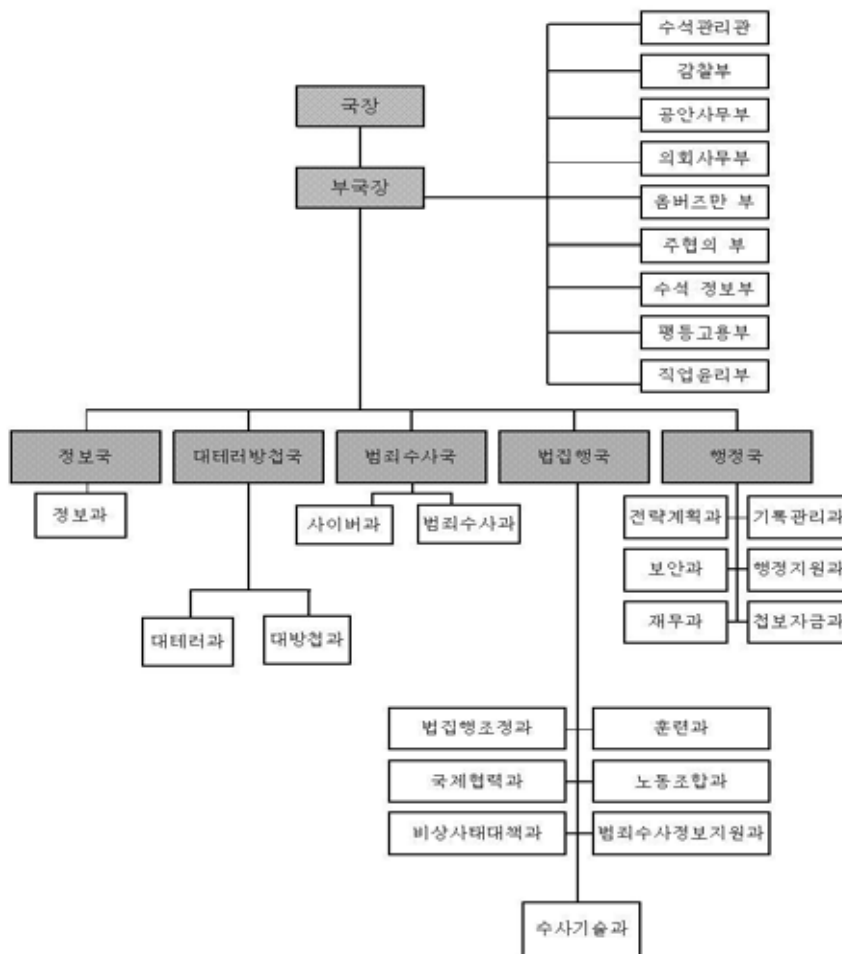


이러한 형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는 시스템으로 각 경찰서마다 프로파일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범죄분석자료를 관리하고, 이를 공유하며, 연쇄살인이나 성범죄 등이 발생할 경우 프로파일링을 지원하는 패턴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범죄 프로파일링이 요구되는 사건 자체가 연쇄살인, 연쇄강간, 연쇄방화 등 어느정도 연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서명과 수법 등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기존의 강력범에 대한 수사자료, 면담자료, 신상자료, 유전자정보 등의 지원이 함께 따라야 하는 그 본질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는 FBI의 NCAVC에서 프로파일링 업무를 관장하며, 국내외 법집행기관의 요구에 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기본적으로는 연방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행하며 각 법집행기관을 지원하는 형태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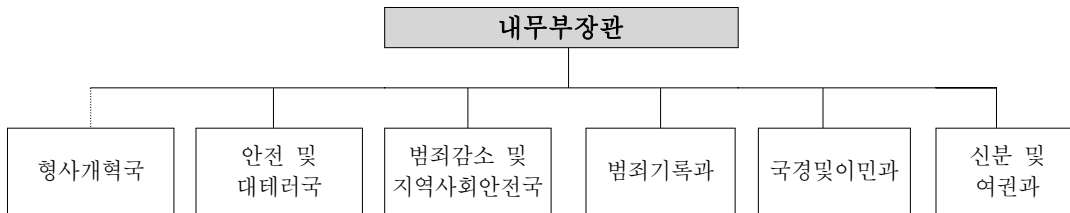
〈그림 5〉 FBI의 조직도⁹⁸⁾



98) <http://www.fbi.gov/publications/strategicplan/strategicplanfull.pdf>, 2007년 10월 15일 검색.

영국의 경우는 범죄 프로파일링 관련해서는 일련의 부서가 있다. 첫째, 내무부의 과학발전과(Home Office Scientific Development Branch)의 요원들을 업무를 들 수 있다.⁹⁹⁾ 과학발전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scientists라고 불리우며, 이들은 영국의 모든 경찰과 검찰, 교정, 보호관찰 등을 담당하는 법집행기관들에게¹⁰⁰⁾ 범죄 및 범죄자, 그리고 범죄수사장비 및 경찰장비, 보호장비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며, 관련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주업무로 한다. 이들은 영국의 법집행기관 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림 6〉 영국의 내무부 조직도¹⁰¹⁾



둘째, 내무부의 법의학 서비스(The Forensic Science Service: FSS)에서도 프로파일링을 위한 감식자료 등을 제공하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유료서비스 기능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경찰기관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외에도 기타 법집행기관 및 국외 법집행기관에게도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1998년에 경찰교육기관인 Centrex 내에 NCPE가 설립되었다. NCPE 내에는 각각 SCAS(Serious Crime Analysis Section), OSS(The Operational Support Section 또는 Crime Operations라 부름), Uniformed Operations 등 3개 부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SCAS는 개개 경찰기관으로부터 사건정보, 사건서류 등을 받아 ViCLAS DB에 사건

99) <http://scienceandresearch.homeoffice.gov.uk/hosdb/about-us/what-we-do/>, 2007년 10월 15일 검색

100) <http://scienceandresearch.homeoffice.gov.uk/hosdb/about-us/working-with-partners/>, 2007년 10월 15일 검색.

101) <http://www.homeoffice.gov.uk/about-us/organisation/home-office-structure/>, 2007년 10월 15일 검색.

정보를 입력하고, 분석보고서를 산출하여 경찰기관에 지원하고, OSS는 중요사건 발생시 경찰의 요청에 의해 현장에 입장하여 사건수사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으며, OSS 내 BIA(Behavioural Investigative Advisor)라 불리는 행동분석가는 행동분석보고서를 산출하여 경찰기관에 지원하고 있다.¹⁰²⁾

SCAS는 Centrex 내의 국립범죄및통제과(National Crime and Operations Faculty : NCOF)에서 폭력범죄연계시스템(ViCLAS)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만여건의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거의 같은 수 정도의 강력사건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 영국에서 가장 많은 강력범 자료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¹⁰³⁾

SCAS는 대인적 강력범에 대한 분석에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GIS)을 활용하여 강력사건이 발생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유사 전과자나 유사사건을 찾아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SCAS는 기본적으로 범죄지도(crime mapping)을 활용하여 범인을 검거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므로 SCAS의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 수사관서는 ViCLAS에 입력을 전제로 한 계약을 SCAS와 체결해야 한다.¹⁰⁴⁾ SCAS는 영국내 수사관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와 연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경찰청의 과학경찰연구소에서 범죄 프로파일링과 관련한 업무도 행한다. 경찰법 제28조에서 과학경찰연구소의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¹⁰⁵⁾.

102)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ViCLAS를 범죄분석을 위한 기본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고, EVUBAG(European ViCLAS Users and Behavioral Analysts Group)이라는 범죄분석 실무자들 모임도 있다.경찰청, 범죄분석매뉴얼, 2006. 18.

103) http://www.npia.police.uk/en/search_results.htm?search_text=scas, 2007년 10월 15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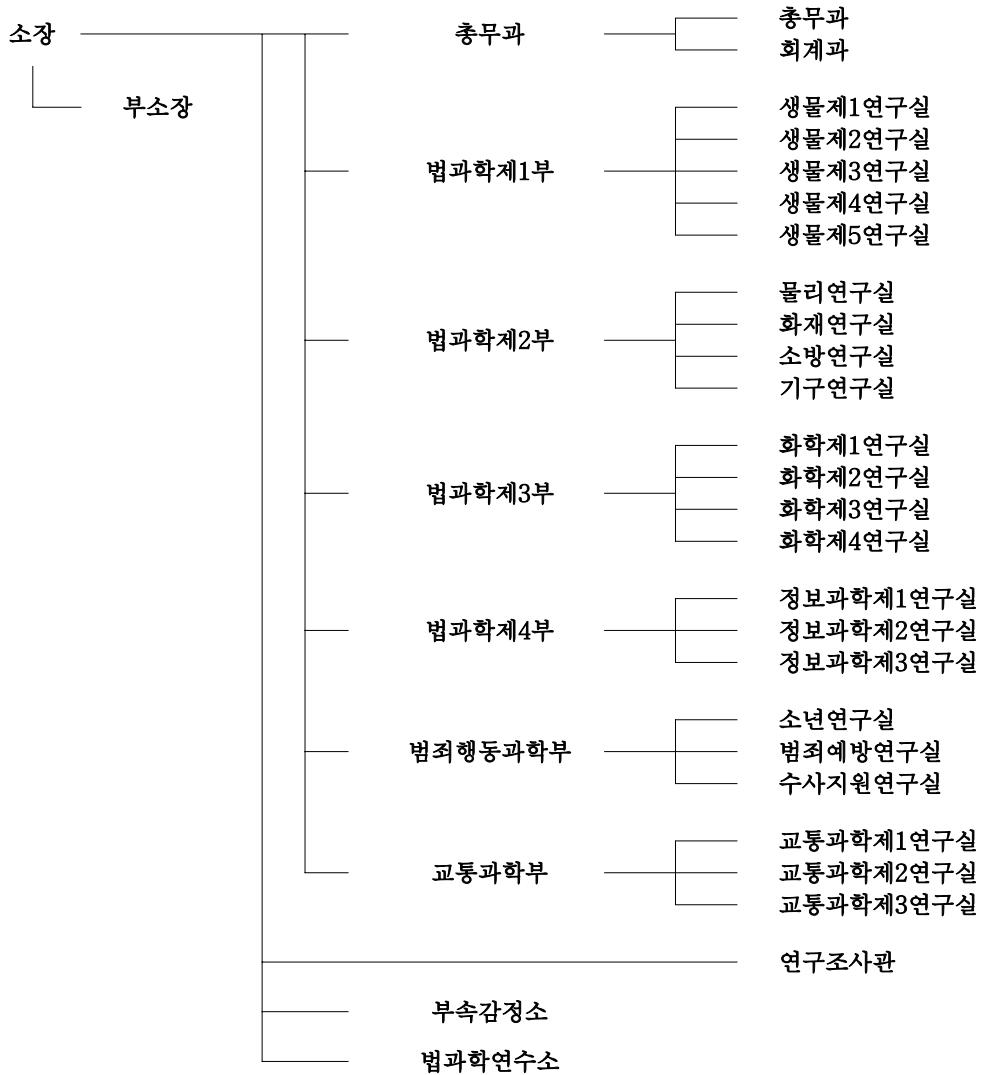
104) http://www.nottinghamshire.police.uk/uploads/library/125/Serious_crime_analysis.pdf, 2007년 10월 15일 검색.

105) 제28조 경찰청에 과학경찰연구소를 부설한다. 과학경찰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주관한다.

1. 과학수사에 대한 연구 및 실험과 이것들을 응용하는 감정 및 검사에 관한 사무
2. 소년의 비행방지 그 외 범죄의 방지에 대한 연구 및 실험에 관한 사무
3. 교통사고의 방지 그 외 교통경찰에 대한 연구 및 실험에 관한 사무
4. 과학경찰연구소에 소장을 둔다.
5. 과학경찰연구소의 위치 및 내부조직은 내각부령으로 정한다.

과학경찰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과학수사센터 보다는 조직의 규모 및 업무영역이 방대하다. 경찰과학연구소는 조직을 7부 22연구실, 연구조사관, 2부속기관으로 구성하고 있다. 조직도를 통해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일본의 과학경찰연구소의 조직도



이 가운데 범죄행동과학부는 심리학·사회학·정신의학 등의 행동과학으로부터 범죄자의 행동이나 범죄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및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주된 연구영역은 소년비행의 요인이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범죄의 예방 대책의 입안이나 평가에 관한 연구, 범죄자의 심리에 관한 연구이며 소년연구실, 범죄예방연구실, 수사지원연구실 등 세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¹⁰⁶⁾

소년연구실은 소년비행의 원인이나 배경을 분명히 하는 조사연구와 소년비행 대책의 효과성을 조사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년의 강력·난폭한 비행의 배경 및 징후에 관한 연구, 소년의 재비행화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의 비행 방지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¹⁰⁷⁾

범죄예방연구실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자, 피해자·피해물체, 범행의 장소나 지역사회 등에 대해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법활동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범죄다발지점의 지리적 분포에 관한 연구, 지역주민의 환경과 범죄불안감에 관한 연구 등이 중점적으로 진행중이다.¹⁰⁸⁾

수사지원연구실은 인질사건, 유괴사건, 하이잭사건 등의 특수한 범죄에 대해 행동과학적 측면에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의 행동 및 심리학적 데이터를 분류·판별하는 수법의 연구 및 이것에 근거하고 범인을 산출하기 위한 기술, 연속사건의 범인 동일성의 추정, 범행지의 예측 등 심리학 혹은 행동과학을 응용한 범죄수사를 지원하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목격자의 증언이나 범죄자의 수법정보를 기초로 범죄자를 추정하는 시스템의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¹⁰⁹⁾

106) <http://www.nrips.go.jp/org/behavioral/index.html>, 2007년 10월 20일 검색.

107) <http://www.nrips.go.jp/org/behavioral/juvenile/index.html>, 2007년 10월 20일 검색.

108) <http://www.nrips.go.jp/org/behavioral/prevention/index.html>, 2007년 10월 20일 검색.

109) <http://www.nrips.go.jp/org/behavioral/support/index.html>, 2007년 10월 20일 검색.

제2절 범죄 프로파일러 선발과 양성과정의 전문화

1. 대상선발의 개선

현재 한국은 프로파일러의 채용은 심리학이나 사회학 등을 전공한 자를 신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이 대학과정에서부터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대학 교육 이후 관련 인턴십 등을 거치는 등의 경력은 극히 드물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신입요원 채용시 대학에서 프로파일링과 관련한 과목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로 모집요건을 강화하거나 기존 수사경찰 중에서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제한하여 모집하는 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학과가 설치된 커리큘럼을 조사하고, 범죄 프로파일링에 필요한 교과목을 경찰이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 커리큘럼을 이수한 경우에만 모집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¹¹⁰⁾

미국의 경우 범죄 프로파일링을 담당하는 FBI의 국립강력범죄센터(NCAVC)는 프로파일러를 신규채용하지는 않는다.¹¹¹⁾ 즉, FBI는 실제로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의 사람을 고용하지는 않는 것이다.

NCAVC에서 특수요원(special agent)이 미공개된 범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담당한다. 이들은 국내외의 법집행기관들에게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관리조언, 직접적인 평가와 인터뷰 전략 등을 제공한다.

NCAVC의 특수요원이 되려면 먼저 FBI 특수요원이 되어야 한다. FBI 특수요원이라고 해서 바로 NCAVC의 특수요원이 될 수는 없으며 FBI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어도 10년 정도 강력범죄 및 성범죄수사, 유괴사건 등을 유능하게 수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심층 행태심리학 및 법의학 등에 대한 교육경험이 있어야 한다.

특수요원이 아닌 상태에서 NCAVC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분석전문가(intelligence research specialists), 강력범죄자료관리전문가(violent crime resource

110) 임준태, 과학수사 기반구축을 위한 법과학 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경찰학회 제11회 세미나자료집, pp. 25-32.

111) <http://www.all-about-forensic-psychology.com/fbi-profiler.html>, 2007년 10월 22일 검색.

specialists), 범죄분석가(crime analysts) 등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조사방법,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이 있어 탁월한 전문성을 가질 것을 요구받는다.

NCAVC의 특수요원 또는 조사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서면시험과 심리측정을 통과해야만 결정된다.

다만, 미국은 심리학이나 범죄학, 경찰행정학 전공자들에 대한 범죄 프로파일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학이나 대학원생 시절에 이를 직접체험하게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NCAVC에서 14주간 운영함으로써 장기적인 차원의 인력개발을 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¹²⁾ 즉,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은 경우 면접과 약물검사, 거짓말탐지기검사, 신원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이들은 무급이며 FBI가 관여하는 범죄를 연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할 기회가 부여되며, NCAVC에 출석하여 수업을 들을 기회도 부여된다. NCAVC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① 조사(research)

인턴들은 사회과학조사방법론을 이용한 자료조사라는 과제를 부여받는데 각 인턴의 수준에 맞게 과제가 부여된다. 이들은 조사과정의 모든 단계를 스스로 디자인 한 뒤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는 데, 이에는 문헌검색 및 검토, 데이터수집, 코딩, 분석, 제본 등이 포함된다.

② 사례 진단(case consultations)

인턴들은 NCAVC의 팀으로 들어가 직접 팀원들이 특정한 사건을 진단하는 것을 관찰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팀원들의 팀워크를 배우게 된다.

③ 수업(classroom instruction)

인턴들은 FBI 아카데미가 운영하는 과정의 일부 강좌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며, 또

112) <http://www.fbi.gov/employment/ncavc.htm>, 2007년 10월 22일 검색.

한 NCAVC가 운영하는 강좌에도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강좌는 주로 폭력적 범죄와 범죄자들에 관한 것이다.

④ 상호커뮤니케이션(daily interaction and networking)

인턴들은 기간 동안 매일 다양한 직원들과 교수요원, 그리고 다양한 학문적, 그리고 실무적 경험을 가진 요원들과 경험, 경력, 학문에 대하여 토론과 대화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범죄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유능한 전문인력의 유인기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이들에 대해 채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으로 경찰이 전문성과 직업동기를 가진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인력충원을 신규채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 강력 경찰 중 10년 정도 근무한 경력자에 대하여 일정한 교육을 이수케 한 뒤 프로파일링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것 보다 효과적이다. 특히 기존 수사경찰과의 협조나 범죄현장에 대한 인식, 풍부한 경험사례 등은 신규 프로파일러가 오랫동안 직접적인 업무경험을 통해서만 익힐 수 있는 노하우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데 이 방안도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 내무부의 과학발전과(HOSDB)는 약 200여명의 전문가들이 일을 하는데 그 채용은 신규채용과 경력직채용을 함께 하며,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관련 전문기술의 직접적인 시연을 통한 검증과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채용한다. 대학원과정에서 영국의 심리학회(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BPS)가 인정한 각 대학의 법의학적 심리학 석박사과정을 이수한 경우 채용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심리학의 개념과 이를 통한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을 연구하고 완성시킨 리버풀 대학의 David Canter 교수가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개설한 수사심리학 석사과정(Master of Science in Investigative Psychology: MSIP) 과정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 과정은 BPS가 영국 내에서 최초로 인정한 프로파일링 관련 석사과정이다. 이 과정에는 심리학 전공학생이 절반 정도 되며, 나머지는 경찰수사요원, 경찰법의학 요원, 보호관찰집행요원 등을 대상으로 1년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데 교과과정은 다음

과 같다.¹¹³⁾

- 범죄행위에 대한 이해(the available explanations of criminal behaviour)
- 범죄유형별이해(방화, 강도, 사기, 살인·연쇄살인), 위협과 공갈, 강간, 도난, 스토킹, 폭력, 조직범죄와 마약, 테러)
- 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평가(approaches to the treatment and assessment of criminals)
- 수사결정과정의 심리학적 접근(psychological processes in investigative decision making)
- 프로파일링의 보통 범죄자에 대한 적용절차(procedures available for linking crimes to a common offender)
- 인터뷰심리학 및 인터뷰훈련(the psychology of interviewing and approaches to training interviewers)
- 현행 형사법체계에 대한 이해(basic, relevant issues in the British legal system)
- 수사심리학에 관련된 전문성, 그리고 윤리적 이해(professional and ethical issues of relevance to Investigative Psychology)
- 범죄 프로파일링의 역사와 쟁점(the history and critiques of ‘offender profiling’)
-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의 접근(approaches to ‘geographical profiling’)
- 출판과정과 학술자료의 보급(the processes of publication and dissemination of academic material)
- 경찰수사의 본질과 과정(the nature and processes of police investigations)
- 진술 유효성 및 거짓말탐지기의 활용절차(the procedures available for statement validation and detecting deception)
- 범죄분석을 위한 IT 활용(the IT procedures drawn on from Crime Analysis)

113) <http://www.all-about-forensic-psychology.com/david-canter.html>, 2007년 10월 24일 검색.

- 범죄정보로부터의 범죄자 성격도출(approaches to inferring offender characteristics from crime information)
- 경찰조직과 범죄 네트워크 등과 관련된 심리학 과정에 대한 이해(the main organizational psychology processes that are relevant to understanding both police organizations and criminal networks)

이러한 교육과정은 강의식 방법과 현장체험식 방법을 병행하며, 모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학의 과정이지만 현장경험이 없는 학생이나 현장경험을 어느 정도 갖춘 법집행공무원 등 모두에게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지원자는 어느 정도 프로파일링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전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지원자를 대상으로 그 기술과 전문성 등을 직접 확인 한 뒤 인터뷰 등을 통하여 채용하는 방법은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비용이 덜 들고 그 능력이 검증된 경우이므로 교육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지원대상자는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하고 있어 기존경찰관도 응할 수 있다.

2. 신입교육과정의 단계화

범죄분석관의 신입교육과정은 일반순경과정과 차별화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범죄분석 실무, 피의자면담기법, 범죄심리학, 형사사진학, 과학수사장비운용 등의 5과목을 사실상 신입 범죄 프로파일러 교과목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많은 프로파일러들이 신입교육과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등에서도 현재의 교과 과정은 상당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중앙학교는 기본적으로 일반신입순경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이 기관에 특별채용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전담케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즉, 기존의 교수인력과 교육시설만으로 경찰행정학 전공자교육이나 범죄분석요원교육, 외사경찰요원교육 등과 같은 특수인력에 대한 교육을 행하게 하는 것은 이미 교육내용이나 효과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교육의 장점은 경찰의 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가 낮은 대상자들에 대하여 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는 효과

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심층면담 결과 신입교육이 가지는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업무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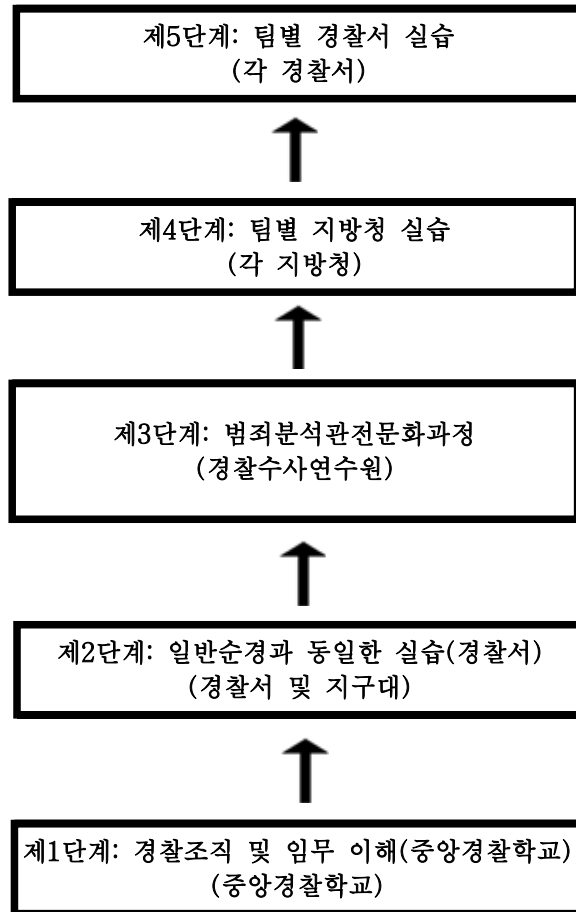
따라서 신입교육은 단계별로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행처럼 신입교육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할 경우를 전제로 할 때, 먼저 제1단계 교육은 경찰의 조직, 업무, 권한, 기본적인 운용법령 등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과과정을 1개월 정도 시행한 후 제2단계로 1개월간 순찰지구대 및 경찰서에서 일반순경과 동일한 실습을 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체화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제3단계 교육은 교육기관을 옮겨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데 이 과정에서는 현행 범죄분석과정을 보완하여 범죄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범죄심리학, 범죄통계분석법, 각종 수사정보컴퓨터프로그램 접근 및 활용법,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주요 프로파일링 대상범죄에 대한 수사사례 분석, 외국의 연쇄살인범 등의 해결사례분석, 피의자면담기법, 프로파일링의 역사, 생물학적 범죄원인에 대한 이해,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해, 수사심리학(Investigative Psychology), 피해자학, 범죄학, 법의학적 병리학, 법의학적 심리학, 법의학적 사회과학, 연쇄살인유형론, 조직적 범죄 및 비조직적 범죄 분류에 대한 평가와 비판, 수법과 서명에 대한 이해, 남성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례연구, 여성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례연구, 환상의 재연주기와 범죄(The Fantasy Reenactment Cycle and Crime), 성적 가학증·식인주의(Cannibalism)·시간증(Necrophilia), 성욕도착주의(Fetishism) 등에 대한 이해, 성적 도착주의에 대한 이해, 편집증적인 자아도취성격,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싸이코패스, 경계성 성격과 강박증, 강간범의 유형, 아동성폭행과 성욕, 방화 및 성폭행범, 대량학살, 직장폭력¹¹⁴⁾ 등을 2개월 정도 학습한다.

제4단계는 2개월간 팀을 구성하여 서울, 경기, 충청, 대구 등 강력사건이 빈발하는 지역의 지방청에 집중배치하여 실제 사건발생시 처리과정을 관찰하고, 사건해결을 위한 프로파일링, 그리고 일선 사건해결 경찰관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에 대하여 익히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114) 이 교과과정은 North Carolina Wesleyan College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제안한 것이다. <http://faculty.ncwc.edu/toconnor/428/428lects.htm>, 2007년 10월 26일 검색.

〈그림 8〉 신입교육과정의 단계화(안)



신입교육과정에 대한 범죄분석관들의 불만의 대부분이 실무적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하였다는 것과 사례별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 피드백 시스템이 없다는 점 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교육패턴이 바람직 해보인다.

제5단계는 6개월간 교육 이수 후에도 바로 일선에 배치할 것이 아니라 팀을 구성하여 사건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거나 강력사건 미제사건이 많은 경찰서에 일선 경찰서에 배치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데 수사경찰과 함께 생활하며 실무현장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8〉 과 같다.

3. 재교육과정의 특성화

현재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파일링 교육은 앞에서 제시한대로 범죄분석과정 뿐이다. 이 교육은 기본적으로 범죄 프로파일러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일선 수사경찰과 범죄분석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과정의 편성이나 교수인력의 전문성을 피하기 어려운 점이 없다. 실제로 이 교육을 이수한 범죄분석관들의 반응은 매우 냉정하다. 즉, “교육이라기 보다는 모임 정도로 생각함, 깊이가 없음, 교육내용의 반복” 등의 불만이 많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교과과정의 편성과 교육기간의 조정 등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FBI에서 NCAVC의 특수요원으로 배치된 경우 500시간에 달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특수요원과 정보자료관리전문가, 관리자들은 모두 매년 열리는 정례학회에 참석하고, 매월 관리자개발프로그램(staff development program)에 참석하고, 매일 업무주제와 관련한 토론을 가지는 등 활발한 재교육을 정기교육과 세미나, 그리고 직무중 교육의 형태로 다양하게 실시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으며, 이를 정리한 것이 <그림 9>이다.

첫째, 교육을 반드시 경찰수사연수소에서 하는 강의식 수업의 형태로 고정할 것이 아니라 팀을 구성하여 일정기간 사례분석 및 이론식 수업을 거친 뒤 일선 경찰서로 배치하여 수사경찰과 합동근무하는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신규채용된 범죄분석관의 경우 현장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현장에 대한 접근관찰이나 수사진행상황, 그리고 피해자와의 접촉 등에서 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과학 수사요원이 전해주는 감시자료 결과와 수사보고서 등만을 가지고 프로파일링 작업을 한다면 제대로 된 결과 도출이 어렵다는 것은 매우 자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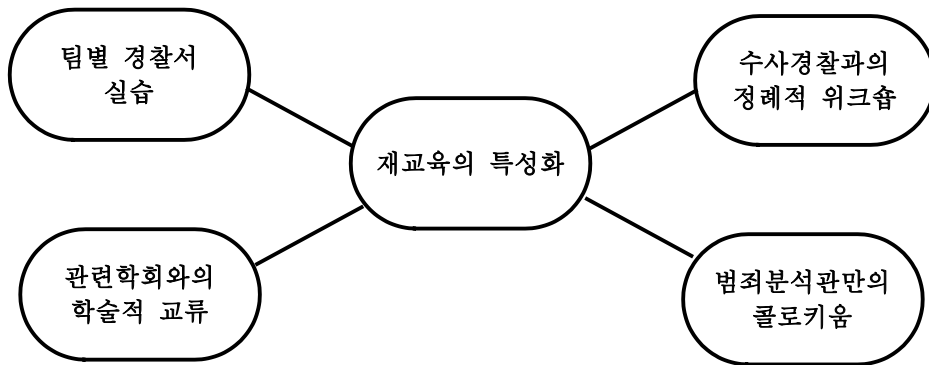
둘째, 교육과정에 기존 수사경찰 요원을 함께 참여시켜 그동안의 살인사건이나 방화사건 등의 경험사례를 설명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한 정례적인 토론과 분석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는 현재와 같이 단순히 주입식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수사경찰과 범죄분석관이 함께 참여하고, 업무영역을 서로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범죄분석관들만의 콜로키움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한다. 프로파일링 관련 범

죄심리학 등의 이론적 동향을 연구,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국내외 강력사건 처리사례를 분석, 발표하고, 토론키 함으로써 현장경험과 같은 정도의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넷째, 관련 학회와의 학술적 교류를 정례화 한다. 즉, 한국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법의학회 등 관련 학회의 정례적인 학술행사에 프로파일러의 참관이나 발제, 토론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정보취득과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며, 경찰의 범죄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해와 지원도 얻을 수 있다.

〈그림 9〉 재교육 과정의 특성화(안)



제3절 업무영역의 명확한 설정과 수사경찰과의 조화

1. 범죄분석관의 업무영역의 명확화

범죄분석관의 상당수가 자신의 업무영역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 데 예를 들어 “범죄현장에 가서 범죄분석을 하기는커녕 감식요원의 부족으로 감식역할을 함, 오로지 프로파일링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갖가지 과학수사와 관련된 일을 함께 하고 있으므로 전적으로 범죄분석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함 - 전문화 불

가능, 타업무의 중복수행, 범죄자료 입력만으로도 일이 벅차다” 등의 반응이 상당하였다.

현 단계가 범죄분석관이 부족한 상태이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고유한 분석 업무 이외에 이러한 부수적인 업무의 부여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한편 부수적인 업무가 지나쳐서 주된 업무에 집중할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할 정도라면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범죄분석관들은 강력사건 현장에서, 그리고 일선 담당 수사경찰들과 교류하고, 그 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도 범죄정보자료관리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하여 업무에 전종하게 하는 점을 참고할만하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다양한 수사정보관리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별도의 정보입력과 관리, 분석 등의 업무를 행하는 전문가 집단의 확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업무의 불분명성과 수사경찰과 범죄분석관의 간극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한 수사경찰이 제시하는 아래와 같은 방안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중요사건이 발생하면 분석요원이 초기부터 수사본부에 참여해서 수사회의도 같이 하고 최소 1주일이상 해당서에 상주하면서 사건을 따라가야 합니다. 범죄현장분석, 초동 수사내용, 목격자진술, 피해자진술, 현장증거물의뢰분석, 현장100회 등 본부요원이 되어서 형사들이 명과받고 복명하는 수사보고서를 일일이 보고 재명과하거나 새롭게 명과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까지 본부요원이 되어야 실제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범인을 잡는데 도움을 줄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과수계의 범죄분석요원과 강력계의 분석요원(통계내고 보고서작성하는 직원)이 합쳐져야 합니다. 현재 과수계 분석요원은 피의자면담, 전산입력하는 업무과다로 허덕이고 있으나, 실제로 일선에서 분석이 필요한 것은 각 관할별로 CCTV 분석(동일범), 지문, 족적 분석, DNA분석, 범죄수법분석등을 해서 지방청에서 각 경찰서에 분석 자료를 하달하여 수사하게 하고, 본청은 그 중에서 각 지방청별로 유사한 것들을 분석해서 내려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분석요원이 할 수 있는데 지금 과수계의 분석요원은 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피의자면담하고 전산입력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NCAVC의 특수요원처럼 FBI 사건을 비롯한 국내외의 법집행기관들에 대한 프로파일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과 경험이 필수적인 바, 현재와 같이 분석과 자료입력 등의 업무를 병행하는 시스템으로는 분석요원이 감당하기

어렵다.

범죄 프로파일링제도의 도입이 초기단계이므로 아직 제도가 정착되기 전이라서 겪는 많은 시행착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초기에 명확한 업무의 설정을 통하여 수사경찰 상호 간 업무상 마찰을 줄여야 한다.

2. 기존 수사경찰에 대한 프로파일링 관련 교육확대

범죄분석관들이 수사경찰과의 관계와 정보교류 등에 대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대답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장은 인간관계다. 인간관계가 잘 되있는 분야에서는 그만큼 정보를 빠른 시간안에 많이 질적 그리고 양적 협조가 가능하지만, 사이가 그럭저럭일 때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검시관 제도로 인해 검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와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으나, 감식 분야에 대해서는 DNA있음 없음, 지문 있음 없음, 이것으로 끝이다. 감식 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므로 한계를 많이 느낀다.”

“..우선은 일선 형사들에게 범죄분석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서 그들이 범죄분석관에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분석을 요청하는 일이 더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프로파일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전제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이 수사과정에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거나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즉, 수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경찰조직내 범죄행동분석업무 이해 부족...” 즉, 기존 수사경찰들의 범죄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수사자료를 얻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기존 수사경찰들에게 프로파일링에 대한 교육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파일링 작업과 전문가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수사경찰에 대하여 실시되는 대부분의 교육과정에 프로파일링과 관련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점과 범죄분석관이 용의자를 확정짓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수사경찰에 대한 모든 교육과정에 프로파일링과 관련한 교과목을 재정해야 한다. 교육과정에 따라 개설시간은 달리하지만, 범죄분석관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그리고 주요 강력범죄와 관련한 수사기술 등을 강의하는 수사지휘과정, 강력범죄수사과정, 과학수사과정, 총기범죄수사전문과정, 강력범죄추적 수사전문과정, 조직폭력범죄수사전문과정, 테러인질범죄수사전문과정, 현장사진촬영기법전문과정, 현장감식전문과정, 화재감식전문과정, 범죄정보시스템분석과정, 신문기법전문과정, 성폭력수사전문과정 등에는 반드시 범죄 프로파일링 관련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또한 이들뿐만 아니라 각 지방경찰학교의 수사과정의 강력팀수사과정, 과학수사과정, 수사행정실무과정 등에도 관련 교과목을 배정하여 수사경찰의 이해를 돕고, 프로파일러와의 자료교환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이밖에도 수사경과제가 순경 이상 경정 이하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누구든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사경찰이 될 수 있으므로 경사, 경위, 경감, 경정 등의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과정에도 관련 교과목을 배정하여야 한다. 총경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정책과정에도 반드시 해당 교과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재에는 경찰간부후보생 및 경정특채자교육 등에 수사관련 교과목 시간 배정이 다른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어느 정도의 프로파일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제4절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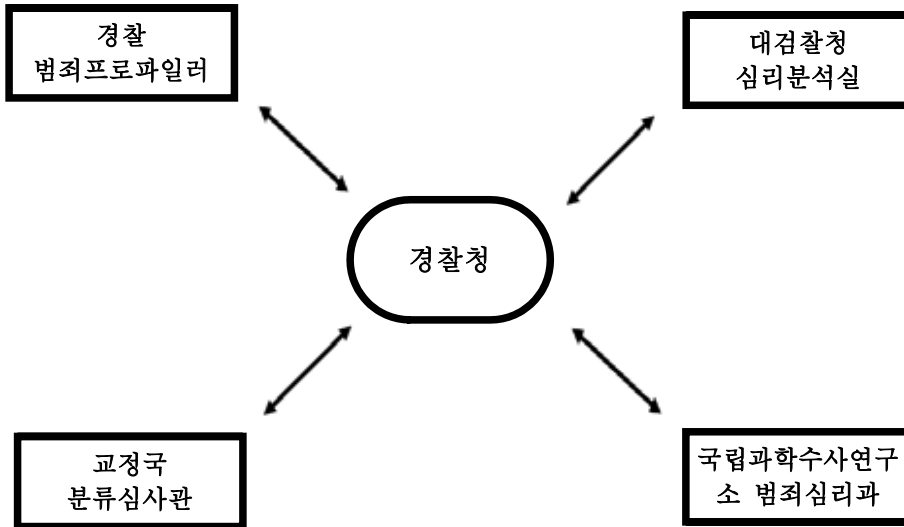
1. 정보공유시스템 개발

현재 범죄 프로파일링과 관련한 직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경찰청의 과학수사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범죄심리과, 대검찰청의 과학수사담당관실의 심리분석실 정도라 하겠다. 이밖에도 법원에서 실형을 받은 범죄인을 수감 중인 교정국 역시 수형자 관리 차원에서 수형자에 대한 프로필을 부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이 이러한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 조직의 확대나 전문

인력의 확보, 데이터 베이스화의 용이 등의 장점이 있겠지만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다.

〈그림 10〉 정보공유시스템 개발 모형(안)



국과수가 먼저 프로파일링을 실시한 만큼 현재로서는 좀 더 많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선 지방청에 근무하는 범죄분석관이 접근하기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 소속기관이 달라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들 기관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공유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경찰청이 도입 운영하고 있는 수사자료관리 전산시스템을 기초로 검찰과 국과수의 범죄심리과가 보유 중인 자료를 링크해서 공유하는 형태가 바람직해 보이며, <그림 10>과 같은 네트워크 체계로 표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가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모듈을 통일시키고, 기존의 자료 역시 통일된 모듈에 따라 재분류하여 입력하여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데이터 베이스화의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별도의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체는 경찰청이 담당하는 것이 범죄 프로파일링의 본질상 적합하다.

2. 국외기관과의 교류 확대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의 범죄 프로파일링이 정착된 국가의 해당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선진 기법과 정보를 취득하여야 하며, 특히 일정기간 국내 프로파일러들을 국외 기관에서 연수를 받거나, 국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내에서 일정기간 프로파일러 교육과 자문 등을 받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Canter 교수가 자신이 근무하는 리버풀 대학에 개설한 수사심리학석사과정(Master of Science in Investigative Psychology: MSIP) 과정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학의 대학원에 설치된 Forensic Sciences 석박사과정 등에 국내 프로파일러를 일부 진학케하여 장기적으로는 관련 전문교수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만 하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는 범죄 프로파일링 관련한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교수진을 갖춘 대학은 찾기 어렵다. 물론 경기대학교 대학원이나 그 밖의 대학의 대학원과정에 심리학에서 세부전공으로 이와 관련하여 학습할 수는 있겠으나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근무 중인 범죄 프로파일러 가운데 일부에서 그 국외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경찰 자체 내에서의 교수요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근무중인인 요원들은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갖추었으므로 학업수행능력과 그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수형자 면담 및 자료 확보

Ressler가 FBI의 BSU에서 범죄인성격조사 프로젝트(Criminal personality research project: CPRP)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교도소를 순회하면서 연쇄살인범들을 면담하고, 그 관련자료를 분석한 것이다.¹¹⁵⁾

115) 당시 Ressler가 연쇄살인범들에 관한 면담과정과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 『WHOEVER FIGHTS MONSTERS』로 1993년에 출판되었고, 국내에서는 『살인자들과의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2004년에 출판되었다. 당시 Ressler가 면담한 대상자들에 대한 더욱 상세한 자료는 이 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다. <http://www.criminalprofiling.ch/cases.html>, 2007년 10월 30일 검색.

이러한 면담자료가 실제 강력사건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면서 관련 자료들을 좀 더 행동 과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이를 다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지면서 NCAVC가 설치되었고, 강력범죄자체포프로그램(VICAP)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¹¹⁶⁾ 이러한 과정은 범죄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수사 및 그 기법 등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미국이 오늘날 그러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게 된 배경을 매우 잘 설명해준다.

따라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 가운데 프로파일링이 필요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면담을 실시하여 관련 자료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주로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에서 들어온 프로파일링 관련 문헌연구나 발표사례 등을 우리나라의 범죄, 범죠편, 경찰수사 현실에 일치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외자료와 함께 이들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 확보는 향후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수사의 정착 및 범죠편 행태분석에 필수적인 선결과제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 교정당국과의 원활한 협조와 프로파일링에 대한 수형자들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일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Ressler 역시 연쇄살인범 들을 교도소에서 면담하는 동안 많은 긴장감을 느꼈고, 실제로 생명의 위협까지 경험한 적이 있다고 토로하는 등 수형자에 대한 면담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프로파일링 대상자와의 면담이 성사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상대방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교도관이 입회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나라하게 자신의 범죄사실과 수법 등을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점 및 재판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것을 염려 때문에 면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범죄분석관에 대한 적대심 등으로 인하여 범죄분석관의 안전이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판이 완전히 끝난 기결수 및 사형수만을 면담대상으로 정하고, 면담대상자의 동의를 교정당국을 통하여 얻은 다음, 다시 한번 범죄분석관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범죄분석관은 단독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팀단위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분석관의 안전을 고려한 면담실 내의 CCTV 카메라 설치 및 비상벨 설치 등의 안전장치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면담대상자에게 인식시키도록 한다.

116) 로버트K. 레슬러 지음, 황정하·손명희 옮김, 살인자들과의 인터뷰, (2004). 349-350

제6장 결 론

국내에 범죄 프로파일링의 개념이 소개되고 이와 관련한 정책 등이 도입된 것은 불과 2-3여년 전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은 범죄 프로파일링에 대한 기존 수사경찰의 인식이 과거 자신들이 수사하던 패턴과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범죄 프로파일러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이해도 높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범죄 프로파일러의 채용과 교육과정, 그리고 이후의 재직자 훈련과정 역시 체계적인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하고, 실제범죄분석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 이후 배치과정에서도 확일적으로 전국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1-2명씩을 분산배치 함으로써 인력부족과 업무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업무영역의 불명확성 역시 범죄분석관의 직무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 프로파일링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프로파일링과 관련한 조직과 제도, 업무영역, 프로파일러의 자격요건, 정보지원 등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두도록 한다. 범죄 프로파일링 신입요원의 채용시에는 대학에서 일정한 커리큘럼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좀 더 구체적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점차 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기존 수사경찰 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프로파일링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한 뒤 범죄분석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편으로 미국의 경우처럼 경찰청 등에서 프로파일러 인턴십 제도를 도입하여 인력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수사경찰의 범죄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경찰수사연수원 및 경찰종합학교, 경찰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사

관련 교육과정에 범죄 프로파일링과 관련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것이며, 이를 통하여 상호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범죄 프로파일링과 관련한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 경찰청에 별도의 범죄분석계를 설치하고,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 권역별 담당팀을 구성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넷째, 범죄분석관에 대한 신입교육은 별도의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재교육 역시 현장경험을 축적하는 한편 범죄분석관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즉, 경찰청을 중심으로 국과수, 대검찰청, 군, 교정국 등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자료들을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미국, 영국, 일본 등 국외 범죄 프로파일링을 담당하는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및 정보교환을 강화해야 하며, 해당 기관들에 국내범죄분석관의 교육위탁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토록 한다. 또한 국내 대학 및 관련 학회 등과의 프로파일링 관련 세미나 및 교육위탁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기법 등을 습득토록 한다.

일곱째, 강력범 수형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기존 강력범들에 대한 프로파일링 관련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정당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범죄분석관의 안전을 고려한 장치가 먼저 강구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방안 이외에도 장기적으로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를 경찰청 수사국에서 분리하여 단일한 조직으로 확대개편하고 그 산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과학부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두어 법과학적 정보수집 및 관리, 범죄 프로파일링, 유전자정보은행, 과학수사관련 교육 등의 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곽대경. (2001). “경찰수사를 위한 범죄심리연구의 활용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
- 권창국. (2002). “범죄 프로파일링 증거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4호.
- 김광일. (1998). “방화사고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대응방안”, 『방화와 보험』, 제79호, pp. 6- 11.
- 김성진. (2001). “범죄심리학”. 서울: 동인.
- 김영욱. (1998). “방화사고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대응방안”, 『방화와 보험』, 제79호.
- 김종한. (1998). “방화화재 대책”. 『방화와 보험』, 제79호.
- 이상현. (2004). “범죄심리학(제3판)”. 서울: 박영사.
- 임준태, (2004). “강력범죄에서의 범죄자 유형 분석기법(Criminal Profiling)의 도입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호.
- _____, (2007). “과학수사 기반구축을 위한 법과학 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경찰학회 제 11회 세미나자료집, pp. 25-32.
- 홍성열. (2000). “범죄심리학”. 서울: 학지사.

<국외문헌>

- Ainsworth, P. B. (2000). Psychology and Crime. Essex, UK: Willan publishing.
- Ainsworth, P. B. (2001). Offender Profiling and Crime Analysis. Essex, UK: Willan Publishing.
- Amir, M. (1971). Patterns in forcible rap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aeza, J., Chisum, W. J., Chamberlin, T. M., McGrath, M. & Turvey, B. (2000). Academy of Behavioral Profiling: Criminal Profiling Guidelines, *Journal of Behavioral Profiling*, 1(1).
- Bartol, C. R. (2002). *Criminal Behavior: a Psychosocial Approach*(6th ed.) NJ: Prentice Hall.
- Bennett, W. & Hess, K. (2001). *Criminal Investigation*. Sydney: Wadsworth.
- Bernard, T. & Vold, G. (1986). *Theoretical Criminology*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lackburn, R. (1993).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Chichester: Wiley.
- Blair, D. (1993). The science of serial murder.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20(2), pp. 1-12.
- Brussel. A. J. (1968). *Casebook of a crime psychiatrist*. Bernard Geis Associates; distributed by Grove Press. pp.29-46.
- Burgess, A. W., Hartman, C. R., Ressler, R. K., Douglas, J. E. & McCormack. A. (1986). Sexual homicide: A motivational mod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3), pp. 251-272
- Beime, P. & Messerschmidt, J. (1995). *Criminology*. NY: Harcourt Brace.
- Canter, D. (1995). *Criminal Shadows: Inside the Mind of the Serial Killer*. London: Harper Collins.
- Canter, D. (1998). Profiling as poison. *Inter alia*, 2(1), p. 11.
- Canter, D. (2003). *Mapping Murder*. London: Virgin Books.
- Carlisle. (1998, June 18). Personal psychopathic Classifying sexual homicide crime scenes, p. 185.
- Classifying sexual homicide crime scenes. (1985). *FBI Law Enforcement Journal*, 54, 12-17.
- Dehaan. (1991). *KIRK'S Fire Investigation*.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 Depue, R., Douglas, J., Hazelwood, R. & Ressler, R. (1995). Criminal Investigative Analysis: An Overview, in Burgess, A. and Hazelwood, R.(Eds.), Practical Aspects of Rape Investigation(2nd ed.), NY: CRC Press.
- Dimairo, D. & Dimairo, V. (1993). Forensic Pathology. NY: CRC Press.
- Douglas, J. E. (1997). Crime classification manual.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Douglas, J. E., Ressler, R. K. Burgess, A. W. & Hartman, C. R. (1986). Criminal Profiling from crime scene analysi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4(4), pp. 401-421.
- Douglas, J., Burgess, A. W., Burgess, A. G. & Ressler, R. (1992). Crime classification manual.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Drukteinis, A. (1992). Serial murder: The heart of darkness. Psychiatric Annals, 22, p. 532.
- Egger, S. A. (1998). The Killers among Us: An Examination of Serial Murder and Its Investigation.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Ewolt, C., Monson, C. & Kanghinrichsen-Rohling, J. (2001). Attributions about rape in a continuum of dissolving marital relation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11), pp. 1175-1182.
- Faigman, L. D. (1997). Modern Scientific Evidence: The Law and Science of Expert Testimony. MN: Thomson west.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2). Incendiary Fire Analysis and Investigation. New York: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Fox, J. A. & Levin, J. (2001). The will to kill: Making sense of senseless murder. Boston: Allyn & Bacon.

- Geberth, V. J. (1996). *Practical Homicide Investigation: Tactics, Procedures and Forensic Techniques*(3rd ed.). Boca Raton, FL: CRC Press.
- Gibney, B. (1990). *The beauty queen killer*. New York: Pinnacle.
- Glick, L. (1995). *Criminology*. Boston: Allyn & Bacon.
- Godwin, M. (1999). *Hunting serial predators: A multivariate classification approach to profiling violent behavior*. Boca Raton, FL: CRC Press.
- Gross, H. (1924). *Criminal Investigation*. London: Sweet and Maxwell.
- Groth, N., Burgess, A. W. & Holmstrom, L. L.. (1977). Rape: Power, Anger and Sexual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4(11), pp. 1239-1243.
- Hale, R. (1998). The application of learning theory to serial murder, or you too can learn to be a serial killer. In R. Holmes & S. Holmes(Eds.),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serial murder*. Thousand Oaks, CA: Sage.
- Harris, T. (1981). *Red dragon*. New York: Putnam.
- Helsham. (2001). The profane and the insane: An inquiry into the psychopathology of serial murder. *Alternative Law Journal*, 26(6), pp. 269-273.
- Hickey, E. (2001). *Serial murderers and their victims*(2nd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Holmes, R. & Deburger, J. (1985a). Profiles in terror: The serial murderer. *Federal Probation*, 39, pp. 29-34.
- Holmes, R. & Deburger, J. (1985b). *Serial murder*. Beverly Hills, CA: Sage.
- Holmes, R. & Deburger, J. (1988). *Serial murder*. Thousand Oaks, CA: Sage.
- Holmes, R. & Holmes, S. (1998). *Serial murder*(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Holmes, R. & Holmes, S. (2000). *Murder in America*(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Holmes, R. & Holmes, S. (2001). *Sex crimes*(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Holmes, R. & Holmes, S. (2002). *Profiling violent crimes*(third ed.). Thousand Oaks, CA: Sage.
- Jenkins, P. (1994). *Using murder: The social construction of serial homicid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Johnosn, L. & Sigler, R. (2000). Forced sexual intercourse among intimat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5(1), pp. 95-108.
- Kenney, J. & More, H. (1994). *Principles of investigation*. Minneapolis, MN: West.
- Kirk, L. P. (1974). *Crime investigation*. NY: John Wiley & Sons.
- Knight, R. & Prentky, R. (1987). The developmental antecedents and adult adaptations of rapist subtyp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4, pp. 403-426.
- Kuhn, G. (2004). Arson Prevention: Motives and Mitigation Programs. *Fire Engineering*. pp. 113-120.
- Michaud, S., & Aynesworth, H. (1983). *The only living witness*. New York: Signet.
- Palmiotto, M. (1994). *Criminal investigation*. Chicago: Nelson-Hall.
- Petherick, W. A. (2003). Criminal profiling: What's in a name? Comparing applied profiling methodologies, *Journal of Law and Social Challenges*.
- Petherick, W. A. (2006). *Serial cri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in behavioral profiling*, California: Elsevier.
- Queens Bench Foundation. (1976). *The rapist and his crime*. New York: John Wiley.

- Rachel Boba. (2005). *Crime Analysis and Crime Mapping*. California: Sage Publication, Inc.
- Ressler, R., Burgess, A. & Douglas, J. (1988). *Sexual homicide: Patterns and motives*.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Ressler, R., & Shachtman, T. (1992). *Whoever fights monsters*. New York: St. Martin's.
- Rossmo, D. K. (2000). *Geographic profiling*. Boca Raton, FL: CRC Press.
- Rossomo v. Vancouver Police Board. (2002). <http://www.hamiltonhowell.ca/cases/rossmo.htm>, 2007년 11월 10일 검색.
- Stack, A. (1993). *The lust killer*. New York: Signet.
- Sugden, P. (1995). *The Complete History of Jack the Ripper*. New York: Carroll & Graff.
- Teten, H. (1995). Offender profiling. In W. Bailey(Ed), *The encyclopedia of police science*. NY: Garland.
- Thornton, J. I. (1997). The General Assumptions and Rationale of Forensic Identification, in Faigman, D., Kaye, D., Saks, M., & Sanders, J.(Eds.), *Modern Scientific Evidence: The Law and Science of Expert Testimony*, Vol.2, St. Paul MN: West Publishing Co.
- Turvey, B. E. (1999). *Criminal Profiling: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Evidence Analysis*(2nd ed.), London: Academic Press.
- Turvey, B. E. (2002). *Criminal Profiling: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Evidence Analysis* (2nd ed.). London: Academic Press.
- U.S. Department of Justice. (1988). *Report to the nation on crime and justice*.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alton, N. D. (1989). *Informal Logic: A Handbook for Critical Argument*.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rren, J., Reboussin, R. & Hazelwood, R. (1998). *Crime scene and*

distance correlates of serial rape. *Journal of Quantitative Sociology*, 14(1), pp. 35-39.

Wecht, H. C. (2004). *Crime Scene Investigation: Crack the case with real-life experts*, New York.

<기타자료>

<http://scienceandresearch.homeoffice.gov.uk/hosdb/about-us/what-we-do/>,
2007년 10월 15일 검색.

<http://www.all-about-forensic-psychology.com/fbi-profiler.html>, 2007년 10월 22일 검색.

<http://www.criminalprofiling.ch/cases.html>, 2007년 10월 30일 검색.

<http://www.criminalprofiling.ch/types.html>, 2007년 11월 10일 검색.

<http://www.fbi.gov/employment/ncavc.htm>, 2007년 10월 22일 검색.

<http://www.fbi.gov/hq/isd/cirg/ncavc.htm>, 2007년 11월 10일 검색.

<http://www.fbi.gov/publications/strategicplan/strategicplanfull.pdf>, 2007년 10월 15일 검색.

http://www.nottinghamshire.police.uk/uploads/library/125/Serious_crime_analysis.pdf, 2007
년 10월 15일 검색.

http://www.npia.police.uk/en/search_results.htm?search_text=scas, 2007년 10월 15일 검
색.

<http://www.nrips.go.jp/org/behavioral/index.html>, 2007년 10월 20일 검색.

<http://www.nrips.go.jp/org/behavioral/juvenile/index.html>, 2007년 10월 20일 검색.

<http://www.nrips.go.jp/org/behavioral/prevention/index.html>, 2007년 10월 20일 검색.

<http://www.nrips.go.jp/org/behavioral/support/index.html>, 2007년 10월 20일 검색.

http://www.police.go.kr/INVPOL/index.jsp?_page=5, 2007년 10월6일 검색.

[http://scienceandresearch.homeoffice.gov.uk/hosdb/about-us/working-with-pa
rtners/](http://scienceandresearch.homeoffice.gov.uk/hosdb/about-us/working-with-partners/),2007년 10월 15일 검색.

<http://www.all-about-forensic-psychology.com/david-canter.html>, 2007년 10
월 24일 검색.

http://www.fbi.gov/ucr/cius_02/html/web/offreported/02-narson11.html,

2007년 11월 10일 검색.

<http://www.homeoffice.gov.uk/about-us/organisation/home-office-structure/>,2

007년 10월 15일 검색.

경향신문, 2002년 6월 12일, 23면.

동아일보, 2001년 1월 5일, 31면.

동아일보, 2004년 11월 4일, 35면.

문화일보, 2001년 12월 13일, 31면.

문화일보, 2001년 12월 13일, 31면.

서울신문, 2004년 4월 12일, 12면.

연합뉴스, 2007년 8월 22일 보도.

범죄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기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 조사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범죄 프로파일러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조사 결과가 경찰 수사기법의 개선 및 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 8.

치안정책연구소 정초영 연구관
계명대학교 경찰학부 허경미 교수

이 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TEL : 053 - 580- 5998

E-MAIL : kmhuh@kmu.ac.kr

* 해당 지문에 체크하거나 기술하시면 됩니다.

1. 귀하는 지난 3년 동안 프로파일러로서 수사에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10번 이상 ② 7번 미만~5번 이상 ③ 5번 미만~3번 이상 ④ 3번 미만
⑤ 전혀 없다.

2. 귀하는 주로 어떤 범죄의 수사에 프로파일링 자문을 하였습니까?

- ① 절도 ② 스토킹 ③ 강간 ④ 강도 ⑤ 방화 ⑥ 살인 ⑦ 기타.....

3.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한 자문시 회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 3번 문항에 ④ 혹은 ⑤라고 답변하신 분은 3-1에 답변해 주십시오.

3-1. 자문시 관련 회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

4. 귀하께서 프로파일링 관련 자문을 한 수사가 범인검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 4번 문항에 ① 혹은 ②라고 답변하신 분만 4-1번 문항에 답변해 주십시오.

4-1. 귀하의 자문은 다음 중 어느 분야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범인의 추정 ② 증거확보 ③ 범인신문 ④ 현장보존 ⑤ 후속 범행 추정
- ⑥ 수사의 모든 과정 ⑦ 기타.....

※ 4번 문항에 ④ 혹은 ⑤라고 답변하신 분만 4-2번 문항에 답변해 주십시오.

4-2. 귀하의 자문이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

5. 귀하는 지난 2년 동안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수사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10시간 미만 ③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 ④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⑤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 ⑥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 ⑦ 50시간 이상
- ⑧ 기타.....

6 프로파일링 교육이 귀하의 관련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 6번 문항에 ① 혹은 ②라고 답변하신 분만 6-1번 문항에 답변해 주십시오.

6-1. 귀하께서 이수한 프로파일링 교육의 어떠한 면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

※ 6번 문항에 ④ 혹은 ⑤라고 답변하신 분만 6-2번 문항에 답변해 주십시오.

6-2. 귀하께서 이수한 프로파일링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귀하는 프로파일링 관련 교육을 다음 중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 ① 지방경찰학교 ② 경찰수사연수원 ③ 경찰종합학교 ④ 경찰대학
 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⑥ 직장 내 부서훈련 ⑦ 기타.....

: 가장 많이 이수한 대로 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8. 귀하는 일선 현장에서 수사관들이 프로파일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문교육과정의 이수 ② 프로파일러의 배치 확대
 ③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한 인식 ④ 최종별 프로파일링 활용수사 교육
 ⑤ 프로파일러에 대한 정보제공 ⑥ 기타.....

9. 귀하의 대학에서의 전공학문 분야는 무엇입니까?

10. 귀하의 대학에서의 전공학문이 현재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11. 귀하가 프로파일러로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 직면하는 가장 클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2. 귀하는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수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수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범죄의 종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 귀하는 범죄현장에 대한 완전한 보존 및 법의학적 감식, 기타 수사과정 정보접근 등 프로파일링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다음은 인구사회학적 배경요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 이 자료는 인터뷰 내용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자료로만 활용되며, 일체의 익명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	연령	만	세
학 력	① 전문대졸 이하 ② 대졸 이하 ③ 대학원 이상			
직 급	① 순경 ② 경장 ③ 경사 ④ 경위 ⑤ 경감	수사경력	년	
프로파일러 경력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2년 미만 ③ 2년 이상~3년 미만 ④ 3년 이상~4년 미만 ⑤ 4년 이상			
근무기관	① 경찰서 ② 지방경찰청 ③ 경찰청			
입직경로	① 범죄분석요원 특채 ②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 ③ 기타 특채 _____ ④ 간부후보생 시험 ⑤ 경찰대 졸업			